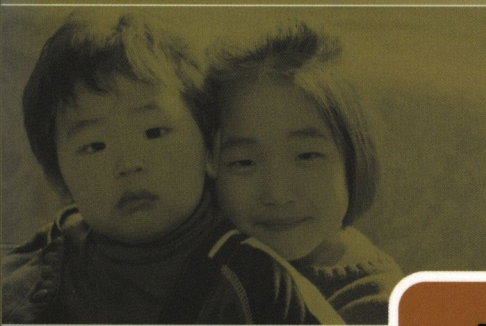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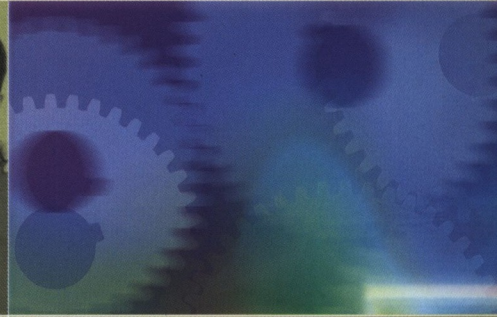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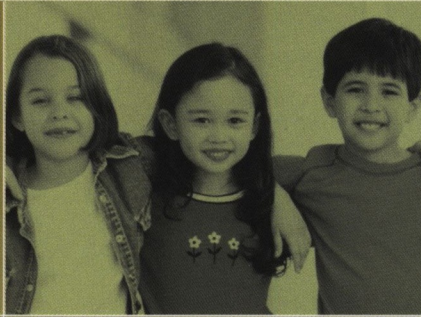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5

아동권리위원회

번역 및 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기갑 교수
김현정, 류희진, 박진아, 신소현
문지혜, 김지영, 임예준

한국어판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M01645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발 간 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의 큰 임무 중 하나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즉, 인권정책을 권고함에 있어서 그 주요기준을 국제인권규범에 두었고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국제인권규범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의 한계와 전문성에 비추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 보니 해당 규범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기초한 업무 처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1년 이상의 심혈을 기울여 주요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서 발표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완역 출간한 것은 향후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6개의 인권조약의 일반논평은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국내에서 어느 기관도 그 완역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었다. 바라건대 이 노작이 우리 위원회의 각 담당자들의 책상 위에 놓여져 국제인권규범의 바른 해석을 함에 있어 참고서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에게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면 망외의 기쁨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어려운 작업의 번역을 맡아 주신 고려대학교 박기갑 교수님을 비롯한 동대학 국제법 석박사 연구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나아가 이 작업을 기획하고 번역을 감수한 인권정책본부 국제인권팀 관계자의 노고에 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영 황

서 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국제인권법에 대한 관심은 전례 없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위원회법이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주요 근거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찾고 있고, 인권위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는 설립 이래 인권정책 안건과 진정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인권위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세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국제인권법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해 소상한 설명이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국제인권법에 관한 언급은 각종 검토보고서에서 관련조약의 조문 나열로 끝나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많은 실무자들은 스스로 불만을 갖게 되었고 보다 심화된 국제인권법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반논평은 인권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조약위원회(소위 조약감시기구)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해석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조약위원회는 추상적인 조약의 내용을 해석을 통해 풍부하게 만듦으로써 국제인권법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추상적인 헌법을 해석을 통해 점점 풍부한 내포를 만듦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헌법의 실질적 외연을 넓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조약감시기구가 수행하는 해당 인권조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일반논평)은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나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논평은 그 자체로서는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법이 아니나 국제인권법이 무엇이나를 설명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인권조약에 대한 설명 자료가 이러저러하게 있지만 이 일반논평을 떠나서는 그러한 설명도 큰 의미가 없다. 조약감

시기구가 인정하지 않는 인권조약의 해석은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논평의 이런 중요성을 인해 인권위는 지난 1기 시절부터 우리가 가입한 6대 인권조약의 일반논평을 하루 빨리 번역하여 실무에 반영하고자 작업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 업무는 생각한 것보다 쉽지 않았다. 먼저 번역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년 여름이 되기 직전 인권위는 이 작업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말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번역 작업을 전문가인 고려대 국제법 교실의 박기갑 교수님과 그의 석박사 제자들(김현정, 임예준, 박진아, 문지혜, 류희진, 김지영, 신소현)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꼬박 한 학기 동안의 수고로 일반논평의 초벌 번역은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사업의 책임자로서 박교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심심한 고마움을 전한다. 그러나 이 작업이 끝나는 것은 또 다시 수개월이 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초벌번역의 오류를 잡고 전체적으로 문장을 다듬는 작업도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이 사업의 담당자인 국제인권팀의 오유진 선생의 몫이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지난 몇 달간 주말 휴일을 반납하였다. 그의 노고를 들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바라는 바는 산고의 과정을 통해 출간된 이 일반논평이 부디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인권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것이다. 실무자들은 인권정책과 관련된 보고서이든 진정사건의 보고서이든 검토기준으로서 국제인권법을 거론할 때 반드시 이 일반논평을 보고 해당 부분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 검토기준에 관한 한 한 단계 높은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을 전공하는 연구자 및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저작물이 광범하게 사용된다면 지난 1년간 이 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망외의 기쁨일 것이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박 찬 운

목 차

VI.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3
일반논평 1: 교육의 목적	3
일반논평 2: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 ·	14
일반논평 3: HIV/AIDS 와 아동의 권리	25
일반논평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	45
일반논평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62
일반논평 6: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	90
일반논평 7: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124
일반논평 8: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특히,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	152

CONTENTS

VI. GENERAL COMMENT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75
General comment No. 1: The aims of education	175
General comment No. 2: The role of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82
General comment No. 3: HIV/AID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189
General comment No. 4: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
General comment No. 5: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s. 4, 42 and 44, para. 6)	214
General comment No. 6: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233
General comment No.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258
General comment No. 8: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article 19, 28(2) and 37, <i>inter alia</i>)	279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권리위원회]

VI.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Ⅵ.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26차 회기

일반논평 1: 교육의 목적

제29조 1항의 중요성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1항은 매우 광범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당사국에 의해 합의된 바 있는 교육의 목적은 동 협약의 핵심적인 가치인 모든 아동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아동의 평등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려 한다. 제29조 1항 이하의 5개 목록에 나타난 이러한 목적들은 모두 아동의 특별한 발전의 필요와 발전해나갈 다양한 잠재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시키도록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동 목적들은 인권에 대한 존중(제29조 1항 b) 및 발달된 주체성과 인지능력(제29조 1항 c)의 진전과 아동의 사회화와 타인(제29조 1항 d)) 및 환경(제29조 1항 e)과의 상호작용의 진전을 포함한 아동의 모든 잠재력의 전체적인 발전(제29조 1항 a)이다.

2. 제29조 1항은 제28조에서 인정된 교육에 대한 권리에 아동 고유의 존엄성과 권리를 반영하는 양적인 차이를 단순히 부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 우호적이며 자격을 갖춘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동 조항이 선언하고 있는 원칙에 기초한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 모든 아동의 권리인 교육은 아동에게 삶의 기술을 제공하고, 모든 범위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능력을 강화시키며, 적절한 인권 가치에 의해 고무된 문화를 진흥시키도록 고안된 것이다. 목적은 아동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다른 능력, 인간의 존엄성, 자부심과 자신감을 진전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교육”은 형식적인 취학을

넘어서서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동이 그들의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아우르는 것이다.

3.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단순한 접근의 문제(제28조)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다. 제29조 1항 상의 가치에 확고히 근거하고 있는 내용을 함유한 교육은 모든 아동들에게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세계화와 신기술 그리고 관련된 현상에 의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에 접하게 될 도전들에 관한 균형잡힌, 인권 우호적인 대책을 얻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상기의 도전들은 전 세계와 지역, 개인과 집단, 전통과 현대, 장기적 고려와 단기적 고려, 경쟁과 기회의 균등, 지식의 확장과 그것을 흡수하는 능력,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² 상호간의 긴장을 포함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29조 1항의 요소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교육계획과 교육에 대한 정책들은 모두 많은 요소들을 간과하거나, 표면적인 사후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제29조 1항은 모든 당사국이 교육이 광범위한 가치와 관련되어야 함에 동의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동 합의는 세계 각지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 국가, 문화적인 경계를 초월한다. 일견 제29조 1항에서 언급된 다양한 가치들 중 일부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1항 d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1항 c에 의거하여 아동의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 가치, 아동이 출생하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민족적 가치, 아동의 고유한 문명과 다른 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위해 고안된 정책들과 항상 자동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 규정의 중요성 중 일부는 바로 차이에 대한 존중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도록 하는 것과 교육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나아가, 아동들은 역사적으로 분리되었던 집단 간의 많은 차이를 극복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1항의 기능

5. 제29조 1항은 교육이 달성해야만 하는 다른 목적들의 목록 또는 열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 협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6. 첫째, 동 조항은 동 협약의 규정간의 상호 불가결하고 상호 연관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른 규정들의 다양성의 강화, 통합, 보완을 강조하며, 규정간의 분리를 통해서 적절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동 협약의 일반원칙인 비차별(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생명, 생존, 개발에 관한 권리(제6조), 견해를 표현할 권리 및 그에 대한 고려(제12조)에 추가하여 부모의 책임과 권리(제5조, 제18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의 자유(제14조), 정보에 대한 권리(제17조), 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제24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28조) 및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의 언어적, 문화적 권리(제30조)와 상기 규정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다른 규정들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7. 아동의 권리는 전체 맥락과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29조 1항과 동 협약의 전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광범위한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동 협약에 대한 행해진 비판 중 다수에 대해 특히 동 규정에 의해 반박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동 조항은 부모에 대한 존경, 그들의 넓은 윤리적, 도덕적, 정신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틀 내에서의 권리를 볼 필요성 및 대부분의 아동의 권리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가치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 둘째, 동 조항은 교육에 대한 권리의 증진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다른 권리의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 과정에서 전달된 가치에 의해 강화되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학 상의 방법과 가정, 학교 혹은 기타 어느 곳이건 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포함된다.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교육은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며, 제12조 1항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학교생활에 참여하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교육은 또한 제28조 2항에 반영된 징계제의 엄격한 제한을 존중하고 교내에서의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본 위원회는 육체적 처벌의 사용이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징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을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제29조 1항상 인정된 가치의 준수는 학교가 용어상의 모든 의미에서 아동 우호적이어야 하며 존엄성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견지해야 함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의 아동의 참여, 학교 공동체와 학생 위원회의 형성, 동료 교육과 동료 상담, 그리고 교내 징계절차에의 아동의 참여는 권리 실현의 경험과 학습의 과정의 일부로서 증진되어야만 한다.

9. 셋째, 비록 제28조가 교육제체의 확립과 학교로의 접근보장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제29조 1항은 교육의 특정한 품질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 권리의 근거가 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동 협약과 부합하기 위해, 동 조항은 모든 아동이 특유의 성격과 관심, 능력과 학습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 개인의 개성, 재능, 능력의 발달을 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는 아동 중심적 교육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³ 따라서 교과과정은 아동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맥락 및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만 하며, 아동이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하며; 교수 방법은 아동의 각각의 필요에 맞추어 준비되어야만 한다. 교육은 반드시 모든 아동의 필수적인 삶의 기술에 대한 학습에 대한 보장 및 어떠한 아동도 삶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 기초적인 기술은 식자능력과 수리능력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균형 잡힌 결정을 할 능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능력; 건강한 생활방식,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와 책임감, 비판적 사고, 창조적 재능 및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선택을 추구해나가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다른 능력들을 개발할 능력을 포함한다.

10. 동 협약 제2조상에 열거된 여하한 이유에 근거한 차별은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간에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의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훼손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기회로의 아동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동 협약 제28조과 관련된 문제이며 제29조 1항에 포함된 원칙들에 대한 준수의 실패를 가져오는 많은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성차별은 양성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과정과 같은 관행, 소녀에게 제공된 교육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 소녀의 참여를 제한하는 안전하지 않거나 비우호적인 환경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역시 많은 제도적인 교육 체제와 가정을 포함한 다수의 비제도적인 교육환경에 스며들어 있다.⁴ HIV/AIDS에 감염된 아동들 또한 상기의 두 환경에서 모두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⁵ 모든 이러한 차별적 관행들은 교육이 아동의 개성,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잠재성의 최대한의 개발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제29조 1항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상충한다.

11. 본 위원회는 또한 제29조 1항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극복노력과의 관계를 강조하려 한다. 인종주의 및 이와 관련된 현상은 무지, 타 인종, 민족, 종교, 문화적, 언어적 또는 다른 형태의 차이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 편견의 촉진, 혹은 왜곡된 가치의 보급이나 그에 대한 교육이 있는 곳에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인종주의 및 이와 관련된 현상의 해악에 대한 모든 캠페인에서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특히 특정한 사회에서 나타나거나 나타났었던 인종주의, 그리고 역사상 실현되었던 인종주의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인종주의자들의 행위는 “타인”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과 아동의 권리와 비차별의 원칙을 가르칠 때에 아동이 속한 그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교육은 인종주의, 민족 차별, 외국인 혐오 및 기타 관련된 불관용의 제거와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12. 넷째, 제29조 1항은 교육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감성적 측면의 증진과 아동기와 일생이라는 시기의 측면에서 지적, 사회적 그리고 실질적 가치 간에 적절한 균형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에 대하여 전체적인 접근을 할 것

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전반적인 목적은 아동의 능력과 자유로운 사회 내에서 아동이 완전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지식의 축적, 경쟁의 촉진 및 아동에 대한 과도한 업무의 부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의 형태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의 최대한의 발현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교육은 아동 우호적이어야만 하며 아동 개개인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학교당국은 인도적 환경을 육성하고, 아동이 그들의 발달 능력에 따라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13. 다섯째, 동 조항은 교육이 본 협약에 내재된 특정한 윤리적 가치의 범위를 증진시키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안되며,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에 의한 평화, 관용에 대한 교육 및 자연 환경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이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제29조 1항의 가치의 증진과 강화는 모든 곳의 문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그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공동체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의 존중이라는 개념의 발달을 위해 교육은 환경의 문제와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인구통계적인 문제들을 수반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문제를 연관시켜야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은 가정, 학교, 공동체 내에서 교육되고, 국내적, 국제적 문제를 아우르는 것이어야만 하며, 아동이 지역적, 광역적, 세계적 환경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14. 여섯째, 동 조항은 모든 다른 인권의 증진과 그들의 개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 기회부여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자유로운 사회 내에서 완전히 그리고 책임감있게 참여할 아동의 능력은 교육에 대한 접근의 완전한 거부에 의해 손상되고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항에서 인정된 가치의 이해를 증진하지 못함으로써 손상되고 훼손될 수 있다.

인권교육

15. 제29조 1항은 또한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요청되었으며 다른 국제기구들에 의해 촉진된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초석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활동에서 아동의 권리의 중요성이 항상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인권교육은 인권조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더구나 아동들은 가정, 학교 혹은 사회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인권의 기준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인권을 학습해야만 한다. 인권교육은 종합적인 인생전반에 걸친 과정이어야만 하며 일상과 아동의 경험 속에서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한다.⁶

16. 제29조 1항에 내재된 가치들은 평화로운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관련되어 있으나 동 가치들은 분쟁이나 비상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카르 행동 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에서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쟁, 자연재해, 불안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교육 체제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호 이해, 평화와 관용을 증진시키고, 폭력과 분쟁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⁷ 국제 인도법에 대한 교육 역시 거의 종종 무시되고 있으나 이는 제29조 1항의 실효성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일면을 구성한다.

이행, 감독 및 검토

17. 동 조항에 반영된 목적과 가치는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되어있고 그것의 이행은 잠정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이른다. 이는 많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관련된 원칙들을 입법이나 행정명령(administrative directive)에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심지어는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정당하지 않다. 국내법이나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 이는 관련 원칙들이 존재하거나, 혹은 교육정책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이러한 원칙들을 그들의 교육 정책과 모든 수준에서의 법률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18. 제29조 1항의 실효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한 목적을 포함하는 교과과정의 근본적인 개편과 학교 정책 및 교과서 및 기타 교재, 교수법의 체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깊이 있는 변화 없이 현재의 체제에의 동 조항의 가치와 목적의 단순한 첨가 이상이 아닌 접근은 분명히 적합하지 않다. 상기의 가치들을 가능한 한 전달하고, 증진시키며, 가르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 상기 가치들의 중요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관련된 가치들은 광범위한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그 과정에 편입될 수 없으며 여기에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제29조 1항 상에 반영된 원칙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용전·후의 훈련방법들은 교사, 교육행정요원 및 기타 아동 교육 관련자들에게 필수적이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수방법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교육철학 및 정신과 제29조 1항에 나타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19. 더욱이 학교 환경은 그 자체가 제29조 1항 (b)와 (d)에서 요청되는 이해, 평화, 관용, 성 평등 및 모든 사람,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토착민들 간의 우호를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괴롭힘이나 다른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이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는 제29조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다. “인권 교육”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자주 그 함축적 의미가 극도로 단순화된 방식으로 사용된다. 형식적인 인권교육에 부가하여,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학교와 대학 내로 국한되지 않는 좀 더 넓은 사회에서의 인권에 공헌하는 정책과 가치의 증진이다.

20. 일반적인 경우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는 협약의 본문 그 자체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약 의무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 당사국들의 다양한 동기의 근거가 불충분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의 보호자이자 촉진자로서의 아동의 역할을 또한 촉진할 것이다.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서 당사국들은 그들이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인권고등판무실에서는 동 협약에 대한 다양한 언어판본 등의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21.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언론매체 또한 제29조 1항에 반영된 가치와 목적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행동이 그러한 목적을 증진시키려는 타인의 노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정부들은 동 협약

제17조 1항에 따라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익에 되는 사항과 정보를 보급하도록 장려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내용으로 한다.⁸

22.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역동적인 과정으로서의 교육 및 제29조 1항에 관련되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는데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모든 아동은 학습 환경, 교수과정, 학습과정과 교재 및 학습결과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본 위원회는 과정에 참여하는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재학 중이 아닌 아동, 교사 및 젊은 지도자, 부모 그리고 교육행정이 및 장학사들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의 관점을 고려하고, 이에 근거하여 점진적 발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조사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아동, 부모와 교사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참여를 보장하도록 국가적 차원의 감독을 강조하는 바이다.

23.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포괄적인 국가적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제29조 1항 상에 열거된 목적의 실현을 증진시키고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그러한 계획이 아동, 국가적 인권 행동 계획, 혹은 국가적 인권교육 정책의 보다 큰 맥락에서 고안된 것이라면 정부는 제29조 1항에서 다루어진 모든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고안되도록 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유엔과 교육정책 및 인권교육에 관여하는 기타 국제기구들이 제29조 1항의 이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24. 동 조항에 반영된 가치를 증진시킬 프로그램의 이행과 고안은 인권위반의 유형이 일어난 거의 모든 상황에 있는 정부의 제출해야 하는 표준적 반응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제18조 이하에 포함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비관용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일반적으로는 동 협약 상에,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제29조 1항에서 반영하고 있는 가치의 증진을 위해 수행해야할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당연히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동 협약 상 인정된 권리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교육학적 기술들에 대한 연구와 이의 채택을 포함하는 적절한 부가 조치가 채택되어야만 한다.

25. 당사국들은 또한 현존하는 정책이나 관행이 제29조 1항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고발(complaint)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검토 절차를 설립하도록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한 검토절차는 반드시 새로운 법적, 행정적 혹은 교육기구의 창설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토절차는 국내 인권 기관이나 현재의 행정기구에 위탁될 수도 있다. 본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동 조항에 대한 보고시에, 동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되는 현재의 접근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진정한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밝힐 것을 요청한다. 국가가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 보고 기간 내에 그러한 검토가 어떻게 착수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검토가 수행되어왔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26. 제29조 1항에 관한 당사국 보고서의 심의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보고가 사실과 차이점을 지적해야만 한다는 제44조의 요구에 따라, 본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각 당사국은 동 규정에 반영된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 요구되며, 명시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진행될 행동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이 요구된다.

27. 본 위원회는 본 협약의 제45조에서 역할이 강조된 유엔기구와 기관들 및 기타 동등한 기구들이 제29조 1항과 관련된 동 위원회의 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8. 제29조 1항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국가적 행동계획의 이행은 제4조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자원의 제한이 당사국들에게 요구되는 조치의 여하한 정도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동 협약의 제4조와 제45조)와 교육과 관련된 측면에서(제28조 3항) 국제적 협력의 증진과 촉진의무가 당사국에게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위원회는 개발 협력을 제공하는 당사국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이 제29조 1항에 포함된 원칙들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고안되었음을 보장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주(註)

- ¹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특별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제13조 1항에서의 교육의 목적을 다루고 있는, 교육의 권리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1999)에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본 협정의 제44조, 1(b)항에 의거하여(CRC/C/58, 112-116항),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들의 형태와 내용을 고려하는 일반 지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²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The Treasure Within*,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에 대한 국제 위원회 보고서, 1996, pp. 16-18.
- ³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The Salamanca Statement and Framework for Action on Special Needs Education*, 1994, p. viii.
- ⁴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5 (1994) 참조
- ⁵ HIV/AIDS에 감염되어 살아가는 세계 아동들에 대하여 1998년도에 개최된 일반 논의 이후에 “아동 권리에 관한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권고 참조(A/55/41, 1536항).
- ⁶ 1994년 12월 23일 유엔의 인권교육 10주년 기념 선언 총회 결의 49/184 참조.
- ⁷ 만인을 위한 교육: 2000년 4월 26-28동안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 교육포럼에서 채택된 우리의 수집된 공약들을 회합.
- ⁸ 본 위원회는 1996년 개최된 아동과 대중매체에 대한 일반 토론회의 날에서 도출된 권고안들을 상기한다(A/53/41, 1396항 참조).

제31차 회기 (2002)

일반논평 2: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는 당사국들에게 “현재 협약 상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독립국가 인권기구(NHRIs)들은 협약의 이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본 위원회는 그러한 기구의 설립이 당사국들의 비준을 통해서 동 협약의 이행 보장을 위한 실행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며 아동의 권리의 보편적인 실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많은 당사국에서 동 협약의 증진과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NHRIs)와 아동 ombudsman/아동 위원 및 이와 유사한 독립적 기구의 설립을 환영하는 바이다.

2.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동 협약의 이행의 증진과 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독려하고, 그러한 기구들의 필수적인 요소와 그들이 수행해야만 하는 행동들을 구체화시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본 일반논평을 발표한다. 그러한 기구가 이미 설립된 국가에서는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기타 관련 국제 문서에 기술된바와 같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어서의 해당 기구의 지위와 실효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3. 1993년 개최되었던 세계인권대회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재확인 하였으며, “국가기구의 설립과 강화”를 독려하였다. 유엔총회와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반복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국가인권기구(NHRIs)의 중요한 역할과, 그러한 권리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고양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정기보고서에 관한 일반 지침에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모든 독립적인 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¹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간의 대화에서 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4. 국가인권기구(NHRIs)는 1992년 인권위원회가 제출하고² 1993년의 유엔총회에서 채택³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와 관련된 원칙(“파리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립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은 그러한 국가 기구의 설립, 권한, 책임 및 다원성 등의 구성, 독립성, 운영방법 및 그러한 기구들의 준수법적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5. 성인과 아동은 유사하게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독립 국가인권기구(NHRIs)를 필요로 하지만, 아동의 인권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 대한 부가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발달상태가 인권침해행위에 특히 취약하고, 아동의 견해는 여전히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은 투표권이 없고,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지도 못하며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찾기 위해 사법적 체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며, 아동의 권리보호를 해줄 단체에의 아동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들이 포함된다.

6. 아동을 위한 전문 독립 인권 기구, 옴부즈맨이 설립되고 혹은 아동 권리 위원회 지명되고 있는 당사국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자원이 제한된 경우에 아동을 포함한, 만인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가용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기반의 국가인권기구(NHRI)의 발달은 최선의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광범위한 기반의 국가인권기구(NHRI)는 그 조직 내에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전담하는 개별적인 위원이나 특별부서 혹은 아동권리를 담당하는 국을 포함해야만 한다.

7. 모든 국가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책임을 질 독립적인 인권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견해이다. 본 위원회의 주요 관심사는 그러한 기관이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독립적, 그리고 실효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감독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의 보호와 증진이 “주류화”되는 것과 국가내에 현존하는 모든 인권 기관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함께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위임과 권한

8. 국가인권기구(NHRIs)는 가능한 한, 헌법을 기반으로 확립되어야만 하고, 적어도 입법적으로 위임을 받아야만 한다. 본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그들에 대한 위임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 그리고 관련 국제 인권 문서들을 수용하는 정도로 범위가 넓어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효적이어야만 하며, 특히 아동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포괄해야 한다. 입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와 연관되어 아동과 관련된 특정한 기능,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국가인권기구(NHRI)가 동 협약의 존재 이전에 설립되거나, 동 협약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가 실행되어 그 기구의 위임이 동 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9. 국가인권기구(NHRI)는 그들의 권한 내에 포함되는 상황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획득하고 모든 사람의 견해를 청문할 권한을 포함한, 위임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한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공적, 사적 실체들과의 관계에서 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포함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설립절차

10. 국가인권기구(NHRI)의 설립 절차는 타 기관과 협력적이어야 하며, 포괄적이어야만 하고, 투명하며, 정부차원에서 제안되고, 지원을 받으며, 국가, 입법기관, 시민사회의 관련 구성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들의 독립성과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인권기구(NHRI)는 적절한 하부구조와 재정(특히 광범위한 기구 내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위한 것을 포함), 직원, 시설, 그들의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

자원

11. 본 위원회는 이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당사국들이 다양한 경제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기능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당사국들에게 동 협약 제4조의 견지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운영 및 작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다. 만약 국가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면, 국가기구의 위임과 권한은 의미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권한행사는 제한될 것이다.

다원적인 대표성

12. 국가인권기구(NHRIs)는 그들의 구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의 다원적 대표성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NHRIs)들은 인권, 차별금지 및 아동의 권리, 비정부기구, 아동과 청소년 단체, 노동조합, 사회적, 전문적 단체(의사, 변호사, 언론인, 과학자 등의), 아동권리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과 전문가들의 사람들을 포함하게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부서는 자문적 역할로서만 참여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NHRIs)는 적절하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선정 절차를 포함한 투명한 임용절차를 가져야만 한다.

아동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제공

13. 국가인권기구(NHRIs)는 개별적인 진정과 청원을 심사하고, 아동이 직접 혹은 아동을 대리하여 제출한 진정과 청원을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효과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인권기구(NHRIs)는 증인이 증언하도록 하고 심문할 권한 및 관련된 문서 증거 및 구금된 장소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권리의 어떠한 위반이든간에 아동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갖도록 할-독립적인 조언, 변호와 진정절차-를 모색할 의무를 진다. 적절하다면, 국가인권기

구(NHRIs)는 진정의 중재와 조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14. 국가인권기구(NHRIs)는 (a)국가인권기구(NHRI)의 이름으로 아동의 문제에 관련된 사건을 제소할 권리와 (b)그 사건에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하여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개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이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지지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접근가능성과 참여

15. 국가인권기구(NHRIs)는 지리적 및 물리적으로 모든 아동이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 동 협약 제2조의 정신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NHRIs)가 예방적으로 모든 아동 그룹과 접촉할 수 있어야만 하며, 특히 치료중이거나 구금되어 있는 아동, 소수 민족이나 토착민아동, 장애아동, 빈곤아동, 난민 혹은 이주 아동, 노숙 아동이나 문화적, 문화, 언어, 건강 및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같이(그러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가장 취약하고 불이익을 받는 아동 집단을 접촉할 수 있어야만 한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법률은 모든 형태의 대안적 양육하의 아동과 모든 아동보호 시설에서의 비밀보장하에 접근할 수 있는 기구의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16. 국가인권기구(NHRIs)는 동 협약 제12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도록 증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일반적인 원칙은 국가인권 기구의 설립, 조직 및 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기구들은 아동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및 아동들의 적절한 참여와 의견수렴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위원회는 아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아동의 실질적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국가인권기구(NHRIs)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창설될 수 있다.

17. 국가인권기구(NHRIs)는 동 협약의 제12조의 준수를 위해서 맞춤형 협의프로그램과 창의적 의사소통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아동이 인권기구와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의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18. 국가인권기구(NHRIs)는 아동 권리의 상태에 관하여 국민 및 의회에 직접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고할 권리를 보유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당사국들은 아동권리 측면에서 국가인권기구(NHRI)의 업무에 대하여 동 협약에 대한 국가의 준수를 의회가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에서 연례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권고되는 행위

19. 동 협약의 일반원칙의 측면에서 아동권리의 이행과 관련되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행위 유형은 예시적인 것이지 열거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 (a) 진정 혹은 그들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 위임범위 내에서 아동권리의 침해의 모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
- (b) 아동권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청문하는 것
- (c) 국가 당국의 요청 혹은 그들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견, 권고와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표하는 것
- (d)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법과 관행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
- (e)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동 협약의 선택 의정서 및 아동의 권리에 관련된 기타 국제적 인권 문서와 국가 입법, 규제, 관행의 조화를 증진시키고, 동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공적, 사적 기구에 조언을 제공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시키는 것

-
- (f) 국가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국가 경제 및 발전 계획을 설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
 - (g)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계가 적절하게 분류되고, 기타 정보가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보장하면서 아동권리의 상태를 감독하고 정부의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고 검토하는 것
 - (h) 여하한 관련 국제 인권 문서의 비준이나 가입을 장려하는 것
 - (i)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의 최우선의 고려요소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동 협약 제3조에 따라, 법률과 정책의 개발과 이행 및 그 이상에서 그들의 아동에 대한 영향이 신중하게 고려되도록 확보할 것
 - (j) 제12조의 견지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안과 아동권리에 관한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가 표시되고 경청되도록 보장하는 것
 - (k)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한 국내적 입법과 국제적 문서의 개발에 있어서 아동 자신들이 참여하는 조직을 포함하여, 아동권리 비정부기구들의 유의미한 참여를 지지하고, 촉진하는 것
 - (l)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론 매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 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것
 - (m) 당사국에게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아동과 성인에게 동 협약의 원칙과 규정이 널리 알려지도록 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는 동 협약 제42조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 대중에게 동 협약의 규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이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

-
- (n) 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과, 전문직 내에서 아동 권리의 교수, 연구 및 통합프로그램의 형성에 노력할 것
 - (o) 아동에 특히 초점을 맞춘 인권교육에 착수할 것(덧붙여서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 증진도 포함)
 - (p) 당사국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할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
 - (q)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적절한 경우 중재나 조정 절차를 마련할 것
 - (r) 법원의 친구(amicus curiae) 혹은 개입자로서 적절한 사건에서 법원에 아동권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할 것
 - (s) 당사국이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인권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을 따를 것을 보장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동 협약 제3조에 따라 소년원(그리고 아동이 갱생(reform)이나 처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한 방문 및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할 것
 - (t) 상기에 부수적인 기타 행위들을 수행할 것

아동의 권리위원회에의 보고 및 국가인권기구(NHRIs)와 유엔기관, 인권 메커니즘간의 협력

20. 국가인권기구(NHRIs)는 동 협약 및 기타 관련 국제 문서에 의한 보고 절차에 독립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회기전 실무그룹에서 아동권리위원회 및 기타 관련 조약기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기구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의

성실성(integrity)을 감독해야만 한다.

21.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국가인권기구(NHRIs)의 법적 기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국가인권기구(NHRIs)의 활동과 관련된 권한과 원칙, 법률적 근거, 위임사항과 주요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당사국들은 위원회로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에 국가인권기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당사국은 본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이러한 기구의 독립성과 그들의 독립적인 역할을 존중해야만 한다. 보고서의 초안 작성을 국가인권기구(NHRIs)에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의하여 보고서가 검토되는 경우에 정부의 대표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 국가인권기구(NHRIs)는 국가 및 주제별 메커니즘(thematic mechanism) 및 인권 위원회의 특별절차, 특히 “아동의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특별 보고관”과 아동과 무력충돌에 관한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자와 협력해야 한다.

23.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실행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기반을 두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적, 세계적 협력과 국가인권기구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지원을 스스로 이용해야만 할 것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또한 이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 및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24. 동 협약 제4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가인권기구(NHRIs)의 설립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보고서를 여하한 유엔의 전문 기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및 기타 관련 기구에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NHRIs)와 당사국

25. 국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기구(NHRIs)의 역할은 완전한 아동의 권리존중을 위해 당사국의 준수와 이행을 위한 진전사항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기구로 하여금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부가 자신들의 감독 의무를 국가인권기구에 일임하는 것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국가 기구가 그들 자신의 의제를 설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결정하는 전적인 자유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인권기구(NHRIs)와 비정부기구(NGOs)

26. 비정부 기구는 인권 및 아동권리의 증진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적 근거와 특정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NHRIs)의 역할은 보완적이다. 국가인권기구가 비정부기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정부가 국가인권기구(NHRIs)와 비정부기구의 독립성을 모두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역적, 국제적 협력

27. 지역적, 국제적 절차와 메커니즘은, 국가인권기구(NHRIs)가 각 국가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해서 국가인권기구(NHRIs)를 강화시키고 공고화시킬 수 있다.

28.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인권기구(NHRIs)는 적절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기구들 및 아동의 권리문제에 관한 기관들과 협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29. 아동의 인권문제는 국경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아동권리문제(여성
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아동 포르노, 소년병, 아동노동, 아동 학대, 난민 및 이주 아동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에 대한 적절한 지역적, 국제적 대응방안들을 고안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제적, 지역적 메커니즘과의 교류가 장려되는데 이는 그
메커니즘들이 국가인권기구와 상호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상호의 입장을 강화하고,
국내와 지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기회를 국가인권
기구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주(註)

¹ 동 협약 (CRC/C/58), 제18단락, 제 44조 1항(b)에 의 당사국이 제출해야하는 정기보
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

²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와 관련된 원칙(“파리 원칙”) 1993년 12
월 20일 총회결의 48/134 부속서

³ 1992, 3월 3일자 인권 위원회 결의 1992/54, 부속서

제32차 회기 (2003)

일반논평 3: HIV/AIDS 와 아동의 권리

I. 서언¹

1. HIV/AIDS 전염병은 아동이 살고 있는 세계를 현격히 변화시켰다. 수백만의 아동이 이 질병에 감염되고 있고, 사망했으며, 그들의 가족과 사회에 HIV가 만연함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전염병은 어린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피해와 소외를 증대시키고 있다. HIV/AIDS는 일부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의 문제이다. 아동에 대한 이 전염병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은 모든 발전 단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조화롭고 제대로 설정된 노력을 할 것이 필요하다.

2. 초기에는 아동들은 이 전염병에 의해 근소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불행히도 아동들이 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HIV/AIDS에 관한 유엔 합동계획(UNAIDS)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경향은 심상치 않은 것이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로운 감염자의 다수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층이었으며, 때로는 이보다 어렸다. 어린 소녀들을 포함한 여성 역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염된 대다수 여성은 그들이 감염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전염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들어와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들 역시 HIV/AIDS에 취약하며 이는 그들의 첫 성경험이 적절한 정보나 지침이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서 기인한다. 약물을 사용하는 아동 역시 높은 위험에 처해있다.

3. 그러나 주로 다음과 같은 특정한 생활환경에 의해 모든 아동들이 이에 취약하게 될 수 있다. (a) HIV에 감염된 아동, (b) 부모의 양육이나 교사의 부재로 인해 그리고/또

는 전염병의 결과로 인해 아동의 가족이나 공동체가 심각한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아동, (c) 감염되거나 영향을 받을 경향이 가장 높은 아동

II. 본 일반논평의 목적

4. 본 일반논평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HIV/AIDS와 관련하여 아동의 모든 인권에 대한 확인 및 이해를 강화하는 것
- (b)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동 협약)에 보장된 바와 같이 HIV/AIDS와 관련한 아동 인권의 실현을 증진시키는 것
- (c) HIV/AIDS의 예방, 감염 아동 혹은 이 전염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동의 지원, 간호, 보호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당사국들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바람직한 관행의 확인
- (d)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HIV/AIDS의 확산을 방지하고 영향을 경감시키는 아동 중심적인 행동 계획, 전략, 법률, 정책 및 계획을 증진하고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

III. HIV/AIDS에 관한 동 협약의 관점-전체적 아동의 권리에 근거한 접근

5. 아동과 HIV/AIDS의 문제는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의학 혹은 건강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권(동 협약 제24조)은 핵심적이다. 또한 모든 아동의 삶에 있어서 HIV/AIDS의 영향을 매우 크며, 따라서 이는 그들의 모든 권리-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 협약의 일반 원칙상의 권리들-비차별의 권리(제2조), 자신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받을 아동의 권리(제3조), 생명, 생존, 발달권(제

6조) 및 자신의 견해를 존중받을 권리(제12조)-은 예방, 치료와 간호, 지원의 모든 차원에 있어서 HIV/AIDS를 고려함에 있어 지도적 주제(guiding theme)가 되어야 한다.

6. HIV/AIDS를 다루는 적절한 조치들은 그들의 권리가 완전하게 존중되는 경우에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깊이 관련된 권리들은-상기에 언급된 일반원칙상의 네가지 외에-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 및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제17조), 예방적 건강관리, 성교육 및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제24조(f)),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제27조), 사생활의 권리(제16조),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제9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 국가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제20조), 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제24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권리(제26조), 교육과 여가의 권리(제28조 및 제31조), 경제적, 성적 착취와 학대 및 마약의 불법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32, 33, 34, 36조),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뿐만 아니라 약취유인, 매매 및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35조 및 제37조),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에의 권리(제39조)의 권리등이 있다. 아동들은 이 전염병의 결과로 인해 상기에 언급한 권리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동 협약은 포괄적인 접근과 함께 특히 네 가지의 일반원칙에서 전염병의 아동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강력한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동 협약의 이행에 요구되는 전체적인 권리에 근거한 접근방법은 예방, 치료와 간호 노력에 관한 광범위한 범위의 문제를 다루는데 최상의 도구이다.

A. 비차별의 권리(제2조)

7. 차별은 HIV/AIDS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HIV에 감염된 아동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HIV와 AIDS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 증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HIV/AIDS에 감염된 부모와 생활하는 소년, 소녀들은 그들 역시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그로 인한 차별이나 낙인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차별의 결과 아동들은 정보, 교육(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1을 참조), 건강 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공동체 생

활에의 접근을 거부당한다. 최악의 경우, HIV에 감염된 아동에 대한 차별은 그들 가족, 공동체 및 사회에 의한 유기로 이어진다. 차별은 또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원격지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같이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이 질병의 감염에 보다 더 취약하게 만듦으로서 이 전염병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는다.

8. 특히 우려되는 것은 성(gender)에 근거한 차별이 소녀들의 성적 활동에 대한 금기, 부정적 혹은 비판적인 태도와 결합되어, 종종 그들이 예방적 조치나 기타 서비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도 우려사항이다. HIV/AIDS에 관련된 전략의 고안에 있어서, 그리고 동 협약상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사국들은 성에 근거한 차별철폐의 관점에서 그들의 사회내의 규정된 성규범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규범이 HIV/AIDS에 대한 소년, 소녀의 취약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당사국들은 HIV/AIDS 측면에서의 차별이 소년들보다는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특히 인정해야만 한다.

9. 상기에 언급된 모든 차별적 관행은 동 협약의 아동권리의 침해이다. 동 협약의 제2조는 당사국들에게, “아동의 혹은 그들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 제2조에서의 “기타의 신분”은 아동이나 그들의 부모의 HIV/AIDS 감염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법률, 정책, 전략 및 관행들은 이 전염병의 영향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루어야 한다. 전략들은 또한 HIV/AIDS와 관련된 차별과 낙인찍기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

B.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10. HIV/AIDS의 예방, 간호 및 치료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성인을 위해 고안되어 왔으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고려”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동협약 제3조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그것이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이나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든지 간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 권리에 부가된 의무는 HIV/AIDS와 관련된 국가의 행위를 관리하는데 근본적인 것이다. 아동은 이 전염병에 대한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전략은 아동의 권리와 필요에 부합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C. 생명, 생존 및 발전에 대한 권리(제6조)

11. 아동은 그들의 삶을 임의적으로 박탈당하기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인기까지 생존하고, 또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실현의 국가의무는 비록 이것들이 특정 연령 집단에게 지배적인 문화적 규범상 수용될 만한 것인가에 대해 사회의 결정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행동 및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sexuality)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아들은 종종 조혼이나 강제결혼과 같이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종종 방해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HIV감염에 더욱 취약하도록 하는 해로운 전통적 관행의 대상이 된다.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들이란 적절한 정보, 생활 기술 및 예방조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성(sexuality)의 문제를 다루면서, 청소년기의 삶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D. 의견을 표시할 권리와 의견을 고려받을 권리(제12조)

12. 아동은 권리 소유자인 동시에 그들의 능력에 따라 그들의 삶에 대한 HIV/AIDS의 영향과 HIV/AIDS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개입은 그들을 결정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아동들이 그들의 필요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며,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더욱 이익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내외에서 동료교육자로서의 아동의 참여는 더욱 적

극적으로 증진되어야만 한다. 당사국들 및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은 아동을 지원하며 아동들이 그들의 자신의 제안을 실행하고, 국가적,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HIV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념화, 고안, 이행, 조정, 감독과 평가에의 완전한 참여를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회전반의 아동이 참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의 발전능력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표시하도록 장려하고, 그 견해를 경청하며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제12조 1항). 적절하다면 HIV/AIDS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들의 참여가 그들의 경험을 동료 및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 예방과 낙인 및 차별을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이다. 당사국들은 그러한 아동들이 상담후 인식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그들의 참여 후, 혹은 그 동안 정상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 장애물

13. 많은 장애물이 HIV/AIDS에 대한 공동체의 주도에 대한 지원과 간호 서비스 및 효과적인 예방의 전달을 방해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장애물들은 주로 문화적, 구조적, 재정적인 것들이다. 문제의 존재 자체의 부정이나, 금기와 낙인 등의 문화적 관행과 태도, 빈곤과 아동을 위하는척하는 태도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치적, 개인적 참여에 대한 장애물 중 일부일 뿐이다.

14. 재정적, 기술적, 인력 자원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그러한 자원들의 이용이 즉시 이용가능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애물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제4조상의 의무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본위원회는 자원의 제한이 당사국들에 의해 필요한 기술적 혹은 재정적 수단을 조금 혹은 충분히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화의 이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는 국제적 협력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IV. 예방, 간호, 치료 및 지원

15. 본 위원회는 예방, 간호, 치료 및 지원이 HIV/AIDS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있어서 상호 강화적인 요소이며, 연속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A. HIV 예방 및 인식고취에 대한 정보

16. 건강과 정보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제24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부합하여 아동들은 공식적인 수단(예를 들어 교육적 기회 혹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론)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수단(예를 들어 거리 아동, 시설아동 및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통해 HIV/AIDS의 예방 및 간호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당사국들은 아동의 이해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연령과 능력에 맞추어지고, 아동의 성(sexuality)에 부응하는 관련되고 적절하며 시의적절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위원회는, HIV/AIDS 예방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검열, 보류 또는 의도적으로 성교육 및 정보를 포함한 보건 관련 정보를 잘못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과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전권(제6조)을 확보할 의무에 따라 당사국들은 아동이 자신의 성(sexuality)을 발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다른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17. 공동체, 가족, 동료와의 대화 및 성과 건강한 생활에 관한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는 교내에서의 “삶의 기술”교육에 대한 제공은 소년 소녀 모두에 게 HIV예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접근방법임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아동집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예방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동에의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gender)의 차이를 언급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며, 아동들이 언어, 종교, 장애 혹은 기타 차별 요소들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을지라도 적절한 예방 메시지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내의 인식을 고양하려는 특별한 주의가 기울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협약 제 17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정보와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중매체

그리고/또는 구전 전통의 역할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질병 및 차별을 제거한다는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다. 당사국들은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들에게 질병정보의 제공, HIV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공포를 다루는 것, 이에 대한 무지, 낙인과 차별을 감소시키며, HIV/AIDS 인식 캠페인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B. 교육의 역할

18. 교육은 아동에게 HIV/AIDS에 대한 적절하고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인식고양과 이 질병을 이해하며, HIV/AIDS 희생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방지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교육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 위원회의 일반논평 No. 1을 참조). 나아가 교육은 아동들이 그들 스스로 HIV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HIV/AIDS에 감염되었거나, 고아가 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기초교육을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들의 의무를 환기시키기를 원한다. HIV가 만연한 많은 공동체에서 감염된 가족의 아동들은, 특히 소녀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AIDS로 사망한 교사 및 학교 고용인의 수는 아동이 교육을 받을 능력을 제한하고, 아동이 교육을 받을 능력을 파괴할 위험이 된다. 당사국들은 HIV/AIDS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아동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준비를 해야하며, 감염된 교사들을 대체할 자격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아동의 계속적 등교가 영향받지 않도록 하고,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모든 아동의 교육에의 권리(제28조)가 완전히 보장되도록 해야만 한다.

19. 당사국들은 학교가 아동에게 안전한 장소로서 안전을 제공하고, HIV감염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동 협약 제34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그중에서도 모든 아동이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되거나 강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C. 아동 및 청소년 인지적 보건 서비스

20. 본 위원회는 보건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여전히 18세 미만의 인구, 특히 청소년의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가 수많은 경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들은 친절하며, 지지가 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범위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접근이 가능하며, 적절하고, 비공개적이며, 비판적이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차별없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HIV/AIDS와 아동의 발달 역량을 고려하여 볼 때, 당사국들은 필요한 경우에 HIV/AIDS와 관련된 건강문제, 예를 들어 결핵과 기회감염되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하여, HIV와 관련된 간호와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HIV와 관련된 정보, 자발적인 상담과 검사, HIV 감염상태에 대한 지식, 비공개적인 성적, 생식 관련 보건 서비스, 무료 혹은 저비용의 피임기구, 방법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사생활의 권리(제6조)와 비차별을 완전히 존중하는 전문 인력을 보건서비스에 고용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21. 몇몇 국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우호적인 HIV 관련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토착민 아동, 소수민족 아동,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극빈층 아동이나 다른 사회에서 소외된 아동들에게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건 시스템의 전반적인 능력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HIV에 감염된 아동은 일상적으로 기초적인 보건 의료에의 접근이 거부되어 왔다. 당사국들은 보건서비스가 그들의 국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최대한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하며, 보건 서비스가 성별과 연령차이 및 아동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D. HIV 상담과 검사

22. 아동의 역량발달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발적이고, 비공개적인 HIV 상담과 검사서비스에의 접근 가능성은 아동의 건강과 권리에 기초적인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HIV의 전염과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아동의 능력과 HIV 특수진료, 치료 및 지원에의 접근, 아동의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계획의 수립에 필수적이다. 어떠한 아동도 필요한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아야 하는 동 협약 제24조의 의무에 부합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모든 아동들을 위한 자발적이고, 비공개적인 HIV 상담과 검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만 한다.

23. 본 위원회는 아동 권리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 당사국들의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이므로 당사국들은 모든 상황에서 강제적인 아동의 HIV/AIDS 검사 부과를 철회해야만 하며, 그에 대한 보호를 보장해야만 함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아동의 발달능력이 아동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나, 모든 경우에 동 협약 제13조 및 제17조에 의해 정보를 얻을 아동의 권리는 준수되어야만 하며, 당사국은 여하한 HIV 검사에 앞서 보건 서비스에 접촉하는 아동과 관련된 보건 의료 제공자에 의해 다른 의료적 조건이나 기타, 그러한 검사의 위험성과 이익이 충분히 조사되어, 충분히 고지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만 한다.

24. 당사국들은 건강과 사회복지 기반을 포함한 영역에서 아동의 사생활의 권리의 보호 의무(제16조)에 의해 HIV 검사결과와 비밀을 보장해야만 한다. 아동의 HIV 상태에 대한 정보는 동의없이 부모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만 한다.

E. 모자감염

25. 모자감염(MTCT)은 영아와 유아의 HIV 감염의 주요원인이다. 영아와 유아는 임신, 출산, 분만 및 수유를 통해 HIV에 감염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유엔 사무국에 의해 제시된 영아 및 유아의 HIV 감염 예방을 위한 정책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 이 정책에는 (1)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HIV 감염의 일차적 예방, (2) HIV에 감염된 여성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예방, (3) HIV에 감염된 여성으로부터 그들의 영아로의 HIV 전염의 예방, 그리고 (4) HIV에 감염된 여성, 그들의 아기와 가족에 대

한 지원과 간호, 치료의 제공이 있다.

26. HIV의 모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임신한 여성과 그들의 배우자에게 항레트로 바이러스제와 같은 기본적인 약품의 준비, 적절한 출산 전, 출산 혹은 분만 후의 간호와 자발적인 HIV 상담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임신 및 혹은 분만과 그들의 영아에게의 영양공급 중에 항레트로 바이러스제가 모자감염의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켜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가적으로 당사국들은 영아의 영양공급에 있어서 가능한 선택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만 한다. 당사국들은 HIV에 양성인 어머니들에 대한 상담은 영아영양 공급에 있어서 가능한 다른 선택의 이익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만 하며, 그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지속적인 지원 또한 여성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하다.

27. 높은 HIV감염 빈도를 보이는 집단에서일지라도 다수의 유아는 HIV에 감염되지 않은 여성으로부터 출산된다. HIV 음성인 여성의 영아와 그들의 HIV 상태를 알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 본 위원회는 모유수유가 최선의 양육 방법이며 동 협약 제6조 및 제24조와 합치하는 것임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HIV에 양성인 어머니를 가진 영아의 경우 모유수유가 HIV 전염 위험성을 10-20%정도 높일 위험이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나, 모유수유가 부족한 경우 아동이 HIV가 아닌 전염성 질병이나 영양실조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 유엔 전문기관은 대체 수유방법이 가능하고, 실행가능하며,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경우에 HIV에 감염된 어머니로부터의 모유수유를 전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생 후 첫 달 동안은 전적인 모유수유를 하고, 대체 수유가 가능해지는 대로 이를 중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F. 치료와 간호

28. 동 협약의 당사국의 의무는 비차별에 근거하여 아동이 필요한 HIV 관련 약품,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총체적인 치료와 간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는 정도로 확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들은 지역적 차원에서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필요한 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약업체와 협상을 해야만 한다. 나아가 당사국들은 동 협약 상 부여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총체적인 HIV/AIDS 치료, 간호와 지원의 일환으로 공동체의 참여를 확고히 하고, 지원하며, 촉진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당사국들은 치료, 간호 및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을 방해하는 사회 내에서의 그러한 요소들을 처리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

G. 연구에의 아동의 관련

29. 동 협약 제24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HIV/AIDS 연구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예방 및 간호, 치료와 아동에의 영향의 감소를 위한 특별한 연구를 포함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성인에 대한 충분한 실험이 실행되기 이전에 아동이 연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IV/AIDS의 작용, 사회적, 문화적, 행동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HIV/AIDS 생물 의학적 연구와 관련해서도 권리와 윤리적 우려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아동들은 참여에의 거절이나 동의에 대한 조금 혹은 어떠한 의사표현 없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고안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아동의 발달 역량에 따라 아동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며, 그 동의는 필요한 경우에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나 모든 경우에 동의는 아동에 대한 연구의 위험과 이익에 대한 완전한 설명에 근거해야만 한다. 당사국들은 나아가 동 협약 제16조의 의무에 따라 아동의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해야함을 인식해야 하며, 연구 과정 중에 부주의로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연구를 통해 획득한 아동에 대한 개인 정보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동의한 목적 이외의 것으로 사용될 수 없다. 당사국들은 연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아동 및 아동의 발달능력에 따라 그의 부모와/또는 보호자가 참여할 것을 보장하고, 그러한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을 지지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V. 취약성 및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30.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다른 요소들에 기인한 HIV/AIDS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은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부적절한 연구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HIV에 감염된 경우 필요한 치료와 간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아동이 속한 가정 및 공동체에서 HIV/AIDS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경향성을 결정한다. HIV/AIDS와 관련된 취약성은 극빈층 아동, 무력충돌의 상황에 놓인 아동, 소년병사, 경제적,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아동, 장애 아동, 이주민, 소수, 소수민족, 거리의 아동뿐만 아니라, 특히 난민상태인 아동과 국내실향민(IDP)캠프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구금중인 아동, 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에 더욱 높으나 모든 아동이 그들의 삶 속에서의 특정한 상황에 의해 취약해질 수 있다. 자원이 극히 제한된 경우일지라도 본 위원회는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만 하며 최소한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HIV/AIDS와 관련된 취약성의 감소에 있어 아동, 그들의 가족 및 공동체가 HIV/AIDS와 관련되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 관행, 정책에 대한 고지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A. HIV/AIDS에 의해 영향을 받아 고아가 된 아동

31. AIDS에 의해 고아가 된 아동, HIV/AIDS의 영향을 받는 가족에 속한 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상황이 HIV 감염에 대한 취약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HIV/AIDS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정의 아동에게 있어 그들이 경험하는 낙인과 사회적 고립은 교육, 보건, 사회적 서비스로의 접근의 상실이나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한 차별에 있어서의 그들의 권리의 위반이나 무시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아동들이 그것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 및 자신의 HIV 상태에 대한 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 유산, 주거, 보건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아동의 권리의 실현과 감염의 위험성 및 취약성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기술을 아동에게 제공하는데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32. 본 위원회는 HIV/AIDS에 영향을 받은 아동의 신원증명이 특히 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가족과 분리되었을 경우, 아동이 학대나 착취에 덜 취약하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권리의 보호 및 법 앞에서 개인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유산, 교육, 보건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이러한 점에서 출생등록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며 HIV/AIDS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생명에 미치는 HIV/AIDS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기도 하다. 당사국들은 따라서 모든 아동의 출생 혹은 출생 직후에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동 협약 제7조상의 의무를 명심해야만 한다.

33. HIV/AIDS가 고아들의 삶에 주는 충격은 그들 부모중 한명의 사망이나 질병으로부터 시작하여 낙인과 차별에 의해 종종 강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들은 특히 법 및 관행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고아의 유산 및 재산권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함을 명심해야 하며, 성(gender)에 근거한 차별이 이러한 권리의 실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동 협약 제27조 상의 의무에 합치하여 당사국들은 또한 AIDS에 의해 고아가 된 아동의 가족이나 공동체에게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해야만 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심리사회적 간호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도덕적, 경제적 및 사회적 발달을 위해 적절한 삶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34. 고아들은 친척이나 가족 구성원의 보호 하에서나 형제자매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잘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주변 공동체의 지원을 받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그 상처는 최소한이 되므로 주변에 가능한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이는 고아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지원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아동이 현재의 가족 구조 내에 남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택은 확대가족에 대한 HIV/AIDS의 영향으로 인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가족의 형태에 가까운 대체 수단(예를 들어 위탁가정제도)을 제공해야만 한다. 당사국들에게 필요한 경우에 아동 가장 가정에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지원등을 제공하는 것이 장려된다. 당사

국들은 그들의 정책이 HIV/AIDS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동체를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아들에게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그 공동체가 결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도록 해야 한다.

35. 비록 시설내의 양육이 아동의 발달에 이롭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시설양육이 공동체 내에서 가족에 기반한 아동에 대한 보살핌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HIV/AIDS에 의해 고아가 된 아동들을 보살피는 잠정적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모든 시설양육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조치들은 전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져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동 협약의 제3조, 제20조 및 제25조에 부합하여 그러한 시설들이 양육의 특별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법적보호를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엄격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시설에서 아동이 보낼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설정해야만 한다는 점과 HIV/AIDS에 감염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이 성공적으로 그들의 공동체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명심해야만 한다.

B. 성적, 경제적 착취의 희생자

36. 생존과 발달의 수단을 상실한 소년 소녀들, 특히 AIDS에 의해 고아가 된 아동은 생존이나 그들의 아픈, 혹은 죽어가는 부모와 어린 형제자매를 부양하기 위해, 혹은 수업료를 내기 위해 성적 서비스 또는 위험한 작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성적,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HIV/AIDS에 감염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아동은 그들 자신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소외 및 그들 자신 혹은 그들 부모의 HIV 상태에 근거한 이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협약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에 따라 그리고 HIV/AIDS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당사국들은 아동이 매춘 조직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혹은 그들의 교육적, 건강상,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혹은 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경제적,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들은 동 협약 제39조이하의 권리에 따라 아동을 성적, 경제적 착취와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할 뚜렷한 행동을 취해야만 하며 그러한 대우의 대상이 되었던 아동에게 국가와 이러한 문제에 참여하는 비정부실체에 의한 지원과 보살핌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C.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

37. 아동은 그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아동은 또한 그들이 HIV/AIDS에 영향을 받거나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강간 및 기타의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은 가정 내에서, 위탁가족 내에서, 그리고 교사나 혹은 교도소나 정신보건 및 기타 장애관련 시설의 고용인 등, 아동관련 기관에 고용되어 아동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동 협약 제19조 상의 아동의 권리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국은 가정에서이든, 학교나 기타 기관 혹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8.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 아동이 학대에 대하여 인식하고 설명할 능력, 그들의 개별적 능력과 자율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는 전쟁 및 무력 충돌의 상황에 놓인 아동이 겪는 HIV/AIDS와 폭력 혹은 학대와의 관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폭력과 학대의 방지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며, 당사국들은 군대나 기타 군무원 경찰등에 의해 가사도움이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용되고 있는 아동들-소년 소녀들- 혹은 난민 캠프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실향민인 아동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아동의 권리와 HIV/AIDS의 문제를 결합시킬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동 협약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 및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국가적, 공동체적 차원의 HIV/AIDS에 대한 대응에서 뿐만 아니라, 무력충돌의 상황 및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과 아동에 대한 상담, 폭력과 학대에 대한 조기예방과 발견을 위한 메커니즘이 결합되어야만 한다.

약물남용

39. 알코올 및 마약을 포함한 약물의 사용은 그들의 성적 행위에 대한 아동의 통제를 행사할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HIV 감염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살균하지 않은 장비로 주사를 하는 관행은 더 많은 HIV 전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본 위원회는 아동들의 약물 사용관행 및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무시나 침해가 이러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에 주목하는 바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들은 성인들을 주요 목표로 해 온 약물 사용과 관련된 HIV 예방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본 위원회는 HIV/AIDS 예방의 차원에서 약물 사용과 HIV 전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의 특별한 민감성과 생활양식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동 협약 제33조 및 제24조 아동의 권리에 따라 당사국들은 아동을 약물 사용에 노출되게 하는 요소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과 약물 남용아동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VI. 권고

40. 따라서 본 위원회는 HIV/AIDS(CRC/C/80)에 대한 일반 토론 당일에 도출했던 권고를 재확인하는 바이며 당사국들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 (a) 아동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 특별 회기(2002)에서 채택된 권고 및 이번 일반 논평의 이전 항목들에서 이루어진 권고들에 대한 고려와, 아동 중심의 권리에 근거하여 동 협약하의 아동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효과적인 행동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가적, 지역적 HIV/AIDS 관련 정책을 채택 및 이행할 것
- (b) 재정적, 기술적 및 인적 자원을 국내, 공동체 기반의 행동(제4조)을 지원하는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국제적 협력의 맥락에서(여기부터는 제7조 이하) 최대한으로 재배치할 것

-
- (c) 동 협약 제2조의 전적인 이행을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 본 위원회가 이전에 권고한 다른 항목들과 사생활 및 비밀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예견되는 HIV/AIDS 상태 혹은 실제의 HIV/AIDS 상태에 근거한 명시적인 차별을 특별히 금지하는 측면에서 이를 검토할 것
- (d) 아동의 권리를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한 국가적 메커니즘 작업에 있어서 HIV/AIDS 행동 계획,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새로운 입법기구나 행정기구의 설치, 혹은 현존하는 국가 기관에의 위임을 통해서 HIV/AIDS와 관련된 아동의 권리의 침해나 유기에 대한 청원을 특별히 다루기 위한 검토 절차의 설립을 고려할 것.
- (e) HIV 관련자료 수집과 평가가 협약의 정의대로 모든 아동을 포함하고, 이상적으로는 5세 단위로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구분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취약집단에 속하는 아동과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반영하도록 그 자료수집 및 평가를 재측정할 것
- (f)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4조의 보고절차에 국가적인 HIV/AIDS 정책과 프로그램, 가능한 한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차원에서의 예산과 자원 배치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 간호, 연구 및 영향 감소 등에 배정된 비율로 나누는 것에 대한 정보보고를 포함하며 가능한 이러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분명히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지(아동의 발달 능력의 관점에서)와 HIV 관련 아동의 권리가 그들이 고아이거나 HIV/AIDS에 감염된 부모와 살고 있기 때문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들의 HIV 상태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에 특별히 주의하여 법, 정책이 실제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HIV/AIDS와 아동에 관련하여 국가관할권 내에서 어떠한 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 보고서에서 상세히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며,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향후 5년간의 활동 프로그램의 개요를 소개

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점진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41.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본 위원회는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유엔인구기금, 에이즈에 관한 유엔합동계획 및 기타 관련국제 기구, 조직 및 기관에게 체계적으로 조력할 것과 각 국가에서는 HIV/AIDS의 맥락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HIV/AIDS의 맥락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본 위원회와의 협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개발협력에서 아동의 권리를 전적으로 고려하도록 HIV/AIDS 정책이 고안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42. 비정부기구, 공동체에 기반한 집단 및 청년 단체, 종교 조직, 여성 조직, 종교적, 문화적 지도자를 포함한 전통적인 지도자 등과 같은 기타 시민사회의 활동가들 모두가 HIV/AIDS에 대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당사국들에게는 다른 역할자들을 동참시키고 조화시키도록 하는 시민 사회의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보장할 것이 요청되며 그들에게 주어진 지원은 그들이 방해없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들은 특히 HIV/AIDS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적인 참여에 대한 지원을 장려해야하며 HIV/AIDS 예방, 간호, 치료 및 지원 서비스의 측면에서 아동의 참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註)

¹ 17번째 회기(1998)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HIV/AIDS와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한 일반 토론의 날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본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HIV/AIDS 문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포함한 많은 행동들을 권고하였다. HIV/AIDS와 관련된 인권 또한 1997년 인권조약기구위원장간 모임의 8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 의해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HIV/AIDS는 매년 인권위원회에 의해서도 지난 십년간 매년 논의되어 왔다. UNAIDS와 UNICEF는 그들의 업무와 관

련하여 모든 측면에서 HIV/AIDS와 아동의 권리의 관계를 강조해왔으며 1997년의 세계 AIDS 캠페인은 “AIDS와 함께 생활하는 세계의 아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1998년에는 “변화를 위한 힘: 청년들과 함께하는 세계 AIDS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UNAIDS와 UN 고등인권판무관실에서도 HIV/AIDS의 맥락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지침(1998)* 및 그 개정판 6(2002)을 발간하였다.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 HIV/AIDS와 관련한 권리는 아동에 관한 UN 총회 특별회기의 HIV/AIDS에 관한 실천선언, 아동이 살기 좋은 세계(*A World Fit for Children*) 및 기타 국제적 지역적 문서에서도 인정된바 있다.

제33차 회기 (2003)

일반논평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서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제1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동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주체이다. 청소년은 능력발달에 따라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으며, 발전하는 그들의 역량에 따라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제5조).

2. 청소년기는 성적 및 생식능력의 성숙을 포함한, 빠른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로 특징 지워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새로운 책임감을 수반하는 성인의 행동과 역할을 할 능력을 기른다. 청소년이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인구 집단에 속하기는 하나, 청소년기는 위험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그들의 상대적 취약성과 동료들 포함한 사회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건강과 발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내포한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인의 자아를 개발하고, 자신의 성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성인기의 역동적 이행기는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학습하고, 새롭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자유에 익숙해지고, 창조적이 되게 하며, 사회화하는 청소년의 능력에 의해 촉구된 긍정적인 변화의 시기이다.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동 협약상의 각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당사국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특별한 관심사와 그들의 건강과 발달을 촉진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왔음에 우려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를 동기로 당사국들에게 특별한 전략과 정책의 형성을 통해서 등, 청소년 권리의 존중, 보호, 실행을 보장하

려는 노력에 대해 당사국들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본 일반논평을 채택하였다.

4. 본 위원회는 “건강과 발달”의 개념을 동 협약 제6조(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와 제24조(건강권)의 정의규정에 엄격하게 제한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 일반논평의 목적 중 하나는 청소년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고, 잘 균형 잡힌 발달을 하며, 보다 넓게는 성인이 되어 그들의 사회와 공동체 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증진되고 보호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인권을 엄밀히 밝히기 위함이다. 본 일반논평은 동 협약과 “아동의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에의 참여에 관한 두 개의 선택의정서”와 관련 국제인권 규범 및 기준¹과 연관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I. 기본적 원칙들과 당사국의 기타 의무

5. 세계인권회의(1993)에 의해 인정되고 본 위원회에 의해 재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의 권리 역시 불가분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 제6조와 제24조 이외에도 동 협약의 다른 규정과 원칙들은 청소년이 건강과 발달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것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비차별의 권리

6. 당사국들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동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혹은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릴 것(제2조)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근거는 또한 청소년들의 성적지향과 건강상태(HIV/AIDS와 정신보건상태를 포함)도 포함한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며, 그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부터 특별한 주의와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다.

권리의 행사에 대한 적절한 지도

7. 동 협약은 부모(혹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의 책임과 권리 및 의무는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제5조). 본 위원회는 부모 혹은 기타의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는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할 권리와 책임을 조심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청소년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청소년의 견해를 고려할 의무와 청소년이 발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적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은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받는다면 완전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역량이 있는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아동의 견해의 존중

8.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와 이를 정당한 비중으로 고려받을 권리(제12조)는 또한 청소년의 건강 및 발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근본적이다. 당사국들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천부적인 기회가 있으며 이는 특히 가정, 학교,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이 권리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모 및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을 위해 일하는 다른 성인들은 신뢰, 정보 공유, 경청하는 역량과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청소년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지도에 기반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법적·사법적 조치와 절차

9. 동 협약 제4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건강과 발달에 관한 청소년의 권리의 맥락에서, 당사국들은 성에 관한 동의, 결혼 및 부모의 동의 없는 의학적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최저 연령기준을 포함하여 국내법상 특별한 법적 규정들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최저연령은 소년과 소녀에게 동일해야 하며(동 협약 제2조), 그들의 능력발달, 연령 및 성숙도(제5조,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권리 주체로서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의 지위에 대한 인정을 엄밀히 반영해야만 한다. 나아가 청소년들은 사생활의 권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제16조), 공정하고 적법적 절차가 보장되는 사법적, 적절한 사법적 구제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개인적 고소체계에 용이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10. 동 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제13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들은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본적이다. 제17조는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당사국들이 조혼 및 여성 할례, 알콜, 담배 및 기타 해로운 약물의 남용을 포함하는 해로운 전통적 관습으로부터의 보호, 사고의 예방, 가족계획과 같은 제24조 및 제33조에 포함되는 수많은 건강 관련 상황에 대한 법률,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들을 진흥하려면 적절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의 권리가 결정적이다.

11.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당사국들은 또한 건강 문제에 대한 조언과 상담(제16조)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사생활과 비밀의 권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장려된다. 보건의료 제공자들은 동 협약의 기본적 원칙을 명심하며, 청소년에 관한 의학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정보는 단지 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성인의 비밀에 대한 위반에 적용되는 동일한 상황에서만 공개될 수 있다.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의 참석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은 사생활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치료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비밀유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학대, 무시, 폭력과 착취 2로부터의 보호

12. 당사국들은 청소년들을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유기와 착취(제19조,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제38조)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이러한 연령대의 집단에게 주는 학대, 유기, 폭력과 착취의 특정한 형태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장애로 인해 학대와 유기에 더욱 취약하게 되는 청소년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채택해야만 한다. 당사국들은 또한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지역법, 국내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채택에 정보를 줄 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정과 인력자원이 할당될 필요가 있다. 정책과 전략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당사국들은 청소년의 능력발달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의 그러한 조치의 개발에 적절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위원회는 동료교육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특히 예술, 연예와 스포츠계 등의 적절한 역할 모델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자료수집

13. 당사국들이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당사국들은 다양한 집단의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성별, 연령, 출신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분류가 가능한 자료수집 메커니즘을 채택해야 한다. 자료는 인종 그리고/혹은 토착소수민, 이민 혹은 난민 청소년, 장애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특정한 집단의 상황에 대한 연구를 위해 수집되어야만 한다. 적절한 경우에 정보가 청소년에게 인지적 방식으로 이해되고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정보분석에 참여해야 한다.

II.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의 창출

14.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 상당부분이 결정된다.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와 종교지도자, 언론, 국가적 및 국내적 정책과 입법에 의해 창조되는 광범위한 환경은 물론 청소년의 직접적인 환경-가족, 동료, 학교와 서비스-의 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동 협약의 규정과 원칙의 보장과 집행에 있어서, 특히 제2조 내지 제6조, 제12조 내지 제17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는 건강과 발달에 대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핵심적이다. 당사국들은 인식고양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정책의 형성이나 법안의 채택 및 특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해 행동을 고무하거나 규제해야 한다.

15. 본 위원회는 확대가족과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자(제5조, 제18조)를 포함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몇몇 가정은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16.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청소년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a) 부모(혹은 법적 보호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물질적인 보조와 영양, 의복, 주거에 관한 지원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하는 시설, 설비와 서비스의 개발(제27조 3항), (b) 예를 들어 성(sexuality), 성적 행동(sexual behavior)과 위험한 생활방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신뢰와 비밀유지의 관계 발달을 용이하게 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 3항), (c) 청소년인 부모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제24조 (f), 제27조 2항, 3항), (d) 인종적, 기타 소수자의 가치와 규범을 존중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다른 전통과 규범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과 그의 부모(혹은 법적 보호자)에게 지원과 지침을 주는 것, (e) 학대나 유기와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개입을 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입이 합법적인 법과 절차에 따라 이행될 것임을 보장하는 것 등의 조

치를 통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킬 입법, 정책, 프로그램 개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러한 법률과 절차는 동 협약의 원칙과의 합치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17. 학교는 많은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학습, 발달과 사회화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29조 1항에서는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을 목표로 해야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부가하여, 교육의 목적에 대한 일반논평 1에서는 “교육은 어떠한 아동도 자신이 삶속에서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기본적인 기술이 포함되어야만 하며...잘 균형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방식과 바람직한 사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교육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의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현재 및 미래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적절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동 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a) 양질의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이용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무료일 것을 보장하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할 것을 보장하고, (b) 식수와 위생 및 안전한 등교를 포함하여, 학생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주지 않는 제대로 기능하는 학교와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c) 학생들간 뿐만 아니라 학교에 고용된 사람에 의한 교내에서의 성적 학대, 체벌 및 기타의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처우나 처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학대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d) 학교 교과과정에서 적절한 주제를 포함하는 것을 통해 건강한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 태도 및 활동을 제안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18. 청소년기에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경제영역으로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혹은 임금을 벌기 위해 학교를 떠나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활동에의 참여는 건강 및 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의 기타의 다른 권리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청소년의 발달에 이로울 수 있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최악의 형태의 노동에서부터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고용최저 연령에 대한 국내 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근로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작업 환경과 조건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ILO 협약 제 138 및 182뿐만 아니라, 동 협약 제32조에 따라) 근로청소년들이 완전히 보호받고 법적 구제메커니즘에 접근권을 갖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19. 본 위원회는 또한 동 협약 제23조 3항에 따라 장애 청소년의 특별한 권리가 고려되어야만 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력을 제공해야함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가능한 정규 학교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초등, 중등, 제 3차(대학 및 직업교육) 교육 기회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만 한다.

20. 본 위원회는 조혼과 임신이 HIV/AIDS를 포함한 성 및 생식과 관련된 건강문제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결혼의 법적 최저연령과 실제 결혼연령 모두가 특히 소녀들에게 있어서 몇몇 당사국에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건강과 관련되지 않은 주요 우려사항으로, 결혼한 아동, 특히 소녀들은 교육 시스템에서 떠나도록 종종 강요받으며,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몇몇 당사국에서는 결혼한 아동이 법적으로 성인으로 취급받게 되어 그들이 18세 이하라 할지라도 동 협약상 부여된 아동을 위한 모든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소년, 소녀 모두에게 부모의 동의하에 혹은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8세까지 높이도록 그들의 법률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권고를 한 바 있다(1994년의 일반논평 21).

21.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 혹은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청소년들이 사망이나 영구 장애에 이르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청소년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주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에 대해 우려한다. 당사국들은 청소년을 위한 운전 교육 및 시험, 그리고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 안전벨트 착용과 헬멧 착용 및 보행자 구역 지정책임과 같은 고도로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진 법률을 채택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도로를 안전하게 개선하는 법률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시행해야만 한다.

22. 본 위원회는 또한 이 연령대의 매우 높은 자살율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정신적 혼란과 심리사회적 질병은 청소년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흔하다. 많은 국가들에서 우울증, 섭식 장애와 자기 파괴적 행동 때로는 자해와 자살과 같은 행동을 이끄는 증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폭력, 부당한 처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대나 유기,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와/혹은 교내외에서의 괴롭힘과 못살게 구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23. 폭력은 개인, 가족, 공동체와 사회적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의 복합으로부터 기인한다. 가정이 없거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갇힌 채에 속해있거나 혹은 소년병으로 징용되었던 것과 같이 취약한 청소년들은 기관적인 폭력과 개인간의 폭력 모두에 노출된다. 동 협약 제19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a) 청소년을 위한 공적, 사적 시설(학교, 장애 청소년을 위한 시설, 소년원 등)과 시설에 있는 아동을 훈련하고 감독하는 사람 혹은 경찰을 포함한 그들의 업무를 통해 아동과 접촉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입법, 행정 조치들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청소년 시설에서의 폭력과 (b) 비폭력적인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육성하고, 무기를 다루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알콜과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및, 적절한 부모의 기능과 초기에 사회적 및 교육적 발달 기회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청소년간의 개인적인 폭력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³를 취해야만 한다.

24. 동 협약의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9조 및 제24조 3항의 건지에서 당사국들은 명예살인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생명권에 위협이 되는 모든 행동과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인식각성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하고, 사회에 지배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입법, 그리고 해로운 전통적 관행에 기여하는 성역할 및 고정관념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당사국들은 조혼과 여성할례를 포함한 몇몇 전통적 관행의 해로운 측면에 관한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정보와 자문 센터의 설립을 촉진해야만 한다.

25. 본 위원회는 건강하지 않은 상품과 생활유형에 대한 마케팅이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한다. 동 협약 제17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다양한 국내적,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한편, 청소년들을 그들의 건강과 발달에 해로운 정보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청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알콜 및 담배와 같은 약물의 마케팅 및 정보를 금지하거나 규제해야하며 특히 이것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⁴

Ⅲ. 정보, 기술 개발, 상담 및 보건 서비스

26. 청소년들은 그들의 건강과 발달 및 유의미한 사회참여를 위한 그들의 능력에 필수적인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학교내의 청소년, 학생이든 비학생이든 간에 소년 소녀들이 그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하고 발달시키며, 어떻게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러한 정보를 부인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담배, 알콜과 기타 약물의 사용과 남용, 안전하고 존중받을 만한 사회적, 성적 행동, 식이 및 신체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만 한다.

27. 정보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적절한 개인적인 위생습관과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계획하고 준비할 것인지와 같은자가보호 기술을 포함하여, 개인간의 의사소통, 의사결정 및 스트레스와 분쟁을 극복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을 다루는 기술 등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당사국들은 특히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청소년 단체와 언론을 통해 그러한 기술을 훈련할 기회를 고무하고 지원해야 한다.

28. 동 협약 제3조, 제17조, 제24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청소년에게 성(sexual) 과 생식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족계획, 피임, 조기 임신의 위험, HIV/AIDS의 예방과 성감염질환(STDs)의 예방과 치료가 포함된다. 이에 부가하여, 당사국들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혼인 여부 및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청소년인 소년과 소녀들의 특정한 권리와 특성에 적합하고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들은 청소년의 학교를 넘어선, 청소년단체, 종교, 공동체 및 기타 집단 및 언론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보의 고안과 보급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확보할 것이 장려된다.

29. 동 협약 제24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해야만 하며, 공동체가 이러한 상태의 심각성과 조기징후증세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부적절한 압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 촉구된다. 당사국들은 또한 제2조의 의무에 따라 정신적 장애를 둘러싼 차별과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싸우도록 촉구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모든 청소년은 가능한 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치료받고 간호 받을 권리를 지닌다. 입원이나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 이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입원이나 시설로의 위탁의 경우에 환자에게는 교육에 대한 권리 및 여가활동을 할 권리를 포함하여, 협약 상 인정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⁵ 적절한 경우, 청소년들은 성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한다. 당사국들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청소년들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족 구성원 외의 개인적인 대리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⁶ 동 협약 제25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병원이나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청소년의 배치상태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30. 청소년들, 소년 소녀 모두는 HIV/AIDS를 포함하여 성병(STDs)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감염될 위험이 있다.⁷ 당사국들은 HIV/AIDS를 포함한 성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재화, 서비스 및 정보가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들은 (a) 피임 및 성병예방에 관한 청소년의 필요성에 대한 문화적 시각의 변화 및 청소년의, 청소년의 성(sexuality)을 둘러싼 문화적 및 기타 금기를 다루는 목적의 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b) 청소년의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HIV를 포함, 성병에 대한 청소년의 감염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이미 이에 감염된 청소년의 소외의 원인이 되는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고, (c)

정보, 콘돔과 같은 예방 조치, 간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촉구된다.

31. 청소년기의 소녀들은 조혼과 조기임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하며, 임신한 소녀들은 그들의 권리 및 특정한 필요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한다. 당사국들은 특히 조기 임신, 안전하지 않은 낙태 관행에 의해 초래되는 청소년기의 소녀들의 모성사망율과 질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청소년인 부모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만 한다. 어린 어머니들, 특히 지원이 없을 경우 우울하고 불안해지기 쉬워, 자신의 자녀양육능력을 손상시킨다. 본위원회는 당사국들이 (a) 가족계획, 피임 및 낙태가 위법이 아닌 경우에 안전한 낙태 수술을 포함한 성(sexual) 및 생식관련 보건 서비스와 적절하고 종합적인 산부인과 간호와 상담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과 (b)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청소년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태도를 고양시키고, (c) 청소년인 어머니들이 그들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32.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이전에 청소년들은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견해는 동 협약 제12조에 따라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 청소년이 충분히 성숙한 경우에 청소년은 그 자신의 고지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이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 경우에 부모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3조)

33. 사생활과 비밀유지 및 치료에의 고지된 동의와의 관련 문제에 관하여, 당사국들은 (a) 청소년에게 치료에 관한 비공개 조언이 제공되어, 청소년이 고지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하고, (b) 보건 인력에게 사생활과 비밀유지 및 계획된 치료에 대해 고지받고, 치료에 대한 고지된 동의를 할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IV. 취약성과 위험

34. 건강과 발달에 대한 청소년의 권리의 존중의 보장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개인적인 행동과 환경적 요소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무력충돌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환경적 요소는 학대, 폭력과 착취의 다른 형태에 대한 청소년의 취약성을 증가시켜 개인적이고, 건강한 행동을 하도록 결정하는 청소년의 능력을 극도로 제한시킨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성관계를 맺도록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을 증가시킨다.

35. 동 협약 제23조에 의해 정신적 그리고/또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가질 동등한 권리가 있다. 당사국들은 장애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⁸ 당사국들은 (a) 보건 시설, 상품, 서비스가 모든 장애청소년들에게 이용가능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하며, 이러한 설비와 서비스가 그들의 자립과 공동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해야 하고, (b) 장애청소년들이 이동하고, 참여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c) 장애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특별한 필요성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며, (d) 장애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36. 당사국들은 비공식적 영역에서 근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가정이 없는 청소년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가정이 없는 청소년들은 특히 타인에 의한 폭력, 학대와 성적 착취, 자기 파괴적 행동, 약물 남용과 정신적 장애에 취약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들은 (a) 예를 들면 법집행관등의 폭력으로부터 그러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b) 적절한 교육과 보건의료에의 접근, 생활의 기술의 개발을 위한 기회의 제공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37. 성매매, 음란물을 비롯하여,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성병, HIV/AIDS, 원하지 않은 임신, 안전하지 않은 낙태, 폭력과 정신적 고통 등의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은 건강과 자기 존중 및 존엄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

에서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복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39조). 당사국들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관련된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하고 시행하며, 국제적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해 타 당사국과 협력하고, 성적으로 착취당한 청소년들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다룰 것을 보장하며 적절한 보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8. 이에 부가하여, 빈곤, 무력충돌, 모든 형태의 부정의, 가정 파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과 여하한 형태의 이주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특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예방적 정책과 조치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당사국들은 취약성과 위험성의 요소의 수준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당사국들은 또한 자유로운 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게 할 비용 효율적 방법들을 사회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V. 국가 의무의 성격

39.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련된 국가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항상 동 협약상의 네 가지의 일반 원칙을 전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동 협약 상 인정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발달에의 권리의 실현과 감독을 위해 당사국들이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견해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다음의 의무를 특히 수행해야 한다.

- (a) 가정, 교내, 청소년이 거주하는 모든 형태의 시설, 청소년의 일터 그리고/또는 넓게는 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만들 것
- (b) 청소년들이 그들의 건강과 발달에 필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고(명확히 고지된 동의와 비밀 유지 권리를 통해)와 삶의 기술을 획득하며, 적절하고, 연령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고, 적절한 건강에 대한 행동을 선택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것

-
- (c) 양질의 그리고 청소년의 관심에 민감한 정신적, 성적, 생식건강을 위한 상담과 보건서비스를 포함한 보건 설비, 상품과 서비스가 모든 청소년에게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d) 청소년인 소년과 소녀들이 그들 자신의 건강과 발전을 위한 입안과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것
 - (e) 특히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철폐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노동 환경과 조건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 권리의 향유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노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
 - (f) 폭력과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고의적, 비고의적 상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
 - (g) 조혼, 명예살인과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해로운 전통적 관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
 - (h) 전술한 모든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특별히 취약한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
 - (i) 청소년들의 정신적 장애의 예방과 정신보건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

40.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은 청소년을 위해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고, 생존기술을 습득하고,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며, 그들이 결정할 건강관련 행동에 대한 상담을 받고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지원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 실현은 비밀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성적, 생식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청소년에게 민감한 보건의료의 발달에 달려있다.”라고 선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달성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4에 대한 당사국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다.

41. 제24조 및 제39조 와 동 협약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모든 청소년의 인권과 특정한 필요에 민감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a) *이용가능성*. 기초보건 의료는 청소년의 필요에 민감한 서비스를 포함해야만 하며, 성적, 생식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 (b) *접근가능성*. 보건 설비, 상품과 서비스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알려져있고, 차별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경제적, 물리적, 사회적으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를 보장해야만 한다.
- (c) *수락가능성*. 동협약상의 원칙과 규정을 충분히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보건 설비와 상품, 서비스는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만 하며, 성(gender)인지적이고, 의료윤리를 존중해야만 하며, 청소년과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와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 (d) *질*. 보건 서비스와 상품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적절해야만 하며, 이는 훈련된 청소년 간호 인력과 적절한 설비 및 과학적으로 수용되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42. 당사국들은 가능하다면 모든 관련 행위자간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결과 파트너십을 촉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부문적 접근방식을 택해야만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한 접근방식은 모든 관련 정부 실체의 필수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의 밀접하고 체계적인 협력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청소년이 이용할 공중 보건과 기타 서비스는 취약 청소년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히 사적 그리고/혹은 전통적 실무자, 전문가 협회, 약사와 단체와의 협력을 구하도록 격려 받고 이들로부터 조력을 받아야만 한다.

43.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부문적 접근은 국제적 협력 없이 효과적일 수 없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적절하다면 유엔특수 기관, 프로그램과 기

구, 국제 비정부기구 및 양자적 원조 기관, 국제 전문가 협회 및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구해야만 한다.

주(註)

¹ 여기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이 포함된다.

² 2000년과 2001년에 개최된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본 위원회의 일반 논의의 날의 보고서 및 이러한 관점에서 채택된 권고를 참조(CRC/C/100, chap.V 와 CRC/C/111, chap.V를 참조)

³ Ibid.

⁴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본 협약(2003)”에 제안된 바와 같다.

⁵ 이 주제에 대해 심화된 지침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정신 보건 서비스 증진에 대한 원칙”을 참조(1991년 12월 17일자 총회 결의 46/119, 부록)

⁶ Ibid., 특히 원칙 제2, 제3, 제7.

⁷ 이 주제에 대해 심화된 지침을 위해서는 “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3(2003)”을 참조

⁸ 유엔 장애인의 균등한 기회에 관한 기본 규칙

제 34차 회기 (2003)

일반논평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서문

아동의 권리에 관한 본 위원회는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의 의미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사국들의 의무에 대한 초안을 잡기 위해 본 일반논평을 작성하였다. 이 개념의 다양한 요소들은 복합적이며 본 위원회는 적절한 과정에서 확장하여 개별적 요소에 관한 더욱 세부적인 일반논평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일반논평 2(2002)는 이미 이러한 개념을 확장한 바 있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 서언

1. 국가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때, 국가는 국제법상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행은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내에서의 아동을 위한 동 협약상의 모든 권

리의 실현을 보장할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다.¹ 제4조에서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에 포함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당사국의 이행의 의무-아동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아동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분야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모든 국내적 법률이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고, 협약상의 원칙과 규정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덧붙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특별한 체제의 개발과 감독, 훈련 및 모든 수준의 정부, 의회와 사법기관의 다른 모든 활동을 포함한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조치들을 확인한 바 있다.²

2. 동 협약에 의한 당사국의 보고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에서 본 위원회는 “이행의 일반 조치들”의 용어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본 위원회가 검토 후 펴낸 최종 견해에서 본 위원회는 일반 조치들과 관련된 특별한 권고들을 제안하였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 회의 정기 보고에서 이러한 권고들에 대하여 취한 행위를 설명할 것을 기대한다. 본 위원회의 보고지침은 협약 조문을 몇몇 집단(cluster)으로 배열하였고, 그 첫째가 “이행의 일반 조치에 관한” 것으로 제4조와 제42조(동 협약의 내용을 아동과 성인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 본 논평 제66항 이하를 참조) 및 제44조 6항(국가 내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고를 제출할 의무, 본 논평 제71항 이하를 참조)이다.³

3. 이러한 규정들에 부가하여 기타 일반 이행의무가 제2조에 기술되어 있다. “당사국은 여하한 종류의 차별 없이 현재의 협약에서 수립된 그들의 관할권 내에 각각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4. 또한 제3조 2항에 의해서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적 보호자 혹은 아동의 법적 책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에게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간호의 보장을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5. 국제인권법에는 동 협약 제4조와 유사한 조문이 있는데,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조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제2조와 같이 전반적인 이행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들에 관련하여 일반논평을 발행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의 일반논평 및 이하에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⁴

6. 제4조는 당사국의 전반적인 이행의무를 반영하고 있는 한편, 두 번째 문장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권 혹은 협약상의 권리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단순하거나 권한있는 구분은 없다. 본 위원회의 보고 지침은 “시민적 권리와 자유”라는 제목 하에 제7조, 제8조,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37조 (a)를 묶어두었으나, 문맥상 이들만이 동 협약상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 실제로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와 같은 많은 다른 조문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향유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있다. 이하 제25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사법심사가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고 간주한다.

7. 제4조의 두 번째 문장은 몇몇 국가에서는 자원-재정적인 그리고 기타의 자원의 부족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분한 이행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하였으며 국가들은 그들의 “가용자원의 최대한의 한도까지”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을 구해야만 한다. 국가가 동 협약을 비준하였을 때 국가들은 그들의 관할권내에서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인 이행에 기여할 의무도 부담한다(이하 제60항 참조).

8. 그 문장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사용된 문장과 유

사하며 본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가용자원이 명백하게 부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관련 권리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는 남아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⁵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국가는 아동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가장 혜택받지 못한 집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9. 본 위원회에 의해 확인되고 현재의 일반논평에서 설명된 이행의 일반 조치들은 입법, 조정과 감시를 위한 -정부의 독립적인-기구의 설립,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 인식고양과 훈련 및 적절한 정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동 협약상의 모든 권리의 전적인 향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동 협약의 채택과 가장 보편적인 비준에 따른 만족스러운 결과 중 하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광범위하게 다양한 새로운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 인지적 기구와 조직, 활동들-중앙 정부의 아동권리 부서, 아동부, 아동에 관한 행정부서간 위원회, 의회 위원회, 아동의 영향 분석, 아동의 예산과 ‘아동권리의 상태’에 대한 보고, 아동 권리에 관한 비정부 기구의 연합, 아동 옴부즈맨 및 아동 권리 위원회 등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10. 비록 이러한 발달 중 일부는 대부분 표면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들의 등장은 적어도 사회 내에서 아동의 지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아동에게 보다 높은 정치적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의지 및 아동과 그들의 인권에 대한 통치행위의 영향에 대한 증가된 민감성을 나타낸다.

11.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맥락에서 국가들이 각각의 아동에게, 그리고 모든 아동에 대한 분명한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을 인식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아동 인권의 이행은 아동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선행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12. 협약 전체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본 위원회에 의해 일반원칙으로 확인된 동 협약상의 다음의 조항에 따라 정부, 의회 및 사법기관의 아동 권리의 대한 관점 개발이 요구된다.

제2조: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동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비차별의 원칙은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의 인정과 실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개별 아동과 아동 집단을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특히 차별이나 잠재적인 차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될 수 있는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차별을 해결하는 데에는 입법, 행정,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변화 및 태도변화를 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권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에 있어서의 비차별의 적용이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은 차별을 가져오는 조건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⁶

제3조 1항: 아동에 관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본 조항은 “공공 또는 사적 사회 복지 기관, 법원, 행정 당국 혹은 입법 기구”에 의한 행동에 관련되어 있다. 동 원칙은 정부, 의회 및 사법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입법, 행정 및 사법 기구나 기관은 예를 들어 제안된 혹은 현재의 법, 정책, 행정행위나 법원의 결정 등,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 의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청된다.

제6조: 생명에 대한 아동의 고유의 권리와 가능한 최대한으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 본 위원회는 국가들이 “발달”을 전체적인 개념에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도덕적, 심리학적 및 사회적 발달을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하기를 기대한다. 이행조치들은 모든 아동이 최적의 발달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이에 대한 존중. 동 원칙은 아동의 권리의 증진, 보호 및 감독에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아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국가의

모든 조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아동에게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개방하는 것은 위원회가 발견한 긍정적인 변화이다.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와 의회에서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아동의 견해를 존중을 보장하여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 만약 협의가 유의미하려면 자료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접근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은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동의 견해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그를 통해 국가가 아동과 상호교류하고, 아동을 위한 국가의 행위가 아동 권리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아동 의회와 같은 일회의 혹은 정기적인 행사는 일반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고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에서는 지속적이고 진행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의 참여 및 아동과의 협의는 또한 명목상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 대표적 견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제12조 1항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강조는 특정한 문제에 대한 특정 아동집단의 견해의 확인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소년 사법 제도를 경험한 아동의 그 영역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혹은 입양 아동과 수양가정에 있는 아동의 입양법이나 정책에 대한 견해 같은 것일 수 있다. 단순히 비정부기구나 인권 기구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동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 협약의 초기에 비정부기구들은 아동의 참여적 접근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적절한 직접적 접촉을 하는 것은 아동과 정부 모두의 이익이다.

II. 유보의 검토

13. 이행의 일반조치에 관한 보고지침에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국가의 유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거나 혹은 이를 철회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⁷ 동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에 대한 비준이나 수락 당시에 유보를 할 권리가 있다(제51조). 아동의 인권에 관한 전적이고 조건없는 존중을 보장하려는 본 위원회의 목적은 국가들이 그들의 유보를 철회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그 보고서의 검토시에 지속적으로 유보를 검토하고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 검토 후에 국가가 유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 위원회는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요구한다. 본 위원회는 “(비엔나) 세계 인권 회의”에서 유보를 재검토하고 철회하도록 장려한 것에 대한 당사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⁸

1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제2조에서는 “유보”를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성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성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은 당사국들이 조약의 수락이나 비준 시에 “조약의 목적과 대상에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유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1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1조 2항은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예를 들어 협약에 대한 존중이 종교법의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의 현행하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고 제시함으로써 몇몇 국가들이 제51조 2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유보를 행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서는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본 위원회는 몇몇 경우에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의해 행해지는 광범위한 유보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표현해왔음에 주목하는 바이다.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에 의한 동 협약에의 가능한 한 완전한 존중이 보장되는데 기여할 모든 행동을 권유하는 바이다.

Ⅲ. 기타 핵심적인 국제 인권 문서의 비준

17. 이행의 일반조치에 대한 고려의 일부로서, 그리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속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두 가지 선택의정서(“무력 충돌에의 아동의 참여에 관한 의정서”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하고, 기타 주요한 국제 인권 문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당사국과의 대화 중에 본 위원회는 종종 당사국들이 다른 관련 국제 문서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장려하였다. 이 문서들의 비 열거적인 목록은 본 일반논평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 목록을 때때로 갱신할 것이다.

Ⅳ. 입법적 조치

18.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국내법과 관련 행정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국가의 의무라고 믿는다. 동 협약에 따른 최초 뿐만 아니라 현재의 2차, 3차 정기 보고서의 검토를 통한 본 위원회의 경험상, 국가차원의 검토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시작되었으나 더욱 엄밀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검토 시에는 개개 조문 만이 아니라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하여 동 협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는 일회성이기 보다는 지속적인 필요가 있으며 현존하는 법률을 비롯하여 입법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토 절차가 모든 관련 정부 부서의 조직에 설립되는 것이 중요한 한편, 예를 들어 국회 위원회와 공청회, 국가 인권 기구, 비정부 기구들, 학계, 영향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 등에 의한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자국의 국내법 체제 내에서 동 협약의 규정이 법적 효력을 지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많은 당사국들에게 도전으로 남아있다. “자기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국가 및 동 협약이 “헌법적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 혹은 국내법으로 수용한 국가에서의 동 협약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특히 중요하다.

20.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환영하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는 아니지만 몇몇 경우에 국제 인권 문서의 이행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다. 수용은 동 협약의 조문이 법원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으며, 국가 기관에 의해 적용되고, 국내법이 나 일반적 관행과의 충돌이 있을 때 동 협약이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국가에 의한 수용은 어떠한 지방의 법 또는 관습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내법이 동 협약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회피하지 않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비추어 법률 간의 여하한 충돌이 있는 경우에 동 협약이 항상 우선해야만 한다. 국가가 입법권한을 연방 지방 정부나 지역정부에 위임한 경우에, 이러한 보조적인 정부가 동 협약의 체제 내에서 입법해야만 하며, 실효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이 역시 요구되어야 한다(이하 제40항 및 그 이하를 참조).

21. 몇몇 국가는 위원회에 “모두”를 위한 권리의 보장을 자국의 헌법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동의 이러한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적용가능한 권리가 아동을 위해 실제로 실현되는지와 법원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 국내 헌법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을 환영하며, 이는 동 협약의 핵심적 메시지-성인과 아동 모두가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함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권리와 적절한 경우 아동 자신에 의한 이러한 권리행사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부가적인 입법과 기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22. 본 위원회는 특히 동 협약에서 확인된 일반 원칙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상기 제12항을 참조))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원칙을 두드러지게 하고, 강조할 수 있는 통합된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의 발전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이에 부가하여 모든 관련 “분야별”(교육, 보건, 사법 및 기타) 법률이 동 협약의 원칙들과 기준들을 일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3.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제41조에 따라 동 협약에 포함

된 것보다 더욱 아동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행할 것을 장려하는 바이다. 본 위원회는 기타 국제 인권 문서들이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을 강조한다.

V.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

24. 권리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 위반을 시정하도록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이 요건은 동 협약에 내포되어 있고, 기타 6개의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아동의 특별하고 의존적인 지위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들은 구제조치가 실효적이고, 아동에 민감한 절차가 아동 및 그들의 대표자에게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아동 우호적인 정보, 조언 및 자기변호를 위한 지원을 포함한 옹호, 필요한 법적 그리고 기타 조력으로 독립적 청원절차나 법원에의 접근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 권리의 위반이 발견되면, 제39조의 요구대로 배상 및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적, 심리적 회복, 재활 및 복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만 한다.

25. 상기 제 6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비롯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사법적 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내법이 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조치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 충분히 세부적으로 법적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VI. 행정적 및 기타 조치

26. 본 위원회는 각각의 혹은 모든 당사국이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할 적절하다고 생각할 조치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한 첫 십년간의 경험과 정부 및 유엔, 유엔 관련 기관들, 비정부기구 및 기

타 관련 기구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본 위원회는 국가들을 위한 몇몇 핵심적인 조언을 여기에 제시하였다.

27.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은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부, 정부의 각 차원 간, 정부와 시민사회,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사이를 넘어서는 분명한 부문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반드시 많은 다른 정부 부서와 기타 정부 혹은 준정부기구들은 아동의 삶과 그들의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권리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부 부서는 거의 없다. 모든 수준의 정부절차 내에 엄격한 이행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하며, 또한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 및 기타 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A. 협약에 근거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의 개발

28. 만약 전체적이고 모든 차원의 정부가 아동의 권리의 증진과 존중을 하고자한다면, 동 협약에 근거한 통일적이고, 종합적이며 권리-기반의 국가 전략의 기초위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다.

29.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체제 내에서 아동을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이나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 전략을 개발하고/하거나 검토할 때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본위원회의 권고들을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한 전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전략이 모든 아동의 상황 및 동 협약의 모든 권리에 관련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 및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과의 협의를 포함한 협의 과정을 통해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12항), 아동과의 의미있는 협의는 특히 아동에 민감한 주제와 과정을 요구하며 이는 단순히 아동에게 성인의 절차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0. 소외되고 불리한 아동 집단을 확인하고 우선권을 주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 협약상의 비차별의 원칙은 동 협약에 의해 보장된 모든 권리가 국가 관할권내의 모

든 아동에게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제12항) 비차별의 원칙은 차별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1. 전략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력이 그 권한 부여 기관이 최고위 정부 기관에 의해 승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국가개발 계획에 연계되고 국가 예산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략은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채 남아있을 것이다.

32. 전략은 단순히 좋은 의도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가전체의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과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해야만 한다. 전략은 정책과 원칙의 기술을 넘어서서 모든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모든 범위와 관련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적을 설정해야만 한다. 종합적인 국가 전략은 예를 들면 교육이나 보건과 같이 특정한 분야의 특정 목표와 그를 위한 이행조치, 재정과 인적자원의 배치를 설정하는 국가 행동계획으로 더욱 정교화 될 수 있다. 전략은 필연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나 이것이 동 협약 상 당사국이 수락한 세부적인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과하거나 희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전략은 인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33. 국가 전략의 개발은 일회성의 과제가 아니다. 한 번 수립된 전략은 정부전체를 통해서 아동을 포함한 공공에 광범위하게(적절한 언어와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아동 우호적으로 번역되어) 보급될 필요가 있다. 전략은 감독과 지속적인 검토, 정기적인 개선과 의회 및 공공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위한 제도들을 포함해야 한다.

34. 1990년에 개최된 제 1차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이후 국가들이 개발하도록 장려된 “국가행동계획”은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국가들에 의한 특별한 서약과 관련되어 있다.⁹ 1993년, 인권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은 국가들이 그들의 국가 인권 행동 계획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합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⁰

35. 2002년의 아동에 관한 유엔 총회의 특별 회기의 결과문서에서는 또한 국가들에게 “가능하다면 2003년 말까지 긴급하게 이 행동계획에 기초한 특정한 시간적 한계와 측정 가능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국가적, 그리고 적절하다면 지역적 행동계획을 개발하거나 강화시킬 것”을 부탁하였다.¹¹ 본 위원회는 아동에 관한 특별회기에서 설정되고 결과문서인 “어린이가 살기좋은 세상”에서 확인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대한 국가의 서약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세계적 회의에서의 특정한 서약을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 협약상 부여된 당사국의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와 유사하게 특별회기의 결과에 따라 특별한 행동 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동 협약을 위한 종합적 이행전략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당사국은 2002년의 특별회기와 기타 관련 국제회의에 대한 그들의 대응을 전체로서의 동 협약의 전체적인 이행에 통합시켜야 한다.

36. 결과문서는 또한 당사국들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에 제출하는 그들의 보고서에 이 행동계획의 이행에 있어 취한 조치와 달성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있다.”¹² 본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이 특별회기의 서약을 달성하기 위한 진전상황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동 협약 하의 정기보고를 위한 개정 지침에도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인한다.

B. 아동권리 이행의 조정

37.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회는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정부 간의 조정, 즉 중앙 정부부서간의 조정 그리고 다른 지방과 지역 간의 조정, 중앙 및 다른 수준의 정부기관간의 조정 및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조정을 고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의 항상 보았다. 조정의 목표는 국가 관할권내에서 모든 아동들을 위한 동 협약상의 원칙들과 기준들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고, 협약의 비준이나 가입에서 발생하는 의무가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 부서-교육, 보건 혹은 복지 등등-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기획, 고용과 국방 및 모든 수준의 부서를 포함한 정부전체에 의해서 인정되도록 것이 보장하는 것이다.

38. 본 위원회는 조약상 기구로서 당사국간의 매우 다른 정부시스템에 적합한 제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정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효과적인 조정을 달성하는 데에는 수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아동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와 부서간 위원회가 포함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동 협약의 이행의 관점에서 특히 일반원칙으로 확인된 4개의 조문(상기 제 12항 참조)의 관점에서 정부의 조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9. 많은 당사국들이 정부의 중심에 가까운 발달된 특정 국이나, 부서, 어떤 경우에는 이행과 아동정책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혹은 총리, 비서실 또는 내각을 가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정부부서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한 부서가 모든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아동의 문제가 더욱 소외되도록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고위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한 특별부서가, 예를 들어 총리, 대통령 혹은 아동에 관한 내각 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 이는 정부 내에서 아동의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전체적인 목적 및 정부 전반 및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려는 조정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서는 동 협약하의 보고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행의 감독과 종합적 아동 전략의 개발에 대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C. 분권화, 연방화 그리고 위임

40. 본 위원회는 권한 이양 및 정부의 위임을 통해 권력의 분권화는 국가 구조와 상관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국가관할권내에서의 모든 아동에 대한 의무를 당사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감소되지 않음을 많은 당사국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1. 본 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당사국에게 국가관할권하의 전 영토에서 동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책임이 남아있다는 점을 반복

한다. 권한 이양의 어떠한 과정에서도 당사국은 권한을 이양받은 당국이 동 협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부담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인적 및 기타 자원을 보유할 권한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 정부는 권한을 이양받은 행정부나 지방 당국에 의한 동 협약의 전적인 준수를 요구할 권한을 보유해야만 하며, 차별없이 국가관할권내의 모든 아동에게 동 협약이 존중되고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영구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설립해야 한다. 나아가, 분권화나 권한 이양이 다른 지역들에도 속한 아동에 의한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의 차별을 일으키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조치도 마련되어야만 한다.

D. 민영화

42. 서비스의 민영화 과정은 아동 권리의 인정과 실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민간부문과 아동권리의 이행에 있어서 그 역할”이라는 주제로 2002년 일반논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업, 비정부기구 및 기타 영리적 및 비영리단체를 민간부문으로 정의하였다. 일반논의 다음날에 본 위원회는 당사국의 주의를 요청하는 세부적인 권고를 채택하였다.¹³

43.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당사국들이 동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비국가 서비스 제공자들이 동협약의 규정에 따라 기능할 것을 보장하여 그러한 행위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를 창설함을 강조한다.

44. 본 위원회는 민간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에게 동 협약상의 모든 권리의 완전한 인정과 실현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음을 강조한다(제2조 1항 및 제3조 2항). 제3조 1항은 공공 혹은 민간 기구에 의해 행사되는 것과 상관없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고 있다. 제3조 3항은 권한 있는 기구(적절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들)에 의한

적절한 기준, 특히 보건 영역에 있어 직원의 수 및 적격성에 있어 적절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동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모든 국가와 비 국가 서비스 제공자들이 동 협약을 보장하도록 하는 목적의 영구적인 감독 메커니즘이나 절차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제안한다.

E. 이행감독-아동 영향 감정과 평가의 필요성

45. 아동에 관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임을 보장하는 것(제3조 1항)과 동 협약의 모든 규정이 입법 및 정책 개발과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의 이행에서 존중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동영향 감정(아동과 그들의 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제안된 입법, 정책 또는 예산 배치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 및 아동 영향 평가(이행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의 지속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은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정책의 개발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설립되어야만 한다.

46. 자기 감독과 평가는 정부의 의무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또한 예를 들어 국회 위원회, 비정부기구, 학술기관, 전문가 단체, 청소년 단체 및 독립인권기구에 의한 이행의 진행도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본 논평 제65항을 참조).

47. 본 위원회는 의회 그리고/혹은 공공에게 공식적인 영향 분석보고서의 준비와 제시를 하도록 한 입법을 채택한 몇몇 국가들을 격찬하였다. 모든 국가는 제3조 1항의 준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이는 정책형성에 있어 아동의 가시적 통합과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F. 정보수집과 분석 및 지표의 개발

48. 아동권리실현에 있어 차별이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된, 아동에 대한 충

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수집은 이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정보수집이 18세에 이르는 모든 아동기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정보 수집은 또한 관할권 내에서 국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를 통해 확보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적합한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야만 하며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이행의 진행에 대한 완전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동 협약의 정기보고에 관한 보고지침은 동 협약 전 분야에 대한 자세하게 분류된 통계적 및 기타 정보를 요구한다. 단순히 정보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설립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수집된 자료가 문제를 확인하며,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개발에 정보를 주도록, 그 자료를 평가하고 이행에 있어 진행정도를 측정하도록 사용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료의 평가에는 동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에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49. 본 위원회는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의 권리의 현황에 관한 종합적 보고를 연례적으로 발표해온 당사국들을 칭찬한다. 그러한 보고의 발표, 광범위한 보급 및 의회 등에서의 그 보고서에 대한 논의는 공중의 참여를 위한 초점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 우호적인 번역을 포함한 번역은 이 과정에 아동과 소수집단을 참여시키는데 필수적이다.

50. 본 위원회는 많은 경우에 아동 자신만이 그들의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고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아동을 면담하는 것과 아동을 연구원으로 삼는 것은(적절한 안전조치와 함께) 예를 들어 제12조에 규정된 필수적인 권리를 비롯하여,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장당한 비중이 부여되도록 한 필수적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시민적 권리가 가정, 학교 등에서 어떠한 정도로 존중되는지를 알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G. 예산상 아동의 반영

51. 보고 지침 및 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본 위원회는 국가 및 기타 예산에서 아동을 위한 자원의 확인과 분석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¹⁴ 사회 부문, 그 안에서도

아동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할당된 국가 및 기타 예산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 이상, 어떠한 국가도 동 협약 제4조에서 요구하고 있는바와 같이 자국이 “가용자원의... 최대한으로”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타 국가들은 이 방식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매년 “아동 예산”을 발표한다. 본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사회적 계획, 의사결정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소외 집단의 아동이나 불리한 집단의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경제 정책 또는 재정적 침체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52. 경제 정책이 결코 아동에 대한 그들의 영향에 있어 중립적일 수 없음을 강조하며, 본 위원회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져왔다. 제4조 및 동 협약의 기타 규정의 의무이행은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정책의 변화와 조정의 영향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요구한다.

H. 훈련 및 역량의 배양

53. 본 위원회는 이행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및 사법부의 구성원-과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훈련과 역량 배양을 발전시킬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바이다. 여기에는 공동체 및 종교 지도자, 교사, 사회적 복지사 및 시설이나 구금 장소에서 아동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 경찰과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무장 군대, 언론종사자 및 기타의 직업군이 포함된다. 훈련은 체계적이며 지속적일 필요-최초 훈련 및 재훈련-가 있다. 훈련의 목적은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의 지위를 강조하고, 동 협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 그리고 모든 협약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존중을 장려하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이 모든 수준에서의 직업훈련과정, 행동 강령 및 교육과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은 학교 교육과정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해 아동 자신들 사이에서도 증진되어야만 한다 (이하의 제69항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1(2001)을 참조).

54. 정기 보고에 대한 본 위원회의 지침은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문가 훈련을 포함한 훈련의 다양한 측면을 언급하였다. 동 협약은 그 전문 및 많은 조문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권리의 증진이 아버지로서의 자격 및 육아교육을 위한 준비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55. 훈련이 동 협약 및 규정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동 협약이 아동에 의한 권리의 향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태도와 관행을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훈련의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I. 시민사회와의 협력

56. 이행은 당사국의 의무이나, 아동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전 부분의 참여가 필요하다. 본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국가가 통제하는 서비스 및 기관을 넘어서서 아동, 부모와 광범위한 가족, 기타 성인, 비국가 서비스와 조직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예를 들어 “달성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4(2000), 제42항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동의한다. “국가만이 규약의 당사자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보건 전문가를 포함한 개인, 가족, 지역 사회, 정부 간 그리고 비 정부적 조직, 민간기업 부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조직-이 건강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러한 책임의 실행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

57. 이미 강조된 바와 같이(상기 제12항 참조)동 협약 제12조는 “그들의” 협약의 이행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아동의 견해에 비중을 두어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8. 국가는 비정부기구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광범위하게 비정부기구와 밀접하게 활동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정부기구에는 인권 단체, 아동과 청소년이 이끄는 조직 및 청소년 단체, 부모와 가족 단체, 종교단체, 학술 기관 및 전문가 단체와 같은 것들이 있다. 비정부기구는 동 협약의 초안 작성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행의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59. 본 위원회는 아동의 인권의 보장, 보호 및 감독을 위한 비정부기구와의 제휴와 연대의 발전을 환영하며 정부가 그들에게 비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긍정적인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동 협약의 보고 과정에 제 45조 (a)의 “권한있는 기구”의 정의에 속하게 되는 비정부기구의 참여는 많은 경우에 보고뿐만 아니라 이행의 과정에 진정한 추진력을 제공하였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위한 비정부기구 그룹”은 보고 과정 및 본 위원회의 기능의 다른 요소들에 매우 환영할만한 강력하고 지지가 되는 영향을 준다.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지침에서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공공의 면밀한 조사와 대중의 참여를 고무하고 촉진하는 것이어야만 함”을 강조한다.¹⁵ 언론은 이행의 과정에서 의미있는 협력자가 될 수 있다(제70항을 참조).

J. 국제 협력

60. 제4조는 동 협약의 이행이 전 세계 당사국들의 협력적인 실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4조 및 동 협약의 기타 조문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⁶ 유엔헌장(제 55조 및 제56조)은 국제 경제 및 사회적 협력의 전반적인 목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헌장 하에서 스스로 서약하였다. 유엔의 밀레니엄 선언과 아동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 회기를 포함한 기타 국제회의에서 국가들은 특히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을 하기로 스스로 서약하였다.

61.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동 협약이 아동에게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제적 개발 원조에 대한 체제를 형성해야 하며, 기부 국가의 프로그램은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야

만 함을 조언한다. 본 위원회는 국내 총생산의 0.7퍼센트를 국가들이 국제 개발에 원조 하도록 하는 유엔의 목표를 포함하여,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충족할 것을 촉구한다. 이 목적은 2002년 “개발재원국제회의”로부터 도출된 몬트레이합의의 목표와도 일치한다.¹⁷ 본 위원회는 국제적 지원과 원조를 받는 당사국들이 그 원조의 상당부분을 아동에게 할당할 것을 장려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의 이행에 매년 배당된 국제적 지원의 양과 비율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62. 본 위원회는 개발국과 기부국가의 공동 책임으로서 지속적인 기반에서 양질의 기초적 사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20/20 이니셔티브’의 목적에 찬성하는 바이다. 본 위원회는 진전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국제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부가적 자원의 할당과 자원할당의 효율성 증가 없이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를 통해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격려하고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집중적이고,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인 빈곤감소전략보고(PRSP)는 아동의 권리에 현저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정부, 기부자와 시민사회에게 빈곤감소전략의(PRSPs)의 개발에 있어 아동이 현저한 우선순위가 되도록 보장할 것과 개발에 대한 광범위영역접근법(SWAPs)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빈곤감소전략(PRSPs)과 광범위영역접근법(SWAPs) 모두 아동권리의 원칙,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을 인정하는 아동 중심적 접근과 아동에게 적절한 개발목적 및 목적의 수용을 반영해야 한다.

63.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동 협약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적절하다면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이용할 것을 장려한다. 유엔아동기금(UNICEF)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및 기타 유엔과 유엔관련 전문 기구들은 이행의 많은 측면에 있어서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동 협약에 따른 그들의 보고서에서 기술적 원조에 관한 그들의 관심을 밝히도록 장려된다.

64. 국제협력과 기술원조의 증진에 있어서, 모든 유엔 및 유엔 관련 전문 기구들은 동 협약에 따라야만 하며, 그들의 활동에서 아동의 권리가 주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들

은 자신들의 영향력 내에서 국제협력이 당사국들의 동 협약하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금 역시 국제 협력 및 경제 발전과 관련된 그들의 활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K. 독립인권기구

65.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일반논평 2(2002)에서,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아동 권리의 보편적인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의 비준을 통해 한 약속의 범위에 그러한 기구의 설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에 주목한다. 독립인권기구는 아동을 위한 효율적 정부 조직에 대해 보충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독립성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국가의 이행의무 준수와 그 과정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것, 그리고 아동권리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기구로 하여금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감독 의무를 국가인권기구에 위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기구들이 그들 스스로의 의제를 설정하고, 그들 자신의 활동을 결정하는데 완전히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¹⁸ 일반논평 2에서는 아동을 위한 독립인권기구의 설립과 기능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제42조: 성인 및 아동에 대한 동 협약의 홍보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66. 개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전통적으로, 모든 사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동들은 권리의 주체로서 간주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42조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만약 아동 주변의 성인, 그들의 부모나 기타 가족 구성원,

교사 및 보호자가 동 협약의 합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동등한 지위를 확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많은 아동들에게 동 협약상의 권리들은 거의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67. 본 위원회는 국가가 사회 전반에 동 협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이행 및 감독에 관련된 정부 및 독립적 기구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과 접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동 협약의 본문은 가능한 한 모든 언어로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본 위원회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의한 동 협약의 공식적, 비공식적 번역본의 수집을 추천한다. 여기에는 문맹자를 위한 동 협약의 확산 정책도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과 비정부기구들이 본 위원회가 환영하고, 권장하는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위해 동 협약의 아동 우호적 버전들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아동에게 지원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8.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필요가 있으며 본 위원회는 모든 단계에서의 학교 교과과정에 동 협약 및 일반적 인권에 대한 학습을 수용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교육의 목적(제28조 1항)”으로 명시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1(2001)은 제29조 1항과 함께 해석되어야만 하며, 동 조는 아동의 교육은 “...인권과 기초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논평에서는 “인권 교육은 인권조약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동은 가정, 학교 혹은 공동체 내에서 실제로 인권 기준이 이행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 인권에 대해 학습해야만 한다. 인권 교육은 종합적인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어야 하며, 일상과 아동의 경험 속에서 인권적가치를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한다”¹⁹고 강조하고 있다.

69. 유사하게, 동 협약에 대한 학습은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직무 초기 및 직무 중의 훈련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상기 제53항 참조). 본 위원회는 “아동 권리의 보급과 인식 증대는 이것이 강의보다는 상호작용과 대화하는 사회적 변화의 과정으로 인식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인식 증대에는 아동과 청년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부문이 참여해야만 한다.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은 그들의 발달 능력의 최

대 범위에 다른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증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²⁰고 상기한 동 협약 채택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관한 회의의 권고를 당사국들에게 환기시키는 바이다.

“본 위원회는 아동권리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그 영향력과 지속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체계적이며, 정규적인 전문 훈련에 통합될 것을 권고한다. 인권 훈련은 참여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며, 전문가들이 아동 및 청소년과 그들의 권리, 존엄성, 자존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한다.”²¹

70. 언론은 동 협약의 보급 및 인식과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 의해 활발해질 수 있는 이 과정에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한다.²²

제44조 6항: 동 협약의 보고서를 널리 이용 가능케 하는 것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1. 동 협약하의 보고가 국내 차원에서의 이행 과정에 있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이 보고서는 당사국 전체내의 성인과 아동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 보고 절차는 당사국이 아동과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국제적 설명 의무의 특수한 형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고서가 국내적 차원에서 보급되고 건설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은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72. 동 협약은 당사국에게 그들의 보고서가 공중에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국이 본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야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진정으로, 예를 들어 모든 언어로, 아동과 장애인 및 여타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형태로 번역됨으로써,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인터넷은 보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부와 의회는 그러한 보고서를 그들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강력히 요청된다.

73.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국가가 건설적인 논의를 증진하고, 모든 차원에서 이행의 과정에 대해 알리도록 하기 위해 동 협약 하의 그들의 보고서에 대한 심의의 모든 기타 문서를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본 위원회의 최종권해는 아동을 포함한 공중에 보급되어야만 하며, 의회에서 자세한 논의의 주제가 되어야만 한다. 독립인권기구와 비정부기구는 광범위한 논의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위원회가 정부대표와의 심의회의의 요약기록은 그 과정과 본 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그 요약 기록은 이용가능하고 토론되어야 한다.

주(註)

¹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동 협약의 목적에 따라 당사국이 아동을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제1조)”으로 정의한 것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² 199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UN 총회에 의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 10주년 기념을 위한 2일간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일반조치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세부적 결론과 권고를 채택하였다.(CRC/C/90, 제291항 참조)

³ 협약 제44조 1항 (a) 당사국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는 초기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 지침 CRC/C/5, 1991년 10월 1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4조 1항 (b) 정기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 CRC/C/58, 1996년 11월 20일.

⁴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3(13차 회기, 1981) 제2조: 국가차원의 이행,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3(5차 회기, 1990) 국가의무의 성격 (규약 제 2조 1항) 및 일반논평 9(19차 회기, 1998) 규약의 국내적용, 일반논평 3의 특정한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및 권고가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행됨(HRI/GEN/1/Rev.6)

-
- ⁵ 일반논평 3, HRI/GEN/1/Rev. 6, 제11항, p.16.
- ⁶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8(1989), HRI/GEN/1/REV/6, pp.147 이하
- ⁷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4조 1항 (b)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는 정기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 CRC/C/58 1996년 11월 20일 제11항.
- ⁸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1993년 6월 14일-25일,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 A/CONF.157/23.
- ⁹ 아동세계정상회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에 관한 세계 선언 및 1990년대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 CF/WSC/1990/WS-001, United Nations, 뉴욕, 1990년 9월 30일.
- ¹⁰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1993년 6월 14일-25일,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 A/CONF.157/23.
- ¹¹ 아동이 살기 좋은 세계, 아동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기 결과문서, 2002, 제59항.
- ¹² 위 문서, 제61항 (a).
- ¹³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 31차 회기의 보고서, 2002년 9월-10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사적 영역 및 아동의 권리 이행에 있어 그들의 역할”, 제630-653항.
- ¹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4조 1항 (b)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는 정기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 CRC/C/58, 1996년 9월 20일 제20항.
- ¹⁵ 위 문서, 제3항.
- ¹⁶ 국제 협력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동 협약의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제7조 2항, 제11조 2항, 제17조 (b), 제21조 (e), 제22조 2항, 제23조 4항, 제24조 4항, 제27조 4항 제28조 3항, 제34조 및 제35조.
- ¹⁷ 개발을 위한 재정에 관한 국제 회의 보고서, 몬트레이, 멕시코, 2002년 3월 18일-22일(A/CONF.198/11)
- ¹⁸ HRI/GEN/1/Rev.6, 제25항, p.295.
- ¹⁹ 위 문서, 제15항, p.286.
- ²⁰ CRC/C/90, 제291항 (k) 참조.
- ²¹ 위 문서, 제291항 (l).
- ²² 본 위원회는 1996년 “아동과 언론”을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한바 있으며, 세 부적인 권고를 채택하였다(CRC/C/57, 제242항 이하 참조).

부속서 I

기타 핵심적 국제 인권 문서의 비준

동 일반논평 제17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이행의 일반 조치에 대한 고려의 일환으로, 그리고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사국들이 만약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두 선택 의정서와 기타 무력분쟁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와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여섯 개의 주요 국제 인권 문서를 비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당사국과의 대화중에 본 위원회는 종종 당사국이 다른 관련 국제 문서를 비준할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이 문서들의 예시적 목록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이를 때때로 경신할 것이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선택의정서
-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제 2 선택 의정서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 교육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국제노동기구 강제 노동 협약 제 29호, 1930
-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05호, 1957
-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38호, 1973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82호, 1999
- 모성 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83호, 2000
-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49)
- 노예 협약(1926)

-
- 노예협약의 수정 의정서(1953)
 - 노예제도, 노예매매, 그리고 노예제도의 유사 제도와 관행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 (1956)
 - 2000년 유엔국제조직 범죄에 대한 협약을 보충하는 부속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 매매예방, 억제 및 처벌에 관한 의정서
 -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 국제적 무력충돌에 의한 희생자들의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의 추가의정서(의정서 1)
 -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의한 희생자들의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협약의 추가의정서(의정서2)
 -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거래의 방지와 제거에 관한 협약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
 - 아동약취유인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 1996년 부모의 책임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협력에 대한 관할권, 준거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협약

일반논평 6 (2005)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 목 차 >

- I. 일반논평의 목적
- II. 일반논평의 구조와 범위
- III. 정의
- IV. 적용되는 원칙들
 - (a) 영토내의 모든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위한 당사국의 법적 의무와 이행
을 위한 조치
 - (b) 비차별(제2조)
 - (c) 장단기 해결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할 아동의 최
선의 이익(제3조)
 - (d) 생명, 생존 및 발달에의 권리(제6조)
 - (e)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제12조)
 - (f)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존중
 - (g) 비밀유지
- V. 일반적, 특수적 보호의 필요에 대한 대응
 - (a) 초기 평가와 조치
 - (b) 후견인 또는 조인자 및 법적 대리인의 지정(제18조 2항 및 제20조 1하)
 - (c) 양육과 거주 배정
 - (d) 교육에의 완전한 접근(제28조, 제29조 1항 (c), 제30조 및 제32조)
 - (e) 적절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제27조)

-
- (f) 가장 높은 적절한 도달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 및 질병과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설비를 향유할 권리(제23조, 제24조 및 제29조)
 - (g) 인신매매 및 성적, 그리고 기타 형태의 착취 및 학대와 폭력의 예방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
 - (h) 징집예방과 전쟁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제38조 및 제39조)
 - (i) 자유의 박탈의 금지 및 자유박탈의 경우에 있어서의 처우

VI. 비호 절차(asylum procedure), 법적 보호와 비호권에 대한 접근

- (a) 일반
- (b) 연령에 무관한 비호절차(asylum procedure)로의 접근
- (c) 절차상의 보호와 지원 조치(제3조 3항)
- (d) 아동에게 특유한 성격의 박해를 고려한 보호 필요성의 아동인지적 평가
- (e)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아동에 의한 모든 국제적 난민 권리와 인권의 완전한 향유 (제22조)
- (f) 보충적인 보호의 형태로부터 이익을 얻는 아동

VII. 가족 재결합, 복귀 및 기타의 항구적 해결책들

- (a) 일반
- (b) 가족 재결합
- (c) 출신국으로의 귀환
- (d) 지역적 통합
- (e) 국가간 입양 (제21조)
- (f) 제 3국에서의 재정착

VIII. 훈련, 자료 및 통계

- (a)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다루는 인력의 훈련
- (b)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관한 자료와 통계

I. 일반논평의 목적

1. 본 일반논평의 목적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특별히 취약한 상황을 환기시키고, 그러한 아동이 그들의 권리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어서 국가 및 기타 행위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특히 비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아동의 권리에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동 협약)”에 제시된 법적 체제에 근거하여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보호, 보살핌 및 적절한 대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본 일반논평의 발표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아동의 증가에 대한 본 위원회의 관찰에 의한 것이다. 아동 혹은 부모의 박해 및 국제적 분쟁과 내전, 부모에 의한 매매나 각종 배경과 형태의 인신매매, 나은 경제적 기회의 추구 등을 포함하여 아동이 동반되지 못하거나 분리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3. 일반논평의 발표는 나아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이 특히 성적 착취와 학대, 징집, 아동 노동(위탁가정에 의한 노동을 포함) 및 구금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으며 그러한 아동들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 보호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본 위원회가 확인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아동들은 종종 식량, 피난처, 주거, 보건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하여 차별받거나 접근을 거부당한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소녀들은 특히 가정 폭력을 포함한, 성(gender)에 근거한 폭력이라는 특수한 위험에 처해있다. 몇몇 경우에 그러한 아동들은 적절하고 적당한 신원증명, 등록, 연령 측정, 문서관련 서류, 가족 추적, 후견인 체제나 법적 조언에 접근할 수 없다. 많은 국가에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국경수비대 혹은 이민국에 의해 구금된다. 다른 경우 입국은 허가되지만 비호절차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거나 비호에 대한 주장이 연령과 성 인지적 방식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몇몇 국가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리된 아동들의 가족 결합 신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결합을 허용하나 부과하는 조건의 엄격성으로 인해 실제로 가족 결합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아동들은 그들이 18세가 되는 경우에 종료되는 임시적 지위만을 부여받으며, 실효적인

복귀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4. 이러한 것과 같은 우려로 본 위원회는 종종 최종견해에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되었다. 본 일반논평은 특히 본 위원회의 감시 노력을 통해 진전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고히 할 것이며, 이러한 특별히 취약한 아동 집단에 대해 동 협약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에 관한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당사국들은 그들의 발전적인 성격을 인식해야만 하며, 따라서 그들의 의무가 여기에 명시된 기준을 넘어서서 발전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지역적 인권 문서나 국가 시스템, 국제 및 지역 난민법이나 국제 인도법에 의해,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에게 부여된 그 이상의 권리와 이익들을 전혀 손상시킬 수 없다.

II. 일반논평의 구조와 범위

5. 본 일반논평은 그들의 국적국(제7조와 일관된) 외부에 있는 혹은 무국적인 경우 그들의 상거소국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에게 적용된다. 이 일반논평은 그들의 거주 지위와 해외에 있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분리되었건 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본 일반논평은 비록 본 위원회가 국내 유민인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에 관련된 많은 유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하의 지침 중 많은 부분이 그러한 아동에 관련하여 가치있는 지침임을 인정하며,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유민이 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에 대한 보호, 양육 및 처우에 관련하여 본 일반논평의 관련부분을 채택하도록 강력히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지 않은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본 위원회의 위임은 동 협약과 관련된 감독적 기능에 한정되어 있으나, 동 위원회의 해석노력은 적용 가능한 국제 인권 규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이 일반논평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이것은 동 협약에 포함된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권이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임을 인정한 것이다. 아동의 보호에 대한 다른 국제 인권 문서의 중요성 또한 동 협약의 전문에서 인정되고 있다.

Ⅲ. 정의

7. “**동반되지 않은 아동**”(또한 동반되지 않은 미성년자로도 칭함)은 동 협약 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부모와 다른 친척으로부터 분리되고 법이나 관습에 의해 그렇게 할 책임이 있는 성인으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으로 정의된다.

8. “**분리된 아동**”은 동 협약 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부모 모두로부터 분리되거나, 그들의 법적 혹은 관습적 일차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었으나, 반드시 다른 친척들로부터 분리된 것은 아닌 아동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에 의해 동반된 아동을 포함할 수 있다.

9. “동 협약 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아동”이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영역 내에서 아동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규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국가에서 성인 연령을 결정하는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동을 정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0. 만약 다른 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이하의 지침은 동반되지 않은 아동과 분리된 아동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11. “**출신국**”은 국적국 혹은 무국적 아동의 경우에 상거소국을 의미한다.

IV. 적용되는 원칙들

(a) 영토내의 모든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위한 당사국의 법적 의무와 이행을 위한 조치

12. 동 협약하의 국가 의무는 국가 영역내에 있는 각각의 아동과 국가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제2조)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국가의무는 국가 영토에서 어떤 지역이나 구역을 배제하거나, 국가 관할권 내에서 부분적으로, 특정지역이나 구역을 관할권 대상이 아니라고 정함으로써 임의적,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다. 더욱이 동 협약하의 국가의무는 국가영역내로 입국을 시도하는 동안 그 국가 관할권하에 놓이는 아동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국경 내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동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향유는 당사국의 시민인 아동에 한정되지 않으며 동 협약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그들의 국적, 이민 지위 혹은 무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비호 신청, 난민,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13. 동 협약에서 도출되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의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행정, 입법 및 사법)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국내적 입법, 행정적 구조 및 필요한 연구, 정보, 자료 수집과 그러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훈련 활동을 설립할 의무가 포함된다. 그러한 법적 의무는 그 성격상 적극적이기도 하며 소극적이기도 한데, 이는 국가에게 그러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들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차별없이 이러한 권리들을 향유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책임들은 이미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의 보호와 조력에 대한 규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한다(피난시의 보호의 이행을 포함). 이러한 보호의무의 적극적인 측면은 또한 국가들에게 국경을 포함한 가장 초기 단계에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을 확인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추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 가능한 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 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분리되고 동반되지 않은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재결합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14. 일반논평 5(2003, 제18항 내지 제23항)에서 재확인된바와 같이 동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의 규정과 원칙들이 전적으로 존중되고 관련 국내 법률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법률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제27조에 의거, 동 협약이 언제나 우선해야만 한다.

15. 도움이 되는 법적 환경의 보장 추구 및 동 협약 제41조 (b)에 의해 당사국은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추가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참여와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난민협약) 및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 “부모의 책임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관할권, 준거법, 승인, 집행과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선택의정서”, 1949년 8월 12일의 4개의 제네바 협약, 1977년 6월 8일의 “국제적 무력충돌에 의한 희생자들의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의 추가의정서(의정서 1)”, 1977년 6월 8일의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의한 희생자들의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협약의 추가의정서(의정서2)”를 포함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타 국제 문서를 비준하도록 장려된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 당사국 및 기타 관련국들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보호와 양국에 관한 지침(1994) 및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관한 국가간 기준원칙”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¹

16. 동 협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의 절대적 성격과 그들의 특별법적 성격에 의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조 3항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관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동 협약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동 협약 제20조에 명시적으로 인정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의 특이한 취약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그러한 아동에게 가용자원을 배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가들은 각 기관의 권한 내에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엔아동기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및 기타 전문기구(동 협약 제22조 2항)

가 그들의 위임사항 내에서 제공한 조력을 받아들이고 촉진할 것이 기대된다.

17.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당사국에 의한 유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믿는다. 보고 절차 중에 당사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에 의거하여²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보는 철회를 목적으로 재검토될 것을 권고한다.

(b) 비차별(제2조)

18. 비차별의 원칙은 원칙의 모든 측면에서 분리되고 동반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특히 동 원칙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의 지위, 혹은 난민, 망명신청 혹은 이주의 지위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동 원칙은 적절히 이해되는 경우에 연령 그리고/또는 성별/으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보호의 필요를 근거로 한 차이를 금지하지 않으며, 이를 실제로 필요로 할 수 있다. 사회내의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낙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만 한다. 공공 질서와 관련된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한 경찰력 행사 및 기타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법에 근거한 경우에 집단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인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하며, 최소한의 강제적 선택을 의미할 때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비차별의 원칙을 위반하기 않기 위해 그러한 조치들은 절대로 집단이나 집단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c) 장단기 해결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할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19. 제3조 1항에서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유민 아동의 경우에 동 원칙은 퇴거의 모든 단

계에서 존중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단계 중 어디에서든,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의 준비단계에서 최선의 이익이란 측정요소가 기록되어야만 한다.

20. 무엇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적, 양육, 종족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 특별한 취약성과 보호의 필요를 포함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하고 포괄적인 측정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영토에 아동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최초의 측정 과정에 있어 선행조건이다. 측정 과정은 연령 및 성인지적 면담기술을 훈련받은 자격있는 전문가에 의해 우호적이고 안전한 분위기내에서 수행되어야만 한다.

21. 가능한 신속히 자격있는 후견인의 지정 등의 이후 단계는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안전장치로서 알맞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아동은 후견인 지정 후에만 절차로 회부되거나 다른 절차로 회부될 수 있다. 분리되거나 동반되지 않은 아동이 망명절차로 회부되거나 다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로 넘겨지는 경우에, 그들에게 후견인 외에 법적 대리인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22. 최선의 이익에 대한 존중은 또한 권한있는 당국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가의 “치료와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만 한다(동 협약 제25조).

(d) 생명, 생존 및 발달에의 권리(제6조)

23. 제6조하의 당사국의 의무는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에 대한 권리를 위태롭게 할 폭력과 착취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아동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 죽음을 가져오는 성적 혹은 기타의 착취의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나 또는 범죄활동에 참여같이, 그들의 생

명, 생존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위협에 취약하다. 따라서 제6조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조직범죄와 관련된 경우 당사국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 아동 인신매매의 문제가 본 일반논평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위원회는 인신매매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상황간에 관련이 있음을 주목한다.

24. 본위원회는 상기에 언급된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는 모든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조치는 인신매매의 피해 아동을 위한 우선적 절차, 후견인의 즉각 지정, 아동에게 그들이 처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정보 제공, 특히 위협에 있는 아동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수립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제12조)

25. 동 협약 제12조에 따라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하여 채택할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견해와 희망이 유도되고 고려되어야만 한다(제12조 1항). 정보를 충분히 갖고 그러한 견해와 희망을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의 권리, 통신수단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망명절차, 가족 추적 및 출신국의 상황과 같은 관련 정보가 아동에게 제공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제13조, 제17조 및 제22조 2항). 후견, 양육과 거주배정 및 법적대리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정보는 각각의 아동의 이해의 수준과 성숙도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참여는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달려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통역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f)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존중

26.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에게 적절한 대우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가는 국제인권, 인도법 및 난민법에서 도출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완전히 준수해야만 하

며, 특히 1951년 난민 협약 제33조와 고문방지협약의 제3조에 성문화된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27. 나아가, 동 협약하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은 동 협약 제6조와 제37조에 고려된 위협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의,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 즉 아동의 이송이 실행되거나 그 후 이송될 국가이든, 그러한 국가로 아동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강제송환금지 의무는 동 협약하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비국가행위자에 기인한 것이거나, 혹은 그러한 침해가 직접 의도되었거나 작위나 부작위의 간접적 결과에 의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러한 심각한 침해의 위험은 측정하는 것은 연령 및 성인지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야하며 예를 들면, 불충분한 식량이나 보건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아동에게 미칠 심각한 결과를 특히 고려해야한다.

28. 적대행위예의 미성년자의 징집이나 참여는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동 협약 제38조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무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 의정서”의 제3조 및 제4조와 함께 역외적용의 효과를 수반하며, 당사국은 전투요원으로 서 뿐만 아니라 군인을 위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성년자 징용의 실질적 위험 또는 전투요원 혹은 기타 군사 업무의 수행을 통해 적대행위예의 직, 간접적 참여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국경으로 아동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g) 비밀유지

29. 당사국들은 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제16조) 아동의 권리의 보호의무에 일관되도록,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해야만 한다. 동의무는 보건과 사회복지를 포함한 모든 환경에 적용된다. 한 목적을 위해 수집되고 합법적으로 공유된 정보가 다른 목적을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0. 비밀유지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또한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의 획득, 공유 및 보존에 있어서 아동의 출신국 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 특히 아동의 가족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나아가 아동의 소재에 관한 정보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요구될 때 혹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만 부모에게 보류될 수 있다.

V. 일반적, 특수적 보호의 필요에 대한 대응

(a) 초기 평가와 조치

31.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또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관한 필요한 보호의 우선순위와 그들에게 적용되는 조치들의 연대기를 결정함에 있어 지도적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적 초기 접근 과정은 특히 다음을 도출한다.

(i) 분리되거나 동반되지 않은 아동의 신분확인(신원확인)은 항구에 도착 즉시 또는 그들이 그 국가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관련당국이 알게 되자마자 이루어지는 우선적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제8조). 그러한 신분확인조치는 연령측정을 포함해야만 하며, 개인의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숙도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측정은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아동과 성(gender)인지적인 공정한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적절하게 존중하고, 아동의 신체적 존엄성 침해의 모든 위험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만 하며 불분명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만약 그 개인이 아동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개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만 하며, 아동으로서 대우받아야만 한다.

(ii) 연령에 적절하고, 성인지적 방식으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능하다면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동의 신분 및 부모 형제 자매의 확인과 그들의 시민권 확인을 위하여 아동개인의 전기적 자료와 사회적 기록을 수집하는

최초면접을 통한 즉각적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등록 절차의 과정에서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부합하기 위한 심화정보의 기록은 다음을 포함해야만 한다.

- 분리되거나 동반되지 못한 이유
- 건강, 신체, 심리, 물질을 포함한 특정한 취약성에 대한 측정 및 가정 폭력, 인신매매 혹은 외상에서 기인된 것을 포함한 기타 보호의 필요
- 아동의 출신국에서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1951년 난민 협약 제 1A(2))에 의한, 외부적인 공격, 점령, 외국의 점령이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에 의해서나(아프리카에서의 난민 문제에 관한 특별한 양상에 관한 협약 제 1조 2항) 혹은 일반화된 폭력의 무차별적 영향에 관련된 경우 등, 국제적 보호의 필요가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

(iv)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개인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v) 조기에 가족 구성원 추적이 가능한 한 조기에 개시될 것(제22조 2항, 제9조 3항 및 제10조 2항)

32.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아동의 거주와 기타 지위에 관련된 어떠한 그 이상의 행위는 상기의 절차에 따라 수행된 초기의 보호 평가의 결과에 근거해야만 한다. 당사국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 영토 내에서의 그들의 존재가 국제난민 보호의 필요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망명절차로 회부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을 아동 복지 법률에 확인된 절차와 같이, 아동보호를 위한 적절한 절차로 회부하는 국가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후견인 또는 조연자 및 법적 대리인의 지정(제18조 2항 및 제20조 1항)

33. 당사국들에게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적 체제를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는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이 확인되는대로 후견인 혹은 조연자를 지정해야만 하며, 아동이 성인연령에 달하거나, 동 협약 및 기타 국제적 의무에 따라 영토나 그 국가의 관할권을 영구적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후견인 지정을 유지해야만 한다. 후견인은 그 보호아동에 관해 취해지는 모든 행위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고지 받아야만 한다. 후견인은 이민과 이의신청청문, 양육배정과 항구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노력을 포함한 모든 계획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후견인이나 조연자는 아동의 이익이 보장되고 특히 아동과 아동에 의해 요구되는 양육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현존하는 전문기관/개인간의 연결고리로서 후견인이 아동의 법적, 사회적, 건강, 심리적, 물질적 및 교육적 필요를 적절히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양육에 관해 필요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잠재적으로 그들의 이익이 아동의 이익과 충돌하는 전문기관이나 개인에게는 후견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인과 아동의 일차적 관계가 고용의 관계인 경우등의 성인은 후견인의 역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34. 분리된 아동의 경우에 후견인은 예를 들어 동반하는 성인이 아동을 학대한다는 것과 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있지 않은 이상, 동반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이나 비 일차적 가족 양육자가 보통 지정되어야 한다. 아동이 비가족인 성인이나 양육제공자에 의해 동반되는 경우, 후견에 대한 적합성이 보다 자세히 엄밀 조사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후견인이 아동에게 일상의 보살핌을 제공할 능력이 있고 하려고 하지만, 아동의 삶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조치들(조연자 혹은 법적 대리인의 지정과 같은)이 보장되어야 한다.

35. 의사결정과정 동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대변되도록 하고, 특히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후견직 행사의 질을 감독하기 위한 심사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이행되어야만 한다.

36. 아동이 망명절차나 행정적 혹은 사법 절차에 관여된 경우에 아동들은 후견인의 지정 이외에 법적 대리인을 제공받아야만 한다.

37. 항상 아동은 후견제 및 법적 대리에 관한 제도를 고지 받아야만 하며,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38. 대규모의 비상사태에 개개인에 대한 지정제도의 수립이 어려운 경우, 분리된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그들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 및 단체에 의해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c) 양육과 거주 배정(제20조 및 제22조)

39.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그들의 가정환경을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박탈당한 아동으로서, 동 협약 제20조상의 국가 의무의 수혜자이며 관련 국가에 의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40. 동 협약 제22조에 따라 그러한 아동에게 제공되는 대안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법상 설립된 메커니즘은 또한 그들의 출신국 밖에 있는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양육과 거주배정에 관한 광범위한 선택권이 존재하며, 제20조 3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 이러한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그러한 아동이 아동의 가정환경과의 연결고리를 상실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이 출신국 외부에 있다는 아동의 특별한 취약성 및 아동의 연령과 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 양육에 있어 지속성의 필요에 비중을 두어 고려되어야 하며,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신원증명, 등록 및 문서화 절차에 있어서 측정된 대로,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해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그러한 보살핌과 거주 배정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
-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아동은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 양육의 지속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보장하기 위해,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거주에 있어 변화는 그러한 변화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 가족 결합 원칙에 따라, 형제자매는 함께 있어야 한다.
 - 아동과 함께 도착하거나 이미 비호국에 살고 있는 성인친척이 있는 아동은,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만 한다. 아동의 특별한 취약성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정기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만 한다.
 -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한 양육의 배정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가정 폭력이나 착취로부터의 보호 및 교육적, 직업적 기술 및 기회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력있는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 감독과 평가가 수행 되어야 한다.
 - 국가 및 기타 단체는 아동이 가장인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리되고 동반되지 않은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규모 비상사태에서는 동반되지 않은 아동에게 적절한 임시적 양육이 최소한의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 이 임시 양육은 아동의 일반적 발달을 장려하는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과 신체적, 감정적 양육을 제공한다(CRC/GC/2005/6).
 - 아동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양육조치에 관해 지속적으로 고지 받아야만 하며, 그들의 견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d) 교육에의 완전한 접근(제28조, 제29조 1항 (c), 제30조 및 제32조)

41. 당사국은 이동 주기중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국가내로 입국한 모든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그 지위와 상관없이 동 협약 제28조, 제29조 1항 (c), 제30조 및 제32조와 본 위원회에 의해 발전된 일반 원칙들에 따라 교육에 완전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접근은 차별없이 제공되어야만 하며, 특히 분리되고 동반되지 않은 소녀는 모든 수준의 직업훈련을 포

함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에의 동등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동,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질적으로 적절한 교육으로의 접근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42.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학교 당국에 등록되어야만 하며, 교육의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있어서 조력을 받아야만 한다. 모든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그들의 모국어의 유지와 개발을 포함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모든 청소년은 직업적/전문적 훈련이나 교육에 등록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며,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 어린 아동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만 한다. 당사국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이 그들의 교육수준을 표시하는 증서나 기타 문서를 제공받을 것을 보장해야만 하며 특히 재배치, 재정착 또는 귀환의 경우에 그러하다.

43. 당사국은, 특히 정부의 능력이 제한된 경우,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엔아동기금,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및 기타 유엔 전문기구가 그들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조력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우에 기타 권한 있는 정부 간 기구나 비정부기구(제22조 2항)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들이고, 이를 촉진해야 한다.

(e) 적절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제27조)

44. 당사국은 분리되고 동반되지 않은 아동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및 도덕적 발달을 위해 적절한 삶의 수준을 가지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동 협약 제27조 2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당사국은 특히 영양, 의복과 주거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물질적 원조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45. 당사국은 특히 정부의 능력이 제한된 경우,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게 적절한 삶의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아동기금,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난민고등판

무관심 및 기타 유엔 전문기구가 그들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조력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우에 기타 권한 있는 정부 간 기구나 비정부기구(제22조 2항)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들이고 촉진해야 한다.

(f) 가장 높은 적절한 도달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 및 질병과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설비를 향유할 권리(제23조, 제24조 및 제29조)

46. 동 협약 제24조에 따른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과 질병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향유할 권리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 국민인 아동과 동등한 보건서비스로의 동등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는 의무를 진다.

47. 그들의 접근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국가는 그러한 아동의 특별한 어려운 입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다루어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동반되지 않은 아동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들이 다양한 정도로 상실, 외상, 혼란 및 폭력을 경험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한 아동 중 다수가 특히 난민인 경우에는 나아가 만연한 폭력과 전쟁에 의해 피해입은 국가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는 아동에게 있어서 깊이 뿌리내린 무력감을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아동의 신뢰를 저해한다. 더욱이 소녀들은 특히 무력충돌시에 소외, 빈곤 및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다수는 무력충돌상의 성(gender)에 근거한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 다수의 영향을 받은 아동들이 경험한 심각한 외상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과 재활에 있어 특별한 민감성과 주의가 요구된다.

48. 동 협약 제39조하의 의무는 모든 형태의 학대, 유기, 착취,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혹은 무력 충돌의 희생자인 아동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한 회복과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성(gender)인지적인 정신 보건치료가 개발되어야만 하며 양질의 심리-사회적 상담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49. 당사국은, 특히 정부의 능력이 제한된 경우,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보건과 보건 치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기타 기구(제22조 2항)이 그들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조력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우에 기타 권한 있는 정부 간 기구나 비정부 기구(제22조 2항)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들이고 이를 촉진해야 한다.

(g) 인신매매 및 성적, 그리고 기타 형태의 착취 및 학대와 폭력의 예방(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

50. 출신국외의 국가 내에서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은 특히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다. 소녀들은 특히 성적 착취의 목적을 포함한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한다.

51. 동 협약 제34조 내지 제36조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인신매매, 성적 및 기타 형태의 착취와 학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 협약 제20조에 따른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의 의무와 함께 해석되어야만 한다.

52. 그러한 아동의 인신매매 혹은 아동이 이미 인신매매의 희생자인 경우의 “재 인신매매”는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이 처하게 되는 많은 위험중 하나이다. 아동의 인신매매는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에의 권리(제6조)의 실현에 위협이 된다. 동 협약 제35조에 따라 당사국은 그러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필요한 조치들에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신원확인, 정기적인 아동의 소재파악 및 연령에 적절하고, 성인지적인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매체를 통한 정보 캠페인의 수행이 포함된다. 노동 규제와 국경통과에 관한 적절한 법률이 통과되어야만 하며 실효적 집행 매커니즘이 설립되어야 한다.

53. 이미 인신매매의 희생자로서,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되는 그들 상태에 이른 아동에게는 위험이 크다. 그러한 아동을 처벌해서는 안 되며 그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로서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매매된 어떤 아동은 1951년 협약에 의해 난민의 지위

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가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인신매매된 아동이 비호를 구하거나, 그러한 아동과 관련하여 현행 국제적 보호의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 그들이 비호절차(asylum procedure)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재 인신매매의 위험이 있는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내에서 그들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 한 그들의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귀환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경우에 인신매매된 아동을 위한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h) 징집예방과 전쟁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제38조 및 제39조)

징집 예방

54. 동 협약 제38조 및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 제3조 및 제4조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무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국가는 충돌의 여하한 당사자에 의한 그러한 아동에 대한 징집과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는 부대에서 이탈한 전직 아동병사와 재징집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보호의 배정

55.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배정은 충돌의 여하한 당사자에 의한 아동 징집, 재징집 혹은 이용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후견인역이 충돌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이나 조직에게 위탁되어서는 안 된다.

전직 소년병

56. 소년병은 우선 무력충돌의 희생자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 휴전이나 탈영이후에 자신들이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되었음을 종종 알게되는 전직 소년병에게는 필요한 심리 사회적 상담을 포함한 일상적인 생활로의 재편입을 가능케 하는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아동은 여하한 신원증명이나 제대 작전 동안 최우선적으로 확인되고 제대되어야만 한다. 소년병은 특히 그들이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강제수용보다는 특히 그들의 제대와 사회복귀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와

원조조치의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 전투요원이든 여타 분야이든 간에 군대와 관련되었던 소녀들의 재편입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57. 특정한 상황에서 15세 이상의 소년병의 예외적인 강제수용(interment)이 불가피하고, 예를 들어 소년병이 국가에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국제인권법 및 국제 인도법에 부합할 때에는 그러한 강제 수용의 조건은 동 협약 제37조 및 소년사법에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해야만 하며, 사회복귀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추적 노력이나 우선적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강제송환금지

58. 적대행위에서의 미성년의 징집과 참여는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다. 동 협약 제 38조 및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출되는 국가의무는 역외적 효과를 수반하며, 당사국은 적대행위에 있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미성년의 징집이나 참여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국경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아동을 돌려보내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박해의 아동 특정적 형태 및 발현³

59. 국가에게 연령과 성인지적 망명절차와 난민의 정의를 연령 및 성(gender)인지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환기하며, 본 위원회는 적대행위에 있어서 미성년의 징집(성적 서비스나 군인과의 강제 결혼을 위한 소녀의 징집) 및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참여는 심각한 인권 침해, 즉 그에 의한 박해를 구성하며, 이는 그러한 적대행위에서의 징집이나 참여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것”으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1951년 난민 협약 제1조 A(2))

사회재적응과 회복

60.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국제 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조하여 무력충돌의 영향을

받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위한 연령에 적합하고 성(gender)인지적인 심리적 지원 및 조력 체계를 개발해야만 한다.

(i) 자유의 박탈의 금지 및 자유박탈의 경우에 있어서의 처우

61. 동 협약 제37조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은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구금은 단순히 아동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분리되었다는 이유 혹은 그들이 이민 또는 거주지위, 혹은 그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기타의 이유로 구금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구금은 구금이 관련국의 법률에 부합할 것과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될 것을 요구하는 동 협약 제37조 (b)에 일치하도록 행해져야 한다. 결국 관련 절차의 신속화를 포함한 모든 노력은 구금으로부터의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의 즉시 석방 및 다른 형태의 적절한 거주로의 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62. 국내적 요건에 부가하여, 국제적 의무는 구금을 규율하는 법률의 일부를 구성한다. 비호신청(asylum-seeking)과 관련하여,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당사국은 특히 1951년 난민 협약 제31조 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그들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당사국은 나아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불법입국이나 체류가 아동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더 일반적으로는 인신매매나 착취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관한 정책의 개발에 있어 국가는 그러한 아동이 불법입국이나 체류의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63. 예외적인 구금의 경우, 구금의 조건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 동 협약 제37조 (a) 및 (c), 그리고 기타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이상, 아동을 성인으로부터 분리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주거 처소로 특별한 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실제로 그러한 프로그램의 근원적인 접근방식은 “양육”이어야지 “구금”이어서는 안 된다. 시설은 문화적

으로 적절한 공동체 자원과 법률 지원에 접근이 불가능한 고립된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친구, 친척, 종교적, 사회적 및 법적 상담과 그들의 후견인과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아동은 또한 모든 기초적 필수품뿐만 아니라 필요한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만 한다. 구금기간동안 아동은 석방후에 그들의 교육이 지속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이상적으로는 구금시설 외부에서 행해지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은 또한 동 협약 제31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오락활동과 놀이의 권리를 보유했다. 동 협약 제37조 (d)에 제시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유를 박탈당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배정을 포함한 즉각적이고 무료의 법적 및 기타 적절한 조력에의 접근을 제공받아야 한다.

VI. 비호 절차(asylum procedure), 법적 보호와 비호권(rights in asylum)에 대한 접근

(a) 일반

64. 동 협약 제22조로부터 도출되는 아동의 동반여부에 상관없이 난민의 지위를 구하는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특히 기능하는 비호제도(functioning asylum system)를 구비하고, 특히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다루는 법률제정 및 동 협약과 그 국가가 당사국인 기타 국제 인권, 난민 보호 혹은 인도적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에 따라 이러한 대우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책임을 수반한다. 그러한 역량배양의 단계에서 자원의 제한에 직면한 당사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 원조를 구하도록 강력히 장려된다.

65. 강화된 기준의 바람직함뿐만 아니라 국제 난민법 및 동 협약 제22조상의 의무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고려하여, 당사국 동 협약 제22조의 이행에 있어서 그들이 점진적으로 발달시킨바와 같이 난민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b) 연령에 무관한 비호절차(asylum procedure)로의 접근

66.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포함하여, 비호 신청 중인 아동은 그들의 연령에 무관하게 비호 절차 및 기타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보완적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을 향유해야만 한다. 신원확인 및 등록 절차 중에 아동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거나, 구체적 공포를 명백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객관적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위험에 처하거나, 또 다른 경우, 달리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한 아동은 비호절차와/나, 적절하다면 국제법과 국내법 하에서 제공되는 보충적 보호 메커니즘에 회부되어야 한다.

67. 국제적 보호의 필요에 대한 표시가 없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 자동적으로 혹은 다른 경우에 비호절차로 회부되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 복지 법률과 같은 기타 관련 아동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c) 절차상의 보호와 지원 조치(제3조 3항)

68. 동 협약 제22조 1항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특유한 취약성과 국내 법 체제 및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69. 비호를 신청한 아동은 아동의 배경을 잘 알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성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위 V(b) “후견인 또는 조연자 혹은 법적 대리인의 지정”을 참조).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또한 모든 경우에, 무료로, 난민 지위의 신청이 성인을 위한 표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격 있는 법적 대리인에 대한 접근이 부여되어야 한다.

70.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의한 난민지위의 신청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하며, 즉각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71.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에는 난민신청이 비호와 난민 문제에 있어 완전한 자격을 갖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가 허용하는 한, 자격 있는 공무원에 의한 개인 면담의 기회가 모든 최종 결정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이 자격 있는 공무원과 동일한 언어로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때마다 자격 있는 통역자의 조력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아동은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으면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부여(benefit of doubt)”의 적용을 받아야만 한다.

72. 면담은 난민지위의 평가를 수행하고 아동의 역사, 문화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기 위하여, 동반되지 않은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난민 결정 당국의 대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절차는 아동 개인,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을 포함한 개별 아동에 의해 제시되는 요소들의 독특한 결합에 대한 사례별 검토로 이루어져야 한다. 후견인과 법적 대리인은 모든 면담동안 참석해야 한다.

73. 개인별 난민 지위 결정이 불가능한 광범위한 난민 이동의 경우 당사국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모든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특정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d) 아동에게 특유한 성격의 박해를 고려한 보호 필요성의 아동인지적 평가

74.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난민의 주장을 평가할 때, 당사국은 1951년 난민협약하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감독 기능의 행사에 있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의해 발전된 입장을 포함한 국제인권법과 난민법의 발전과 그들간의 형성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정의는 연령과 성(gender)인지적 방식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며, 아동이 경험한 박해의 특정한 동기와 형태, 발현을 고려해야만 한다. 친족의 박해, 미성년 징집, 매춘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나 여성 할례에의 피해 등은 그러한 행위가 1951년 난민협약상의 이유 중 하나와 관

련되었다면, 아동에 대한 난민 지위의 부여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아동에게 특유한 형태의 박해와 박해의 발현 중 일부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국내 난민 지위 결정 절차에 있어서 성(gender)에 근거한 폭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동에게 특유한 박해의 형태와 발현에 대하여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75. 아동의 난민지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은 특히 아동이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경우에, 국제 난민법 및 국내 난민법의 아동, 문화, 성인지적 적용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소수집단 혹은 소외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비호에 대한 주장(asylum claims), 아동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평가하는 것은 출신국 정보 수집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e)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아동에 의한 모든 국제적 난민권리와 인권의 완전한 향유(제22조)

76. 난민으로 인정되고 비호를 부여받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1951년 난민협약상의 권리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영토 내에서 적법하게 머무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완전한 범위의 그 당사국의 영토 혹은 관할권내에서 아동에게 부여된 모든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f) 보충적인 보호의 형태로부터 이익을 얻는 아동

77. 1951년 난민협약하의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그들의 보호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충적인 보호의 형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보충적 보호 형태의 적용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특별한 보호의 필요를 다루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해당 영토 내에서 적법하게 머무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완전한 범위의 국가의 영토 혹은 관할권내에 아동에게 부여된 모든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78.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원칙, 특히 당사국 영토내에 있음을 알게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의 선상에서, 난민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보충적인 보호의 형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아동은 그들이 사실상 당사국의 영토 그리고/또는 당사국 관할권내에 머무르는 한, 동 협약의 모든 규범에 의한 보호를 여전히 향유할 것이다.

Ⅶ. 가족 재결합, 귀환 및 기타의 영구적 해결책들

(a) 일반

79.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운명을 다루는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다루고,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며, 가능하다면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상황을 극복하도록 이끄는 항구적인 해결책을 밝히는 것이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부당한 지연 없이, 가능하다면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평가 즉시 시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에 따라 항구적인 해결책에 대한 모색 가족의 재결합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80. 추적은 항구적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추적행위나 추적이 수행되는 방식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거나 추적 받는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추적활동에 있어서 비호 신청인 혹은 난민으로서의 아동의 지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든 조건에 따라 그러한 추적노력은 비호 절차 중에도 계속되어야만 한다. 보호국 영토 내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해, 비호의 근거이든(basis of asylum), 보호의 보충적 형태이든, 혹은 퇴거에 대한 기타의 법적, 사실적 장애물로 인한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항구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b) 가족 재결합

81.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동 협약 제9조 이하의 국가 의무의 전적인 준수를 위해, 더 이상의 분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며,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 그의 부모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제12조) (또한 위 4.(e),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아동의 권리를 참조). 제9조 1항의 두 번째 문장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또는 유기에 관련된 경우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고려사항,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결합을 금지할 수 있는 한 편, 기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어떤 특정상황에서만 재결합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82. 아동의 귀환이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초래할만한 “합리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출신국내에서 가족재결합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따라서 출신국내에서의 가족의 재결합은 추구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위협은 난민지위의 부여 혹은 강제송환금지 의무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관련 당국의 결정에 있어서(“고문 및 기타의 잔혹한, 미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관한 협약” 제 3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6조 및 제 7조에서 도출되는 의무를 포함하여) 논란의 여지없이 상세히 기록된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부여는 출신국으로의 귀환에 대해, 또 결과적으로는 가족 재결합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장애가 된다. 출신국의 상황이 낮은 수준의 위협이 존재하며, 예를 들어 아동이 일반화된 폭력의 무차별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위협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계속된 부모와의 분리의 결과를 포함하여 기타 권리에 근거한 고려사항들에 비추어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며 기타의 모든 권리의 향유를 위한 전제조건임을 환기해야만 한다.

83. 출신국에서의 가족 재결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이것이 귀환에 대한 법적 장애물에 근거한 것이든 혹은 귀환에 대한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비교형량에 의한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동 협약 제 9조 및 제 10조하의 의무들은 효력을 발휘하며, 보호국의

가족 재결합에 대한 결정을 좌우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사국들은 특히 “가족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과 “신청자 및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것”(제 10조 제1항)을 유념해야 한다. 출신국들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제 10조 제2항).

(c) 출신국으로의 귀환

84. 출신국으로의 귀환은 만약 그러한 귀환이 아동의 근본적 인권의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특히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출신국으로의 귀환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귀환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 경우에만 예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 적절한 경우 사회네트워크 조직이 수행하는 가정조사를 통해서 아동이 귀환 후 직면할 안전, 보안 및 사회경제적 상황과 같은 여타 상황에 대한 자가학습
- 그러한 특정한 아동에 대한 양육의 배정의 가능성
- 제12조하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표시된 아동 및 양육제공자의 견해
- 아동의 보호국에 통합의 정도 및 출신국에서 분리된 기간
- “자신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한 정체성을 보존할” 아동의 권리(제8조)
-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바람직함 및 아동의 종족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제20조)

85. 부모나 확장된 가족의 구성원에 의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출신국으로의 귀환은 원칙적으로 출신국으로의 귀환에 기하여 안전하고 확고한 양육과 후견책임에 대한 선행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귀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86. 예외적으로 출신국으로의 귀환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기타 고려사항을 신중히

형량하여 후자의 경우가 권리에 기반한 것이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능가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그 아동이 국가나 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상황인 경우일 것이다. 일반적인 이민 규제와 같이 권리에 기반하지 않은 계획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능가할 수 없다.

87. 모든 경우에 귀환조치는 안전하게, 아동에게 적절하고, 성(gender)인지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88. 출신국 또한 동 협약 제10조에 따른 의무의 배경에서 특히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만 함을 상기해야 한다.

(d) 지역적 통합

89. 지역적 통합은 법적 또는 현실적 이유로 출신국으로의 귀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적 통합은 안정적인 법적 지위(거주 지위를 포함하여)에 기반 하여야만 하며, 아동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귀환에 대한 기타 법적 장애 때문이든지 또는 귀환에 반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든지 간에 그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완전히 적용 가능한 협약 상 권리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

90. 일단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 공동체에 체류하기로 결정되면, 관련 당국은 아동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만 하며, 그리고 아동 및 아동의 후견인과 협의하여 지역 공동체내에서의 적절한 장기적 배치와 그러한 통합을 촉진할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결정해야 한다. 장기적인 배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하며, 이 단계에서 시설양육은, 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국민인 아동이 향유하는 권리에 대한 (교육, 훈련, 고용 및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동일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호국은 그런 아동의 취약한 상태를 해

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치, 예를 들어 추가적인 언어 훈련과 같은 조치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 국가간 입양 (제21조)

91. 당사국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에 기타 관련 국제 문서, 특히 1993년의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과 그 협약의 1994년 “난민과 기타 국제실향아동의 입양에 관한 권고”뿐만 아니라 동 협약 제21조하에 제시된 선행조건들을 전적으로 존중해야만 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준수해야만 한다.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입양은 일단 아동이 입양될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실제로, 이는 특히 추적 및 가족 재결합에 대한 노력이 실패한 경우, 또는 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입양을 위해 필요한 부모와 다른 사람, 기관 및 당국의 동의는 자유의사에 따라 모든 정보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분명히 그러한 동의가 어떠한 종류의 지불이나 보상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니며,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함축한다.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비상사태가 한창일 때 급하게 입양되어서는 안 된다.
- 모든 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해야만 하며 적용 가능한 국내법, 국제법 및 관습법을 준수하며 수행되어야만 한다.
-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아동의 견해를 구해야만 하며, 모든 입양절차에서 그 견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아동이 입양과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행위의 결과에 대해 상담받고 충분히 고지받을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동의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종류이든 간에 지불이나 보상에 의해 의도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 거주국내의 친척에 의한 입양이 우선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출신 공동체 혹은 적어도 아동의 문화 내에서의 입양이 우선된다.
- 입양은 다음의 경우에 고려되지 않는다.
 - 성공적인 추적에 대해 믿을만한 가망성이 있고 가족재결합이 아동의 최선의 이

익일 때

- 아동이나 부모가 표시한 요청에 반하는 경우
 - 부모나 기타 생존 가족의 추적을 위한 모든 가능한 절차가 수행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적절한 추적의 수행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으나 추적 절차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만 한다.
- 비호국내의 입양은 가까운 미래에 안전과 존엄성의 조건하에 자발적인 본국송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f) 제 3국에서의 재정착

92. 제 3국으로의 재정착은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보호국에서 항구적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재정착에 대한 결정은 특히 국제적 및 기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종합적, 철저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평가에 근거하여야만 한다. 특히 재정착은 아동을 강제송환이나 박해 또는 체류국에서의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로부터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요청된다. 재정착은 또한 재정착 국가에서의 가족의 재결합에 기여하는 경우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93. 재정착의 결정에 선행하여 최선의 이익에 대한 평가는 또한 다음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아동의 본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법적, 또는 기타 장애물의 지속, 예견되는, 아동의 국적과 성명을 포함한 아동의 정체성 보존의 권리(제8조), 아동의 연령, 성별, 감정적 상태 및 교육적 및 가족적 배경, 보호국내의 양육의 계속/단절, 아동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바람직함 및 아동의 종족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제20조), 가족관계를 유지할 아동의 권리(제8조) 및 본국, 보호국 또는 재정착국 내에서 가족의 재결합에 대한 장기, 중기, 단기적 가능성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제3국에서의 재정착이 미래의 가족 재결합을 손상하거나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절대로 제3국 재정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94. 당사국들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재정착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VIII. 훈련, 자료 및 통계

(a)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다루는 인력의 훈련

95.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그들의 사건을 다루는 공무원의 훈련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화된 훈련은 법적대리인, 후견인, 통역인 및 분리되고 동반되지 않은 아동을 다루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다.

96. 그러한 훈련은 관련 집단의 특수한 필요와 권리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포함한 특정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모든 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 동 협약의 원칙들과 규정들
-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출신국에 대한 지식
- 적절한 면담 기술
- 아동 발달과 아동심리학
- 문화적 민감성과 이문화간 의사소통

97. 초기의 훈련 프로그램은 직장 훈련 및 전문가 조직을 통한 방법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추후관리 되어야만 한다.

(b)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관한 자료와 통계

98. 본 위원회의 경험상,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와 통계는 도착의 수 그리고/또는 비호 요청건수에 불과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

는 그러한 아동의 권리의 이행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불충분하다. 나아가 자료와 통계는 종종 다양한 다른 부서 또는 기관에 의해 수집되며, 이는 심층적인 분석을 방해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아동의 비밀유지와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관한 잠재적 우려를 제기한다.

99. 따라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관한 자료수집의 상세하고 통합된 체계의 개발은 그러한 아동의 권리의 이행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100. 그러한 체계 내에서 수집된 자료는 이상적으로 각 아동에 대한 기본적 전기적 자료(연령, 성별, 출신국 및 국적, 종족 집단을 포함한), 입국을 시도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총 수와 입국거부된 수, 비호신청건수, 그러한 아동에게 배정된 법적 대리인과 후견인의 수, 법적 그리고 이민 지위(즉, 비호신청자, 난민, 일시적 거주 허가), 거주배정(즉, 시설내, 가족과 동거, 혹은 독립생활), 학교나 직업훈련에의 등록, 가족의 재결합 및 출신국으로 귀환한 아동의 수를 포함해야만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사국은 이에 부가하여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실종과 인신매매의 영향과 같이 불충분하게 해결된 채 남아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질적인 자료 수집을 고려해야 한다.

주(註)

¹ 이러한 기준 원칙은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 구조 위원회, Save the children/UK, 유엔아동기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및 국제 월드비전에 의해 합동으로 찬성되었다. 그들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을 존중하는 국제기구 간 상설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려 의도하였다.

² 인권에 관한 세계회의, 비엔나, 1993년 6월 14일-25일,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 A/CONF.157/23.

³ 박해의 아동특정적 형태 및 발현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것은 이하를 참조: “아동에게 특유한 성격의 박해를 고려한 보호 필요성의 아동 인지적 평가”, 위 6(d).

일반논평 7 (2005)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I. 서론

1. 본 일반논평은 국가 보고서를 검토해온 위원회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많은 경우, 초기 유년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으며, 주로 아동 사망률, 출생 등록과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에 주로 제한되어 있었다. 본 위원회는 유아를 위해 “아동 권리협약”의 보다 광범위한 함의를 논의할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2004년 본 위원회는 “초기 유년기의 아동권리의 이행”이라는 주제에 대해 일반토론의 날을 할애하였다. 이 논의는 일련의 권고들(CRC/C/143, sect. VII 참조)에 따라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일반논평을 준비하기로 한 결정하였다. 본 일반논평을 통해 본 위원회는 유아들이 본 협약에서 부여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임과, 초기 유년기가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는 인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본 위원회에서의 “초기 유년기”의 정의는 모든 유아들에게 해당 된다; 출생에서부터 유년기에 이르는 시기이며; 취학이전 기간 동안이며; 뿐만 아니라 취학으로 이행기도 포함한다(이하 IV항 참조).

II. 일반논평의 목적

2. 이 일반논평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모든 유아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유아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는 것;
- (b)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초기 유년기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
- (c)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특별한 이익과 능력 및 취약성을 가지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유아를 인식하는 것과 그들의 권리의 행사에 대한 보호, 지도 및 지원의 요건 인식을 고취하는 것;
 - (d) 동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초기 유년기의 다양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것, 여기에는 유아의 상황, 및 그들의 경험의 질, 그리고 그들의 발달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의 다양성이 포함 된다;
 - (e) 사회적 기대와 아동의 대우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지적하는 것, 여기에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존중해야만 하는 지역적 관습과 관행이 포함 된다;
 - (f)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의 복지를 저해하는 빈곤, 차별, 가정 파괴 및 다양한 다른 재난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것;
 - (g) 초기 유년기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정책, 법률, 프로그램, 실행, 전문가 훈련 및 연구의 형성과 중진을 통해 모든 유아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

III. 인권과 유아

3. 유아는 권리의 보유자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한다(제1조). 결론적으로 유아는 동 협약에 부여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다. 그들은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들의 능력발달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 하에서 당사국들이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당사국들이 권리의 보유자로서의 유아와 아동이 유년기의 이 독특한(distinct) 시기동안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및 상호의

존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초기 유년기에 전체로서 적용되어야 함을 재확인 한다.

4. 초기 유년기의 정의. 초기 유년기의 정의는 지역적 전통과 초등교육체제의 구성에 따라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몇몇 국가에서는 유치원(preschool)에서 학교로의 이행이 4세 이후에 곧 일어난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이러한 이행이 7세를 전후하여 일어난다. 유년기의 권리를 고려하여 본 위원회는 모든 유아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출생에서 유아기까지; 취학 전 연령의 기간 동안; 취학으로의 이행 기간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출생이후 8세까지의 기간을 초기 유년기의 적절한 실무적 정의로 제시한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정의의 맥락에서 유아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검토해야만 한다.

5. 초기 유년기를 위한 적극적인 의제.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유년기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제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초기 유년기를 미성숙한 인간에서 성숙한 성인의 상태로 가는 사회화의 단계로 주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관념을 탈피할 것이 요구된다. 본 협약은 영아를 포함한 아동이 그들 자신의 권리에 있어서 인격체(persons)로서 존중받을 것을 요청한다. 유아는 그들 자신의 관심사와 이익, 관점을 가진 가족, 공동체와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써 인정되어야 한다. 자식의 권리의 행사를 위해 유아는 사회적인 활동, 경험과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양육, 정서적인 보살핌과 민감한 지도를 특별히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는 유아기에 대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가장 잘 계획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예를 들면 아동권리 위원회의 임명 그리고 독립 인권 기구에서 아동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이행 계획과 독립적인 감독이 포함된다(독립 인권 기구의 역할에 대한 일반논평 2(2002)의 제 19항 참조).

6. 초기 유년기의 특징. 초기 유년기는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해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 (a) 유아는 일생동안 그들의 육체와 신경계통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며, 운동성, 의사소통 기술과 지능이 성장하고, 그들의 이익과 능력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 한다;

- (b) 유아는 그들의 부모나 기타의 양육자와의 강한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하며, 그들로부터 그들의 개성과 능력성장을 존중하는 방식의 양육, 보살핌, 지도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
- (c) 유아는 또래의 아동들과 중요한 그들만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유아는 공유하는 활동을 협심하고 조정하는 것, 분쟁을 해결하는 것, 약속을 준수하는 것과 다른 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학습한다;
- (d) 유아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며, 자신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아동과 성인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 한다;
- (e) 유아의 가장 어린 시기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정서적인 안정, 문화적, 인격적 주체성, 그리고 능력개발의 기초가 된다;
- (f) 유아의 성장과 발달 경험은 그들의 성, 생활 조건, 가족 구성, 양육 환경(care arrangement)과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 (g) 유아의 성장경험과 발달은 아동의 필요와 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우, 가족과 공동체에서의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문화적 신념에 의해 유력하게 형성된다.

7. 모든 유아가 직면하는 특별한 이익, 경험 및 도전들을 존중하는 것은 유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간인 이 기간 동안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시발점이 된다.

8. **초기 유년기의 연구.** 본 위원회는 아동의 생존·복지 및 발달이 밀접한 관계에 달려 있고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유아가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음을 확

신하는 이론과 연구의 증가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계는 주로 소수의 핵심적인 사람들과 관계되며, 이들은 양육자와 기타 초기 아동기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로 종종 부모, 확대가족의 구성원들, 동료들이다. 동시에 초기 유년기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아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보살핌,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장치(arrangement)를 포함한 초기의 발달이 이해되고, 규정되는 다양한 방식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현대 사회의 특성은 다문화적 공동체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증대된 인권을 통해서 등, 유아에 대한 신념과 기대가 또한 변화하며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점철되는 상황에서 성장하는 유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당사국들은 지역 환경과 변화하는 관행에 적합하고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며 비차별적으로 제공되고(동 협약 제2조)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반하지 않고(제24조 3항)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식(제3조)으로 초기유년기에 대한 신념과 지식을 갖추도록 고무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영양결핍, 질병, 빈곤, 유기, 사회적 배제(exclusion) 및 기타의 다른 재난에 유아가 특별히 취약함을 강조해왔다. 초기 유년기동안의 적절한 예방과 개입 전략을 유아의 현재의 복지 및 미래의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초기 유년기의 아동권리의 이행은 따라서 중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동안의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어려움(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4(2003)를 참조)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Ⅲ. 일반원칙과 초기 유년기의 권리

9.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제 2, 3, 6조 및 제 12조를 일반 원칙으로 확인하였다(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제 5(2003) 참조). 각 원칙은 초기 유년기의 권리에 대한 항의를 가진다.

1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제 6조는 생명에 대한 아동의 고유한 권리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어머니와 아기를 위해 산전기의 보호를 촉진할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 촉구되며,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이 기간 동안 모든 유아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 촉구된다. 영양결핍과 예방이 가능한

질병들은 초기 유년기의 권리의 실현에 주요한 장애물이 되어왔다. 생존과 신체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당사국들은 제 6조가 발달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과 유아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복지는 많은 측면에서 상호의존적임을 상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나쁜 생활환경, 유기, 둔감하거나 학대하는 대우 및 인간의 잠재 능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기회의 제한 등에 의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유아는 특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하 VI장 참조).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그리고 기타 관련자에게) 생존과 발달에의 권리는 총체적 방식으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부모의 책임의 존중 및 후원과 양적 서비스의 제공(제 5조 및 제 18조)을 비롯하여 건강, 적절한 영양,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 수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교육과 놀이에 대한 권리(제24,27,28,29 및 제31조)를 포함한 동 협약의 모든 기타 규정의 이행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낮은 연령에서부터 아동은 좋은 영양공급과 건강한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생활양식을 증진하는 활동에 그들 자신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11. 비차별의 권리. 제2조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초기 유년기에 대한 본 원칙의 함의를 확인할 것을 촉구 한다:

(a) 제 2조는 일반적으로 유아가 어떠한 근거에서도, 예를 들어 법이 유아를 비롯한 모든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경우 등, 차별받아서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들의 권리실현에 있어서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차별의 위협에 처해있다;

(b) 제2조는 또한 특정유아집단에 대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은 영양공급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방식; 부적절한 보살핌이나 관심; 놀이, 학습과 교육에의 기회의 제한; 혹은 감정이나 견해의 자유로운 표현의 금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차별은 또한 착취적이거나 학대적일 수 있는 가혹한 대우와 비이성적인 기대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
- (i) 여아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권리의 침해로써,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그들의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초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 그들은 선별적 낙태, 생식기 절단, 아기의 불충분한 영양공급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 유기와 영아살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과도한 가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기대되거나 유치원 교육과 초등교육에의 참여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 (ii)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은 생존의 기대와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아동은 다른 아동에게 제공되는 간호, 양육, 영양공급과 격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통합과 권리의 실현을 위해 부가적인 특별한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 (iii) HIV/AIDS에 감염되거나 영향을 받는 아동에 대한 차별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을 박탈한다. 차별은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상적인 관행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내에서, 서비스의 제공 및 서비스에의 접근에서 발견된다(para. 27을 참조);
 - (iv) 인종적 기원, 신분/카스트, 개인의 환경과 생활양식, 혹은 정치적 종교적 신념(아동 혹은 그의 부모의)과 관련된 차별은 아동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차별은 그들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부모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 차별은 아동의 성인에 대한 분노와 충동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회와 자기존중에 영향을 준다.
 - (v) 다중적 차별(예를 들어 인종적 기원, 사회적 문화적 상태, 성 그리고 /혹은 장애)을 겪는 유아는 특히 위험에 놓여있다.

12. 유아들은 그들의 부모에 대한 차별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며, 예를 들면 혼인 외 혹은 전통적 가치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출생한 유아, 또는 그들의 부모가 난민 혹은 비호신청자인 경우가 있다. 당사국은 차별이 어떠한 형태이든, 어디서 받

생하든 간에-가족, 공동체,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의 차별을 감독하고, 이에 맞설 책임이 있다. 유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차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보건, 교육, 복지 및 기타의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국가, 사적 혹은 봉사단체와의 연합을 통해 제공되는 지역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첫 번째 단계로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유아의 생존과 발달에 기여하는 양질의 서비스에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성을 감독할 것을 격려하며, 여기에는 아동 및 가족의 배경과 상황에 관련된 주요한 변수로 분류된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것이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로는 모든 아동이 가용한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당사국은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유아에 대한 차별 및 특히 취약한 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해 더욱 각성해야 한다.

13. 아동의 최선의 이익. 제 3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최우선의 고려사항임을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유아들은 그들의 견해와 능력발달을 고려하는 동시에 복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과 행동과 관련하여 그들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측정하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기관에 의지한다. 최선의 이익의 원칙은 동 협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조기유년기와 가장 관련 있는 제9, 18, 20, 21조를 포함) 최선의 이익의 원칙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적용되며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일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와 기타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존, 성장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에도 적용 된다;

(a) *개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양육, 건강, 교육 등 아동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한 것이어야만 하며, 여기에는 부모, 전문가 및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 의한 결정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유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법적절차에서 유아가 자신의 견해와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경청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b) *집단 혹은 정치의 기반으로서의 유아의 최선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법과 정책 개발, 행정적 사법적 의사결정과 서비스 제공은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고려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유아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환경 거주 혹은 이동과 관련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예를 들면 보건서비스, 양육체계 혹은 학교와 관련된)들을 포함한다.

14.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제 12조에서는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와 이를 고려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 권리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 보호 감독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유아의 지위를 강화해준다. 유아의 행위-가족,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에 대한 존중은 종종 간과되거나 연령과 미성숙을 이유로 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된다. 많은 국가와 지역의 전통적인 신념들은 유아의 훈련과 사회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유아들은 미발달되고, 심지어는 이해, 의사소통 및 선택의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 내에서 무기력하며 종종 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회는 제 12조가 아주 어리거나, 좀 더 나이가 많거나 불문하고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적용됨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권리의 보유자로서, 가장 어린 아동일지라도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제 12조 1항). 유아는 그들의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며 그들의 삶속의 사람, 장소 및 일상과 그들 자신만의 정체성에 대해 급속히 이해하며 자각한다. 그들은 구어 혹은 문자화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감정, 생각과 희망을 전달하고, 선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 (a) 본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이 견해를 표시할 자유를 가진 권리 및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의논 받을 권리를 가진 권리 보유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개념이 아동의 능력, 최선의 이익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이행되도록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
- (b) 견해와 감정을 표시할 권리는 가정(적절한 경우에 확대가족을 포함) 및 아동의 공동체에서의 아동의 일상 생활에 정착되어야만 한다;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조

기 유년기의 건강, 양육과 교육 시설의 모든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연구와 협의를 통한 것을 포함한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서;

- (c) 당사국은 유아에게 모든 관련 환경들에서의 일상의 활동에서 그들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부모, 전문가 및 책임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참여권의 달성은 성인이 아동중심적인 자세를 취하고, 유아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성인은 유아의 이익, 이해의 정도와 선호하는 의사소통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인내심과 창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IV. 부모의 책임과 당사국의 조력

15. 부모와 기타의 일차적인 양육자의 결정적 역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경우에 법적 보호자를 포함한 유아의 부모는, 다른 가족, 확대가족,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유아의 권리의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동 협약에서 양질의 아동 양육 서비스를 포함한 조력을 제공할 당사국의 의무와 함께 완전히 인정되었다(특히 제 5조). 동 협약의 전문은 가족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 환경”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여기에서의 “가족”은 육아, 양육 및 발달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여기에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는 핵가족을 포함하여, 확대가족 및 기타의 전통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공동체 기반의 제도가 포함된다.

16. 부모/일차적 양육자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부모 및 기타의 일차적인 양육자에게 부여된 책임은 그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내에서 행동하라는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제 5조는 부모의 역할이 “동 협약내의 아동의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신생아와 유아는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적이지만 그들은 양육, 감독과 지도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다. 그들은 부모 혹은 양육자들로부터 생존,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사회의 구성원이다. 신생아들은 출생이후 그들의 부모(혹은 다른 양육자)를 매우 빨리 인식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비언어적인 의사교환을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아들은 그들의 부모 혹은 일차적 양육자와 강하고 다양한 애착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는 아동에게 지속적인 양육과 관심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아동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기술과 지식 및 행동을 습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와 다른 양육자)는 유아가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로가 된다.

17. 권능을 부여하는 원칙으로서의 능력발달 제 5조는 “능력 발달”이라는 개념을 아동이 그들의 권리 및 권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지식, 능력 및 이해를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성숙과 학습의 과정으로 언급한다. 유아의 능력발달의 존중은 아동권리의 실현에 결정적이며, 특히 초기 유년기의 기간 동안이 중요한데, 이는 가장 초기의 유아기부터 학교교육의 시작기 동안 아동의 신체적, 인식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이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제5조는 부모(그리고 기타의 사람들)가 아동에게 제공할 지원과 지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정은 아동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최선의 이익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아동의 이익과 소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유아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있는 아동보다 더 많은 지도를 필요로 하지만, 같은 연령대의 아동의 능력 및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능력발달은 긍정적이고 가용한 과정으로 여겨져야 하며, 아동의 자율과 자기표현을 제한하는 권능을 부여하는 아동의 상대적인 미성숙과 사회화의 필요를 지적하여 전통적으로 정당화 되어온 권위적 관행에 대한 변명이어서는 안된다. 부모(그리고 기타의 사람들)은 대화 및 예를 보임으로써 참여권(제12조) 및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유아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아동중심적인 방식으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¹

18. 부모의 역할의 존중. 동 협약 제 18조는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동의 발달과 복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촉진시킬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제 18조 1항 및 제 27조 2항). 당사국은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선적인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면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키지 않을 의무가 포함된다(제 9조). 유아는 특히 분리의 역효과에 취약하며, 이는 그들의 부모/일차적 양육자에 대한 신체적인 의존과 정서적인 애착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모든 분리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에는 유기와 적절한 양육의 결핍이 포함된다; 극심한 육체적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 혹은 손상된 정신건강하의 양육; 격리된 양육; 부모간의 불화 혹은 아동에 대한 학대가 포함된 일관성이 없는 양육 ; 및 아동이 혼란한 관계(강제적 분리를 포함)를 경험하는 경우 혹은 아동이 저질의 시설에서의 양육을 받는 경우.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가 그들의 아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해로운 궁핍, 혼란 및 왜곡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모가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유아의 복지가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곳에 조치를 취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당사국의 전반적인 목적에는 유아의 최선의 이익인 것으로 결정될 경우를 장소를 제외하고, 시설적 혹은 다른 형태의 장기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기되거나 고아가 된 유아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포함된다(이하 VI을 참조).

19. 사회적 추세와 가족의 역할. 동 협약은 “양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의 책임을 진다”고 강조하며, 부친과 모친을 동등한 양육자로 인정하고 있다(제 18조 1항). 본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가족의 유형이 가변적이며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의 규모, 부모의 역할과 아동의 육아를 위한 환경에 있어서의 거대한 다양성을 향한 전반적인 추세와 함께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가용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일관된 소수의 양육 관계 내에서 신체적, 인격적, 그리고 심리적 발달을 가장 잘 제공받을 수 있는 유아에게 중요하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아동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전문화된 전문적인 양육가들과 함께 모친, 부친, 형제자매, 조부모와 확대가족의 기타 구성원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관계 각각이 동 협약 하의 아동 권리의 실현에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가족유형의 범위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몇몇 국가와 지역에서는 가족, 결혼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가 초기 유년기의 유아의

경험, 예를 들면 가족의 분리와 재구성에 따른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그들의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해야만 하는 경우와 같은 경제적인 압력 또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국가들과 지역에서 HIV/AIDS에 의한 양친, 혹은 부모 일방 또는 친척의 질병이나 죽음은 초기 유년기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요소 및 기타의 많은 요소들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준다. 보다 일반적으로, 급속한 사회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관행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부모의 능력이 이해되고 존중될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관행은 더 이상 현재의 양육환경과 삶의 양식에 실용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을 수 있다.

20. 부모에 대한 지원. 당사국은 부모, 법적 보호자 및 확대가족이 아동 양육의 책임 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았으며(제 18조 2항 및 제 18조 3항), 여기에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고(제 27조 2항) 아동이 필요한 보호와 배려(제 3조 2항)를 보장하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 위원회는 유아에게 책임이 있는 부모 혹은 기타의 사람들, 특히 어린, 편부모의 발생률이 높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조혼과 어버이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 기술 및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음을 우려한다. 초기 유년기는 동 협약에서 보장된 아동의 복지의 모든 측면, 아동의 생존, 건강, 신체적인 안전과 정서적인 안정, 생활과 양육의 기준, 놀이와 학습의 기회 및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부모의 책임이 가장 광범위한(그리고 집중적인)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의 실현은 대부분 양육의 책임을 진 사람들의 가용한 자원과 복지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연관성의 인식은 부모, 법적 보호자 및 기타의 양육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시발점이다. 예를 들어:

- (a) 통합적인 접근은 보다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개입(예를 들어 모자를 위한 분만전후의 보건 서비스, 부모 교육, 가정방문)에 부가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 증진을 위한 부모의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입(예를 들어 조세와 급여, 적절한 주택, 근무 시간)을 포함할 것이다;

(b) 적절한 지원의 제공은 예를 들면 아동이 보다 활동적이 되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늘어나며, 사회적인 능력을 키우고, 양육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초기 유년기동안의 변화하는 요구와 압력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과 기술을 고려해야만 한다;

(c) 부모에 대한 지원은 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조부모와 기타의 때때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증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할 것이다;

(d) 지원은 또한 부모와 기타의 가족구성원에게 유아와 적극적이고 민감한 관계를 갖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1. 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초기 유년기를 위한 포괄적 정책의 일부로서 가장 잘 달성될 것이며(이하 V를 참조), 여기에는 초기의 보건, 양육 및 교육제공이 포함된다. 당사국의 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부모로 하여금 그러한 프로그램에 유아가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이는 가장 불리하고 취약한 집단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제 18조 3항은 많은 부모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종 그들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낮은 급여를 받는 직업에 있음을 인정한다. 제 18조 3항은 당사국들이 취업 부모를 둔 아동이 육아서비스, 모성 보호 및 아동을 위해 적절한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의 2000년의 모성보호 협약(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No.183))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V. 초기 유년기, 특히 취약한 아동을 위한 포괄적 정책과 프로그램

22. 권리에 기반한 다부문적 전략.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초기 유년기는 질적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서 후순위에 있어왔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종종 파편화되어왔다. 이 서비스들은 종종 중앙과 지방단위의 몇몇 정부 부서의 책임이 되어왔으며, 그들의 계획은 대개 단편적이고 조정되지 않았다. 몇몇 경우에 그들은 또한 사적이고 자발적인 영역에서 충분한 자원, 규제나 질적 보장 없이 많이 제공되었다.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항상 서비스의 계획과 제공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권리에 기반한, 조화로운 다각적인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청된다. 이는 8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관련된 법과 정책의 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접근에 근거해야만 한다. 초기 유년기의 서비스, 제공 및 설비를 위한 포괄적인 틀이 필요하며, 정보와 감독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서비스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조화될 것이며, 그들의 환경과 필요(동 협약 제 5조에서 18조의 조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IV를 참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을 완전히 존중할 것이다. 부모는 또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계획에 있어서 의견을 요청받고 참여해야 한다.

23. 연령범위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기준 및 전문적인 훈련. 본 위원회는 초기유년기를 위한 포괄적 전략은 개별 아동의 성숙도와 개성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 특히 특정 연령집단의 발달상의 우선순위의 변화(예를 들어 신생아, 유아, 취학전 그리고 저학년)와 프로그램의 기준 및 질적 표준의 함의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특히 보건과 안전의 영역에 있어서 초기 아동기를 위한 시설, 서비스 및 설비가 질적 기준에 적합해야만 하며, 직원이 바른 심리사회적 품성을 갖춰야만 하며, 직원의 수가 충분하며, 잘 훈련되어있을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서비스의 제공은 유아의 상황, 연령 및 개성에 적합한 모든 직원은 이 연령대의 아동집단과 일할수 있도록 훈련 받을 것을 요구한다. 서비스의 제공은 여성 및 남성의 고급인력의 수급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들이 아동의 권리와 발달(제 41항을 참조)에 대한 건전한, 최선의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 그들이 적절한 아동중심적인 육아 관행, 교육과정 및 교수법을 채택하는 것; 공적, 사적 프로그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감시 체계를 포함한 전문화된 직업적 자원과 지원에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4.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접근.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유아(그리고 그들의 복

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가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보건, 육아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적절하고 실효적인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받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가장 취약한 유아집단과 차별의 위험에 놓인 유아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제 2조). 여기에는 여아, 빈곤 아동, 장애아, 원주민 혹은 소수집단에 속한 아동, 이주 가정의 아동, 고아가 되거나 혹은 기타의 이유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동,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구금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 난민과 비호를 구하는 아동, HIV/AIDS에 영향을 받거나 감염된 아동 및 알콜중독 혹은 약물중독인 부모를 둔 아동(이하 VI을 참조)이 포함된다.

25. 출생등록. 초기유년기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는 출생에서부터 시작한다. 본 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의 제공이 여전히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주요한 난제임에 주목한다. 이는 아동의 개인적인 정체성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은 기본적인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 생존, 발달 및 모든 아동을 위한 질적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제6조), 본 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이는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하고, 무료인 보편적이고, 잘 관리되는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시스템은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이동식 등록 기구(unit)의 제공과 같이 가족의 상황대응하고 탄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몇몇 지역에서는 병들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이 등록될 가능성이 적음에 주목하고,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출생시에 등록되어야만 함을 강조한다(제2조). 본 위원회는 또한 뒤늦은 출생등록의 촉진의 중요성 및 미등록 아동의 보건의료, 보호, 교육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보장의 중요성을 당사국에게 환기시키는 바이다.

26. 생활과 수준과 사회 보장. 유아는 그들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제27조). 본 위원회는 빈곤의 악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유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생활 수준마저 보장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주의를 기울인다. 상대적 빈곤 속에서의 성장은 아동의 복지, 사회적 포섭, 자기 존중을 저해하고, 학습과 발달의 기회

를 감소시킨다. 절대빈곤에서의 성장은 심지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삶의 기본적인 질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악영향에 맞서야 하며 이뿐만 아니라 초기 유년기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력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과 가족을 위한 “물질적인 보조 및 지원 프로그램”(제27조 3항)을 포함한 유아의 권리에 부합하는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아동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이행은 모든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제26조).

27. 보건의료의 제공. 당사국은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아동이 삶에 있어서 건강한 출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제24조) 초기연령동안 도달 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보건의료와 영양공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특히;

- (a) 당사국은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과 같이 유아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정화된 식수, 적절한 위생, 적절한 면역접종, 좋은 영양공급과 의료 서비스로의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영양결핍과 질병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 그것은 학습과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의 실현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동의 심리적인 상황에 영향을 준다. 비만 및 건강하지 않은 생활방식도 이와 동일하게 작용한다.
- (b) 당사국은 모유수유, 영양공급, 위생상태 및 위생의 유익에 대한 것을 포함한 아동 건강과 발달에 대한 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² 또한 건강한 가족-아동 관계의 조성을 위해, 특 아동과 어머니(혹은 일차적인 양육자)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어머니와 영아를 위한 적절한 산전, 산후 보건의료의 제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제24조 2항). 유아는 그들의 동료 사이에서 예를 들면 적절한 아동중심적인 보건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건강한 생활방식을 촉진하고 스스로 그들의 개인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

- (c)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의 초기 유년기의 HIV/AIDS의 특별한 위험에 대하여 주의

를 환기하고자 한다. (i) 부모와 유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간, 그리고 어머니와 아기간의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것을 통한,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것, (ii)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및 바이러스에 감염된 부모와 유아 모두를 위한 기타 형태의 지원(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포함)을 제공하기 위한; 그리고 (iii) 건강한 고아 및 감염된 고아를 포함한 HIV/AIDS로 인하여 부모 혹은 기타의 일차적인 양육자를 잃은 아동에게 적절한 대안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3(2003)을 참조).

28. 초기유년기의 교육. 본 협약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초등교육이 의무적인 것이며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제28조). 본 위원회는 몇몇 당사국이 모든 아동을 위한 일년간의 무상 취학전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본 위원회는 초기 유년기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서 최대한의 발달에 대한 유아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제6조 2항). 교육과 발달간의 연결은 제29조 1항에 상세화 되어 있다: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은 (a)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함에 동의한다.”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제1에서는 그 목적이 “아동의 기술, 학습과 기타의 능력, 인간의 존엄성, 자기 존중 및 자신감을 개발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권한을 주기 위한”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중심적인, 아동 우호적이고 아동의 고유한 존엄성과 권리를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달성되어야만 함(제2항)을 밝히고 있다.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모든 아동을 포함하며 여아들은 여하한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함을 명심해야 한다(제2조).

29. 초기유년기의 교육에 대한 부모와 공공의 책임. 부모(그리고 기타의 일차적인 양육자)가 아동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육자임은 잘 성립된 원칙이며 부모의 책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는 동 협약에서도 승인된 바 있다(이하 IV항 참조). 그들은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유아에게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고,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환경과 애정이 있는 관계를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제5조). 본 위원회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당사국이 이 원칙을 조기교육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요

청한다;

(a) 아동을 양육할 부모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때(제18조 2항), 당사국은 아동의 초기교육에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강화할 수 있고, 아동중심적인 아동양육의 관행을 촉진할 수 있으며, 아동의 존엄성존중을 고무시키고 이해, 자기 존중과 자신감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b) 초기 유년기에 대한 계획에서 당사국은 항상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한 “그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제 29조 1항 (a))” 계발시키는데 있어서 부모, 전문가 및 기타 사람들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0.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국가, 공동체 혹은 시민사회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초기 유년기의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기여뿐만 아니라 부모, 확대가족과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의(위의 제 28항에서 개설된 바와 같이) 모든 유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연구 결과는 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가지는 유아의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진학 및 그들의 교육적 진보와 장기적인 사회 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다. 많은 국가들과 지역에서는 현재 포괄적 초기 교육을 4세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이것이 일하는 부모의 육아와 결합되어 있다. “양육”과 “교육”서비스 간의 전통적인 차이가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식하면, “교육양육(educare)”의 개념을 인식하면, 때때로 포괄적 서비스로의 이동의 신호가 되기도 하며, 초기 유년기에 대한 조화되고, 전체적이며, 다부문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강화한다.

31. **공동체 기반의 프로그램.**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에 대한 권한부여 및 부모(및 기타 양육자)의 교육이 주요한 특성을 이루는 가정 및 공동체에 기반을 둔 취학전 프로그램을 포함한 초기 유년기 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당사국은 양질

의, 그리고 적절한 지원의 서비스의 제공 및 특정한 집단과 개인의 환경 및 유아에서 부터 취학시기까지의 특정연령집단의 발달상의 우선사항에 맞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인 체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당사국은 고품질의, 발전적으로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고안할 것과 초기 유년기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을 강요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작업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이 고무된다. 본 위원회는 또한 활동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다른 것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아동의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및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속성과 발달을 보장하는 초등학교로의 진학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초기유년기 프로그램에 당사국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권리기반적인 접근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32. 서비스제공자로서의 민간 부문. 2002년의 “아동권리의 이행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로서의 민간부문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에 채택된 권고(CRC/C/121, 630~653항 참조))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통로로서의 비정부적 부문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나아가 모든 비 국가 서비스 제공자(“비영리”제공자뿐만 아니라 “영리적”제공자를 포함하여)에게 동 협약의 원칙들과 규정들을 존중하도록 요청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의 일차적인 의무는 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초기 유년기 전문가-국가와 비국가 영역 모두에서-는 철저한 준비, 지속적 훈련 및 적절한 보수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초기 유년기 발달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어야 한다. 비 국가 서비스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본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최선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고 통제할 당사국의 의무가 있음을 당사국에게 상기시키는 바이다.

33. 초기 유년기의 인권교육. 제29조 및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 1(2001)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초기 유년기의 교육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한다. 그러한 교육은 아동에게 그들의 이해, 관심 및 능력 발달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참여적이며 아동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유아에 대한 인권교육은 가정, 아동 양육 센터, 조기 교육 프로그램 및 유아가 인지할 수 있는 기타의 공동체의 환경내의 일상의 주제들과 밀접한 것이어야 한다.

34. 휴식, 여가 및 놀이에의 권리. 본 위원회는 “휴식 및 여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 및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동 협약 제31조의 이행에 대한 당사국 등이 충분히 유의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놀이는 초기 유년기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아동이 혼자 놀든, 혹은 다른 아동과 함께 놀든 간에 놀이를 통해 아동은 즐기는 동시에 그들의 현재의 능력에 도전한다. 초기 유년기에서의 창조적인 놀이와 탐구적인 학습의 가치는 널리 인정되었다. 그러나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의 실현은 종종 유아가 아동 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지원적이고, 고무적이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과 접촉하고, 놀며, 상호작용할 기회에 부족으로 인해 종종 방해받았다. 아동의 놀이 공간에 대한 권리는 특히 주택 구조와 밀집도, 상업센터, 교통체제가 소음, 오염 및 유아에게 유해한 환경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결합되어 있는 많은 도시환경에서 위협에 처해있다. 놀이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또한 지나친 가사의 잡일(특히 여아에게 영향을 주는) 또는 경쟁적인 학업에 의해서도 좌절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 비정부 기구 및 사적행위자에게 빈곤감소정책의 일부로서, 최연소 아동의 이러한 권리의 향유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물을 확인하고, 제거할 것을 요청한다. 마을, 여가와 놀이 시설에 대한 계획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아동이 그들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제12조)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당사국이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인적, 그리고 물질적)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배치하도록 장려한다.

35. 현대 통신 기술과 초기 유년기. 제17조에서는 전통적인 문서 기반의 매체와 현대의 정보 기술에 근거한 대중 매체 모두가 아동의 권리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초기 유년기는 유아의 이해와 능력에 적합하고, 사회적 및 교육적으로 아동의 복지에 이익이 되며, 아동의 환경, 문화 및 언어의 민족적,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한 매체를 보급하도록 격려되어야만 하는, 출판업자와 매체 제작자에게

전문적 시장이다. 소수자 집단의 인정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매체에 대한 소수자 집단의 접근의 필요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7조 (e)항은 또한 아동이 부적절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것들로부터의 보호를 받도록 함에 있어서 당사국의 역할을 언급한다. 인터넷에 기반한 매체를 비롯한 현대 기술의 다양성과 접근성의 급속한 증가는 우려의 특별한 원인이 된다. 유아는 특히 그들이 부적절하거나 음란한 자료에 노출되는 경우 특히 위험하다. 당사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 및 양육자가 그들의 아동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제18조) 매체 생산과 전달을 유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VI.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

36. 유아의 위험에의 취약성. 본 일반논평 전체를 통해 본 위원회는 다수의 유아가 종종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유아는 특히 부모 및 양육자와의 신뢰할 수 없고, 일관성이 없는 관계 또는 극빈과 궁핍, 또는 분쟁과 폭력에 휩싸이거나 혹은 난민으로서 그들의 고향에서 추방되거나 그들의 복지에 해가 되는 기타의 여러 가지의 불행 속에서 성장하는 것 등에 의한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유아는 이러한 불행을 이해하거나 그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 발달에 대한 해로운 영향에 저항하는데 더욱 취약하다. 그들은 특히 부모나 기타의 양육자가 질병, 사망 혹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붕괴 등의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더욱 위험해진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그들이 경험하는 급속한 발달의 변화로 인해 유아는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며; 유아는 질병, 고통, 왜곡되거나 방해받는 발달에 더욱 취약하며; 어려움을 피하거나 이에 저항하는데 상대적으로 무력하고, 그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다. 다음의 항들에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초기유년기의 권리의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동 협약에서 언급된 주요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 목록은 비열거적인 것이며, 아동은 모든 경우에 다중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국의 목표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실현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a) *학대와 유기* (제19조). 유아는 종종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 유기, 학대 (maltreatment and abuse)의 피해자가 된다. 학대는 가정, 특히 파괴적인 가정에서 매우 자주 일어난다. 유아는 이를 피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이 희소이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최소이다. 유기와 학대의 결과인 정신적 상처가 매우 어린 유아의 경우에 뇌의 성숙과정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초기 유년기동안의 만연한 학대와 유기,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명심하고, 당사국은 위험에 처한 유아에게 보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이 경험한 폭력을 이유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신적 상처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b) *가족이 없는 아동* (제20조 및 제21조). 아동의 발달할 권리는 아동이 고아가 되거나, 버려지고, 혹은 가족의 보살핌을 빼앗기거나 장기간의 관계의 분열 혹은 분리(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기타의 긴급한 상황, HIV/AIDS와 같은 전염병, 부모의 구금, 무력충돌, 전쟁과 강제이주)를 겪는 경우에 더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재난들은 아동 개개인의 회복력, 연령 및 그들의 지원 및 대안양육의 보다 넓은 공급의 가능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 낮은 질의 시설 양육은 건강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적응에, 5세 이하의 아동뿐만 아니라 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안 양육 필요한 한, 가족 기반의 혹은 가족과 유사한 양육에의 조기 배치가 좀 더 유아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 당사국은 예를 들면 수양, 입양 및 확대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안전성, 양육과 애정의 지속성 및 유아가 다각적인 신뢰와 존경에 근거한 장기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유아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양육의 형태에 투자하고 지원하도록 고무된다.

입양이 고려될 때, 이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primary) 고려(제3조)”한 것일 뿐 아니라 “최우선의(paramount) 고려(제21조)”하여 동 협약과 본

일반논평에서 요청된 아동의 모든 관련된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를 체계적으로 명심하고, 존중해야 한다;

- (c) **난민** (제22조). 난민인 아동은 그들이 친숙했던 일상의 환경과 관계를 상실하여 가장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그들과 그들의 부모는 보건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동반되지 않거나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특히 위험하다. 본 위원회는 그들의 출신국 외부에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대우에 관한 일반논평 제 6(2005)에서 이러한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 (d) **장애아동** (제23조). 초기 유년기는 장애가 일반적으로 식별되는 시기이며, 아동의 복지와 발달에 대한 영향이 인식되는 시기이다. 유아는 장애만을 이유로 시설에 위탁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교육과 공동체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며, 여기에는 그들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가 포함된다. 유아인 장애아동은 그들의 부모(혹은 기타의 양육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다. 장애아동은 항상 존엄하게 대우받아야만 하며 그들의 자립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아야만 한다 (CRC/C/66의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 1997년 본 위원회의 권고를 참조.);
- (e) **유해한 노동** (제 32조). 몇몇 국가와 지역에서 아동은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도록 사회화되는데, 여기에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착취적이며 그들의 건강과 교육, 장기적인 전망에서 해를 입히는 활동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유아가 가사노동이나 농업을 하도록 혹은 위험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돕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아가 구걸에 이용되거나 고용되는 경우와 같이 심지어 매우 어린 아기들이 경제적인 착취에 취약할 수 있다. TV, 영화, 광고와 기타 현대의 매체를 포함한 연예산업에서의 유아의 착취도 우려의 대상이다.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1999년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약(제182호)에 기술된 위험한 아동 노동의 극단적인 형태에 관련된 특별한 책임을 진다.

-
- (f) *약물 남용* (제33조). 매우 어린 아동이 실질적인 남용자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그들은 만약 알콜 혹은 약물에 중독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면 전문적인 보건 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중독자이고 아동이 약물에의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가족의 생활조건이나 양육의 질에 있어서 알콜이나 약물 남용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남용에 일찍 접하게 될 위험에 있다;
- (g) *성적 착취와 학대* (제34조). 유아, 특히 여아는 가정 내외의 조기의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유아는 특히 위험하며, 예를 들어 가사노동자로 고용된 여아가 그러하다. 유아는 또한 음란물 생산자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는 “2002년 아동의 매매, 매춘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서 다루어진다;
- (h) *아동 매매, 거래 및 약취유인* (제35조). 본 위원회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버려지고 분리된 아동의 매매와 유괴의 증거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해왔다. 가장 어린 연령 집단에 관련한 이러한 목적들에는 입양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단순이 이를 통한 것만은 아니지만) 외국인에 의한 입양이 포함될 수 있다.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부가하여, 1993년의 “국가간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제와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따라서 입양을 승인하고/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모든 당사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수락할 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히 촉구해왔다. 국제적 협력과 보편적인 출생 등록은 이러한 권리의 침해와 맞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 *비정상적 행동과 법률 위반* (제40조).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아(8세 이하로 규정된; 4항 참조)는 형사적 책임이 있는 최저 연령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나쁜 짓을 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유아는 인격적인 통제, 사회적 감정 이입 및 분쟁 해결의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동반한 호의적인 도움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당사국은 부모/양육자에게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조력과

훈련을 제공하고(제18조), 유아가 양질의 초기 유년기 교육과 양육 및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지도/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37. 이러한 각각의 상황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의 경우에 있어서(제36조),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유아의 특별한 상황을 모든 법률, 정책 및 존엄성과 자기 존중(제 39조)을 촉진시키는 환경 속에서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조치에 편입시키도록 촉구한다.

Ⅶ. 초기 유년기의 역량 형성

38. 초기 유년기를 위한 자원 할당. 아동의 삶에 있어서 이 중요한 기간 동안 유아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 유년기의 경험의 영향을 명심하고), 당사국은 초기 유년기를 위한 권리에 근거한 틀 속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이며 기한을 둔 계획을 채택하도록 촉구된다. 이는 초기 유년기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제4조)을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할당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본 위원회는 초기 유년기의 아동의 권리를 이행하는 당사국이 초기 유년기에 배치할 잠재적으로 가능한 자원의 수준뿐만 아니라 초기 유년기의 정책, 서비스 및 전문적인 훈련을 위한 현존하는 하부구조에 있어서 매우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예를 들어 보건 서비스와 일차 교육이 여전히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경우 등, 아동기 전반동안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둠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평에서 제시된 많은 이유들에 의해 초기 유년기를 위해 특별히 배정해야 하는 전체적인 자원과 서비스, 하부구조에 대한 충분한 공공투자는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당사국은 정부, 공공 서비스, 비정부 기구, 민간 부문 및 가족 간의 강하고 동등한 협력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아의 권리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격려된다. 마지막으로, 본위원회는 서비스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유아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바이다.

39. 정보 수집과 관리. 본 위원회는 정책의 형성, 달성된 진전사항의 감독 및 평가, 그리고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초기 유년기의 모든 측면에 관한 종합적이고, 최신의 다량의 양질의 자료의 중요성을 반복한다. 본 위원회는 많은 당사국이 동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초기 유년기의 많은 영역에 대한 적절한 국가 자료 수집 체제를 결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히 조기 연령의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자료가 아직까지 이용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동 협약에 일치하고 성, 연령, 가족 구조, 도시 및 근교의 거주 및 기타의 관련 범주에 따라 분류한 자료수집의 체제와 지표를 개발하도록 촉구한다. 이 체제에서는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포함해야 하며, 초기 유년기에 대한 특별한 비중을 두어야 하고, 특히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에 대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40. 초기 유년기에 대한 연구를 위한 역량 강화. 본 위원회는 일찍이 본 일반논평에서 아동의 건강, 성장 및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발달의 측면 및 그들의 복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과 초기 유년기의 잠재적인 영향과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을 언급하였다. 더욱이 연구는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왔으며, 특히 연구 과정에서의 아동의 참여를 포함한 아동의 참여적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이 강조되었다. 초기 유년기 연구에 의한 이론과 증거는 유아의 복지를 위한 책임 있는 모든 이의 교육과 훈련, 이니셔티브의 감독과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행의 개발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또한 그 초점이 주로 제한된 범위의 배경과 지역에서의 초기 유년기에 한한 것이라는 현재의 연구의 한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초기 유년기를 위한 계획의 일부로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초기 유년기연구, 특히 권리에 기반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위한 국가적, 지역적 역량을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

41. 초기 유년기의 권리를 위한 훈련. 초기 유년기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유아 및 그들의 부모와 기타의 양육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향과 새로운 연구의 등장뿐만 아니라 유아의 양육과 교육, 육아에 있어서의 혁신,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서의 변화하는 정책과 우선순위 등에 따른 것이다. 초기 유년기의 아동 권리이행은 유아가 가족, 학교 및 공동체 내에

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면서 따르는 아동 자신이 직면하는 도전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다. 당사국은 아동과 함께 그리고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 특히 국회의원, 판사, 지사, 법률가, 법집행 공무원, 공무원, 아동 시설 및 아동 구금 시설의 직원, 교사, 보건종사자, 사회사업가 및 지역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그들의 부모들이 체계적인 아동권리 훈련을 받도록 할 것이 촉구된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광범위한 공공의 인식제고 캠페인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42. 국제적인 원조. 자원의 제약이 이 본 일반논평에서 제공된 종합적인 규정들을 많은 당사국이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며, 본 위원회는 세계은행, 기타 유엔 기구와 양자적 기부자들을 포함한 제공 기관(donor institutions)들이 초기 유년기의 발달 프로그램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제공할 것과 이것이 국제적 원조를 받는 국가의 지속적인 개발의 지원에 있어서의 그들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될 것을 권고한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은 또한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전문가 훈련에 있어서 초기 유년기를 위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43. 전망.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 정부간 조직, 비정부기구, 학계, 전문가 집단 및 민간 공동체가 국제적, 국내적, 지방적, 지역적 수준의 대화를 포함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독립적 기구의 설립을 계속 옹호하고, 지속적인 고위급 정책간담 및 초기 유년기의 결정적 중요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주(註)

¹ G.Landsdown,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5).

² Global Strategy for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참조

일반논평 8 (2006)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특히,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

< 목 차 >

- I. 목적
- II. 배경
- III. 정의
- IV. 인권 기준
- V.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메커니즘;
 - 1. 입법 조치들
 - 2.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의 금지의 이행
 - 3. 교육 및 기타의 조치들
 - 4. 감독과 평가
- VI. 협약에 의한 보고 요건

I. 목적

- 1. 2000년과 2001년에 개최되었던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양일간의 일반 토론의 날
이후,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일련의 일반논평을 발표하

기로 결정하였으며, 본 논평이 그 첫 번째이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아동의 보호에 관한 동 협약의 조문들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일반 논평은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 즉 아동에 대한 폭력의 형태로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행되고 있는 이러한 처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기타의 국제 인권 문서들은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의 존중 및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모든 신체적인 처벌과 모든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아동에 대한 처벌의 금지 및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국가들이 취해야 하는 입법적, 인식 고취적, 교육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이 일반논평을 발행한다.

3. 가족, 학교 및 기타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승인되거나 용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해결하고, 이를 근절하는 것은 협약하의 당사국만의 의무가 아니다. 이는 또한 사회내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II. 배경

4. 본 위원회는 최초의 회기부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가장 최근의 유엔사무총장의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연구의 본문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에 대한 광범위한 합법성 및 지속되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는 점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¹ 이미 1993년에 본 위원회는 4번째 회기의 보고서에서 “아동의 권리의 촉진과 보호체제의 개선에 있어서 신체적 처벌의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사국 보고서 심의과정에 이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하였다.²

5. 당사국 보고서의 심의가 이루어진 첫 10년 동안, 본 위원회는 가족과 기타의 환경에서 모든 신체적 처벌의 금지를 모든 대륙의 130개 이상의 국가에게 권고해왔다.³ 본 위원회는 아동이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존중받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과 기타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고무되었다. 본 위원회는 2006년까지 100개국 이상이 학교 및 아동에 대한 형사 체제에서 신체적 처벌을 금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점점 많은 국가가 가정, 가족 및 모든 대안 양육의 형태에서 이러한 금지를 완료하였다.⁴

6. 2000년 9월, 본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두 일반 토론의 날 중 첫 번째 날을 개최하였다. 이 날에는 “아동에 대한 국가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후에 본 위원회는 세부적인 권고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든 신체적 처벌에 대한 금지와 “이러한 영역에서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아동에 대한 해로운 영향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민감해지도록 하며, 아동에 대한 폭력을 문화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해결하고, 대신 폭력에 대한 ‘불용인’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적인 정보 캠페인을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⁵

7. 2001년 4월, 본 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에 관한 첫 번째 일반논평을 채택하였으며 신체적 처벌이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음을 다시 강조하였다: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교육은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며, 제12조 1항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고, 학교생활에 참여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교육은 또한 제28조 2항에 반영된 징계제의 엄격한 제한을 존중하고 교내에서의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본 위원회는 육체적 처벌의 사용이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징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을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였다...”⁶

8. 2001년 9월의 “가족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두 번째 일반 토론의 날에 채택된 권고에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시급한 문제로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법률을 법제화하거나 폐지하도록, 그러나 동 협약의 규정

에 의해 요구된 것과 같이 가족과 학교에서 훈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요청하였다.⁷

9. 위원회의 2000년과 2001년의 일반 토론의 날의 또 다른 결과는 총회를 통해 UN사무총장이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심도 있는 국제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받도록 한 권고였다. 유엔총회는 이를 2001년에 제출하였다.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이 연구의 본문에서 모든 현재의 아동에 대한 합법화된 폭력을 금지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가정 내의 신체적 처벌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많은 국가에서 학교, 기타 시설 및 법을 위반한 아동형사체제에서 지속되는 합법성에 대해 아동 스스로 깊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III. 정의

10. 동 협약에 정의된 대로,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⁹

11. 본 위원회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을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은 손이나 도구-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 숟가락 등으로 때리는 것(“찰싹찰싹 때리는 것”, “뺨을 때리는 것, 혹은 철썩하고 때리는 것”,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예를 들면, 차는 것, 혼드는 것 혹은 아동을 던지는 것, 할퀴는 것, 꼬집는 것, 무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뺨을 때리는 것,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화상을 입히는 것, 데게 하는 것 혹은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그 예로 비누로 아동의 입을 세척하거나 매운 향신료를 삼키도록 강요하는 것)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신체적인 처벌은 항상 굴욕적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잔혹하고 굴욕적이어서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의 비 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역시 존재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

12.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아동에 대한 처벌은 가정과 가족, 모든 대안 양육의 형태, 학교 및 기타의 교육기관, 사법 시스템-법원에서의 선고 및 형사 및 기타 시설에서의 처벌 모두-아동노동의 근무처 및 공동체를 포함한 많은 환경에서 일어난다.

13. 아동에 대한 처벌의 형태로서의 폭력과 창피를 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모든 정당화도 거부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가 훈육의 긍정적인 개념의 모든 의미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은 사회에서의 아동의 책임있는 삶을 위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및 기타 성인에 의한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필요한 지도와 감독에 의존하고 있다.

14. 본 위원회는 부모의 역할과 아동의 양육이 특히 영아, 유아에게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잦은 물리적인 행동과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일정한 정도의 고통, 불편함 혹은 굴욕을 유발하는 고의적이고 징벌적인 힘의 사용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보호를 위한 물리적인 행동과 징벌적인 폭력과 차이를 알고 있다; 아동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 이러한 구별을 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다. 모든 국가에서 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비징벌적이며 필요한 물리력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5. 본 위원회는 교사 및 기타의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시설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법을 위반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위험한 행동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재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음을 인정한다. 역시 여기에는 아동 혹은 기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촉발된 물리력의 사용과 처벌을 위한 물리력의 사용간의 분명한 구별이 존재한다. 필요한 최단기간동안의, 필요한 최소한의 힘의 사용이라는 원칙은 항상 적용되어야만 한다. 제재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사용되는 모든 방법이 안전하고, 상황에 대해 비례적이며, 통

제의 형태로서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과 훈련이 또한 필요하다.

IV. 인권 기준 및 아동의 신체적 처벌

1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기 전에 국제인권장전-“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그/그녀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존중받고 법 앞에 동등한 보호를 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를 확인하였다. 모든 신체적인 처벌 및 기타의 모든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을 금지하고, 근절할 국가의 의무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이러한 기초위에 서있음을 강조한다. 각각의, 그리고 모든 개인의 존엄성은 국제 인권법의 근본적 지도 원칙이다.

1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전문은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서 반복된바와 같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함을 확인한다. 동 협약 전문은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유엔이 “아동기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도록 부여받았음을 선언하였다”는 것을 환기한다.

18. 동 협약 제 37조는 당사국들이 다음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제19조에서 보완되고 부연되었는데, 동 조는 당사국들에게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모호하지 않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아동에 대한 여하한 수준의 폭력의 합법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형태의 처벌은 폭력의 형태이며 국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 더욱이 동 협약 제28조 제2항에서는 학교규율을 언급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에게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 제 19조와 제 28조 제 2항에서는 신체적 처벌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동 협약의 준비문서에는 초안회의 동안 신체적 처벌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 협약은 모든 인권 문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석이 발전하는 살아있는 문서로 여겨져야 한다. 동 협약이 채택된 16년 이래로, 동 협약 하의 보고 절차와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 인권 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연구와 주장을 통해 가정, 학교 및 기타 시설에서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이 만연하다는 것이 더 눈에 띄게 되었다.

21. 일단 가시화된 이상 이러한 관행들이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존중받을 아동의 동등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의 구별되는 특성인 그들의 초기의 의존적이며 발달하는 상태, 그들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특별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 등, 이 모두는 적게 보다는 더 많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법적 및 기타의 다른 보호를 필요로 한다.

22. 본 위원회는 법의 개정과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통한 폭력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의 근절이 당사국의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인 의무임을 강조한다. 본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위원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를 포함하는 기타의 조약기구의 해당문서에 의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학교, 형사체제와 어떤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신체적 처벌을 금지하고 기타 조치들을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1999년의 일반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신체적 처벌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양 규약의 각 전문에 기술된 국제인권법의 근본적인 지도 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학교규율의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 역시 인간존엄성에 위배될 수 있다.”¹⁰

23. 신체적 처벌은 또한 지역적 인권 기구에 의해 비난받아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련의 판결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에 대해 점진적으로 유죄판결을 해왔으며, 첫 번째는 형사체제에서의, 두 번째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에서의, 가장 최근에는 가정에서의 신체적 처벌을 인권침해로 결정하였다.¹¹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의 유럽 사회헌장과 개정된 사회헌장에 대한 준수를 감독하는 유럽사회권위원회는 헌장들에 대한 준수는 학교, 기타의 시설, 가정, 다른 곳을 막론하고 입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¹²

24. 미주인권재판소의 “아동의 인권과 법적 지위(2002)”에 대한 권고적 의견은 미주인권협약의 당사국들이 “공공당국과의 관계에서든, 개인간의 관계이든 혹은 비정부 실체와의 관계이든간에 상관없이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조문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결론들 및 또한 가족을 포함한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한다. 동 재판소는 “국가는 아동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결론지었다.¹³

25.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위원회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 헌장”의 이행을 감독한다. 학생들에게 부과된 “태형” 판결에 관한 개인통보에 관한 2003년의 결정에서 위원회는 이 처벌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아프리카 헌장 제 5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관련정부에게 태형의 처벌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개인 및 특히 국가의 정부는 신체적인 처벌을 개인에게 범죄에 대한 형벌로 부과할 권리가 없다. 그러한 권리는 헌장 하에서 고문을 자행하는 국가를 허용하는 것과 동등할 것이며 본 인권헌장의 그 본질에 반한다.”¹⁴ 아동권리위원회는 많은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혹은 기타의 상급재판소가 몇몇 혹은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비

난하는 결정을 판결한 것과 대부분의 경우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인용하였음을 만족하며 주목한다.¹⁵

26. 아동권리위원회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사 중 특정국가에게 신체적 처벌의 근절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 대표자들은 때로 일정 수준의 “합리적인” 혹은 “적당한” 신체적 처벌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위원회는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아동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확인한바 있다(제3조 제2항). 동 협약은 또한 제 18조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부모의 기본적 관심일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해석은 협약 전체와 일치하는 것이어야만 하며,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 및 아동의 견해를 적절히 다룰 의무가 포함 된다; 이는 아동의 존엄성 및 신체적 완전성에의 권리에 위배되는 신체적 처벌 및 기타 형태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처벌과 같은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27. 동 협약 전문은 가족을 “사회의 기초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이라고 확인한다. 동 협약은 당사국들에게 가족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가족내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완전한 보호를 받는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28. 제5조는 당사국이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능력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할” 부모의 책임,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서도 “적절한” 감독과 지도의 해석은 협약전체와 일치해야만 하며,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기타의 잔혹한 혹은 훈육의 굴욕적인 형태를 정당화하는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29. 일부에서는 신체적 처벌에 있어서 신앙에 기초한 정당화문제를 제기하며, 종교적 문서의 특정한 해석은 그것의 사용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처벌을 사용할 의무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신앙의 자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에서 만인에게 확인된 것이지만 종교나 신념의 행사는 타인의 존엄성 및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존중과 합치되어야만 한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행사할 자유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특정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 매우 어린 연령에서부터, 그리고 때때로 다른 경우에는 사춘기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부터 종교법의 일정한 해석에 따라 정해진 투석형 및 절단형의 극단적인 폭력의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보아왔다. 그러한 처벌은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해 강조되어왔던 바와 같이 분명히 동 협약 및 기타의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금지되어야만 한다.

V.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메커니즘

1. 입법 조치들

30. 제19조의 문언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기타의 조치뿐만 아니라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많은 국가들에서 동 협약 혹은 협약의 원칙들이 국내법에 수용되어왔음을 환영하였다. 모든 국가에는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이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기준 및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제37조를 반영하고,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만인의 권리”를 확인하는 헌법 및 혹은 법률을 갖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또한 “학대(ill-treatment)”나 “학대(abuse)” 혹은 “학대(cruelty)”를 범죄화하는 특별 아동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그러한 입법적 발전이 가족 및 기타의 환경에서의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일반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국가보고서의 심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31.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본 위원회는 많은 국가의 형법 및/혹은 민법(가족법)에 부모와 기타의 양육자에게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폭력의 사용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해주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합리적인” 혹은 “적당한” 응징이나 교정에 대한 옹호는 몇세기동안 영국 보통법의 일부로, 프랑스법에서는 “교정의 권리”로 자리잡아왔다. 동시에 많은 국가에서 같은 옹호가 남편에 의한 아내에 대한 징벌과 노예, 하인, 도제에 대한 주인의 응징의 정당화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이 가정/가족 혹은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어떤 정도의 폭력(그 예로 “적당한” 혹은 “알맞은” 응징이나 교정)을 허용하는 모든 규정(제정법 혹은 보통판례법법)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32. 몇몇 국가에서 신체적 처벌은 특히 학교와 기타의 시설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규제와 함께 허용되어왔다. 그리고 소수의 국가에서는 회초리나 채찍을 사용한 신체적 처벌은 여전히 아동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공인되고 있다. 본 위원회가 자주 반복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협약은 모든 그러한 규정의 철폐를 요구한다.

33. 몇몇 국가에서, 본 위원회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신체적 처벌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신체적 처벌의 허용을 함축하고 있음을 보아왔다. 때때로 이러한 태도들은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다(폭력 혹은 학대를 한 부모, 교사 혹은 기타의 양육자가 권리의 행사 혹은 적절한 “교정”을 사용할 자유에 근거하여 석방되는 경우).

34. 아동에 대한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에 관한 전통적인 용인에 있어서 점점 많은 수의 국가가 신체적 처벌의 허용 및 현재의 옹호규정의 단순한 폐지로는 충분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민법 혹은 형법에서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는 성인에게 하듯이 아동을 때리거나 “철썩 때리거나”, “찰싹 때리는 것”이 불법이며, 폭력에 관한 형법이 아동에 대한 상기 폭력이 훈육이나 합리적 교정으로 불리는 것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됨을 절대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35. 일단 아동에 관한 폭력에 대하여 형법이 완전히 적용되면, 아동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범죄자가 누구이든간에 신체적 처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입장은 신체적 처벌에 대한 전통적인 용인을 고려해볼 때, 적용가능한 분야별 법률-예를 들어 가족법, 교육법, 모든 형태의 대안 양육과 사법 체제에 대한 법, 고용법-이 관련 상황에서 폭력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만약 전문가 윤리강령 및 교사, 양육자, 기타 사람들에게 대한 지침, 그리고 또한 시설의 규칙이나 설립 문서가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의 불법성을 강조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36. 본 위원회는 또한 보고서에서 신체적 처벌과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이 가정을 포함한 아동노동의 환경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 및 기타의 적용가능한 인권 문서들이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위협하며,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발달에 해로울 것으로 보이는 모든 작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의 효과적인 이행 보장을 위한 특정한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본 위원회는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고/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의 금지는 아동이 일하는 모든 환경에서 이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37. 동 협약 제39조는 당사국에게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며 적절한 의료 및 기타의 치료와 간호를 필요로 한다. 이는 완전한 건강, 자기존중 및 아동의 존엄성을 육성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적절하다면 아동의 가족 집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간호와 치료를 계획하고 제공하는데 있어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 및 특별히 훈련된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아동의 견해는 그들의 치료와 검토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정당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2.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의 금지의 이행

38. 본 위원회는 모든 신체적 처벌 금지의 이행에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식제고, 지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제 45항 이하를 참조). 법이 영향을 받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적용될 것이 보장되어야만 하며, 특히 부모나 기타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가족내에서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의 일차적 목적은 예방이다: 태도와 관행을 바꿈으로써 동등한 보호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참여적인 아동양육의 형태의 진흥과 아동 보호의 분명한 기초를 제공하여 태도와 관행을 변화시킴으로써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것

39. 모든 신체적 처벌의 분명하고 무조건적인 금지를 달성하는 것은 다양한 당사국들에서 다양한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교육, 소년 사법 및 대안 양육의 모든 형태를 담당하는 법률의 특정 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형법 규정이 가족내를 포함한 모든 신체적 처벌에 적용됨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당사국의 형법에 추가적인 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이나 가족법에 모든 신체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규정은 부모나 기타의 양육자들이 그들이 형사 소추당한 때에 더 이상 신체적 처벌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합리적’이거나 ‘알맞은’)라는 어떠한 전통적인 변호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가족법 또한 부모의 책임에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 없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 하는 것이 포함됨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40. 가족내에서를 포함한, 폭력으로부터의 아동과 성인의 동등한 보호의 원칙은 그들의 부모에 의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이 인지된 모든 경우에 부모를 소추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 자체가 사소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소허용원칙은 성인간의 경미한 폭력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법정에 오게 되는 것을 보장한다. 아동에 대한 경미한 폭력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당사국들은 실효적인 보고 및 위탁 메

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동폭력에 관한 모든 사건보고가 적절히 조사되어야 하고, 중대한 위협으로부터의 아동 보호가 보장되는 한편, 그 목적은 지원적이고 교육적인, 징벌적이지 않은 개입을 통해 부모가 폭력이나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41. 아동의 의존적 지위와 가족관계의 독특한 친밀성은 부모를 고소하거나 여타 방식으로 가족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기로 하는 결정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 질것을 요구한다. 부모를 고소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되기 어렵다. 고소 및 기타의 공식적인 개입(예를 들어 아동을 이동시키거나 가해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아동을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향을 받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입장이다. 영향을 받은 아동의 견해는 그들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42. 경찰, 검찰 당국 및 법원을 포함한 아동보호 체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조언과 훈련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접근을 강조해야 한다. 지침은 또한 부모와 아동의 모든 분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아동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적용가능한 사법심사의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동 협약 제 4조를 강조해야 한다. 분리가 정당화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가해자의 이동 및 형 집행유예 등의, 아동을 가족 외부에 배치하기 위한 대체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43. 예를 들어 학교나 기타의 시설, 대안양육과 같은 가족 밖에서 신체적 처벌의 금지 및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벌이 발생한 경우에 기소는 합리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다른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나 면직에 대한 위협은 또한 명백한 억제책으로써 작용할 것이다. 모든 신체적 처벌 혹은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의 금지 및 이러한 처벌이 가해진 경우 부과될 제재는 아동 및 모든 환경에서 아동과 함께 혹은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징계 시설 및 아동에 대한 처우의 감독은 동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시설과 장소에서

의 관리감독의 일부여야 한다. 모든 그러한 장소에 있는 아동과 그들의 대리인들은 필요하다면 법적 및 기타 조력을 받아 아동인지적 조언, 옹호 및 고발절차와 종국적으로는 법정에 즉각적이며 비밀유지가 되는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시설에서는 모든 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와 검토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3. 교육 및 기타의 조치들

44. 동 협약 제 12조는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적 및 기타의 조치들의 개발과 이행에 대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당한 비중을 두어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5. 신체적 처벌에 대한 만연한 신체적 처벌에 대한 전통적 용인을 고려하면, 그 자체에 대한 금지는 태도 및 관행에서의 필요한 변화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와 이 권리를 반영한 법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동 협약 제 42조에 따라 국가들은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성인 및 아동에게 동 협약의 원칙과 조문들을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

46. 더욱이 국가들은 적극적이고, 비폭력적인 관계와 교육이 부모, 양육자, 교사, 그리고 아동 및 가족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장려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이 신체적 처벌의 금지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모든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동 협약은 부모가 그들의 아동과 관계 맺는 방법이나 지도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동 협약은 가족내에서, 그리고 교사간, 양육자 및 기타 사람들 및 아동간의 관계를 지도하는 원칙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상의 필요는 존중되어야만 한다. 아동은 성인들이 말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학습한다.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굴욕을 준다면 성인들은 인권의 경시를 보여주며 이러한 것들이 충돌의 해결이나 행동의 변화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는 강력하고 위험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47. 동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5조는 부모(혹은 적절하다면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동 협약상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부모 혹은 법적후견인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제 18조에서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을 위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인 관심이 된다”와 확인한다. 제12조에서는 국가들은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비중을 두며,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아동의 참여권을 존중하는 양육, 육아 및 교육방식의 필요를 강조한다.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1에서 본 위원회는 “아동중심적이고 아동우호적이며 권한을 주는” 교육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¹⁶

48. 본 위원회는 국가, 유엔기구, 비정부기구 및 기타 주체에 의해 개발된 부모, 기타 양육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양육과 교육을 장려하는 자료와 프로그램의 많은 예들이 존재함을 주목한다.¹⁷ 이러한 것들은 다른 국가들과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기 위해 적절히 변용될 수 있다. 언론은 인식고취와 공공 교육에 있어서 매우 가치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벌에 대한 전통적인 의존에 도전하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 비폭력적인 형태의 양육과 교육의 장려는 조기 유아 시설, 탁아시설 및 학교를 포함한 보건, 복지 및 교육 서비스내의 국가와 부모 및 아동간의 모든 접촉지점에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양육 및 사법 체제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고 있는 교사와 모든 관련자들의 초기 및 현직 훈련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49.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비폭력적 접근 방식의 장려를 위한 인식 고취, 공공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특히 유엔아동기금,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의 기술적인 지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4. 감독과 평가

50. 본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5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지표의 개발과 충분하고 신뢰성 높은 적절한 자료의 수집을 통한 당사국의 체계적인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¹⁸

51. 따라서 당사국은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을 근절하고 이에 따라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진전상황을 감독해야만 한다. 비밀유지 및 적절한 윤리적인 보호를 조건으로 한, 아동, 그들의 부모 및 기타의 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한 연구는 가족 내에서의 이러한 형태의 폭력의 만연과 폭력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가능한 한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집단들과 함께 그러한 연구를 수행/위탁하고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검토하도록 장려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또한 보편적 혹은 특정집단을 목표로 한 인식고취 캠페인 및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의 교육에 가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52. 본 위원회는 또한 일반논평 5에서 이행의 독립적인 감독, 예를 들면 의회 위원회, 비정부기구, 학술기관, 전문가 협회, 청년집단 및 독립인권기구(“아동권리의 보호 및 촉진에 있어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2를 참조¹⁹)에 의한 감독을 강조한다. 이들은 모두 모든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권리의 실현을 감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VI. 협약에 의한 보고 요구

53.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동 협약에 의한 정기보고서에 인식고취활동과 관련된 정보 및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관계의 촉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

권리의 완전한 존중을 달성하기 위한 진행상황에 대한 당사국의 평가에 대한 정보 등, 가족 내 및 모든 기타의 환경에서 모든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기대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유엔기관들과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 및 기타 권한 있는 기구들이 신체적 처벌의 법적 지위 및 행해지는 정도, 그 근절을 위한 진행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주(註)

- ¹ 유엔총회제출을 위해 작성된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연구, 2006, 가을, 세부적인 내용은 <http://www.violencestudy.org>
- ² 아동권리위원회, 4차회기 보고서, 1993, 10월 25일, CRC/C/20, 176항
- ³ 모든 위원회의 보고서는 www.ohchr.ch에서 볼 수 있다.
- ⁴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처벌을 종결시키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www.endcorporalpunishment.org에서 신체적 처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 ⁵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에 대한 일반 토론의 날, 25차회기 보고서, 2000, 9월, 10월, CRC/C/100, 제 668항 내지 제 688항
- ⁶ 아동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 교육의 목적, 2001년 4월 17일, CRC/GC/2001/1, para.8
- ⁷ 아동권리위원회 가족과 학교내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 논의의 날, 28차회기 보고서, 2001년 9월, 10월, CRC/C/111, 제 710항 내지 제745항
- ⁸ 유엔총회 결의 56/138, 2001
- ⁹ 제 1조
- ¹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 교육의 권리(제 13조), 1999년 제 41항
- ¹¹ 신체적 처벌은 유럽인권위원회의 일련의 결정들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들에서 비난, 인권침해라고 결정되었다; 특히 *Tyrer v. UK*, 1978; *Capmbell and Cosans v. UK*, 1982; *Costello-Roverts v UK*, 1993; *A v UK*, 1998을 참조. 유럽재판소의 판결은 <http://www.echr.coe.int/ech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¹² 유럽사회권위원회 제 7조 제 10항 및 제 17조에 관한 일반 견해의 결정 XV-2,

General Introduction, 26항, 2001; 상기 위원회는 이후 결정들을 계속 발표하였으며, 상당한 수의 회원국이 가족 및 기타의 환경에서의 모든 신체적 처벌을 금지하지 않아 헌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2005년 상기 위원회는 헌장에 근거한 집단 청원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3개 회원국이 신체적 처벌을 금지하지 않아 헌장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세부적인 것은 http://www.coe.int/T/E/Human_Rights/ESC/; 또한 신체적 처벌의 근절: 유럽의 아동을 위한 인권 명령, 유럽평의회 출판, 2005

- ¹³ 미주인권재판소, 권고적의견 2002년 8월 28일 OC-17/2002, 제 87항 및 91항
- ¹⁴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위원회, *Cutis Francis Doeblbler v. Sudan*, Comm. No. 236/2000 (2003); 제 42항 참조
- ¹⁵ 예를들어, 2002년 피지항소법원은 학교와 형사체제에서의 신체적 처벌과 형사체제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판결에서는 다음을 선언하였다: “아동은 성인의 권리에 비해 열등하지 않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피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우리의 헌법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는 모든 개인, 공동체 및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았다. 아동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로 인해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교육기관은 평화와 창조적 성숙의 안식처가 되어야만 하지 공포, 학대 및 학생의 존엄성을 막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피지항소법원, *Naushad Ali v. State*, 2002). 1996년 이탈리아 최고법원인 로마의 파기대법원은 모든 부모의 신체적 처벌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폭력의 사용은 더 이상 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법체제의 압도적인 중요성이다. 여기에는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더 이상 단순히 그들의 부모에게 보호를 받을 대상이 아닌 미성년자 혹은 여전히 그들의 부모의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두 번째 이유는 교육적 목적으로서 아동의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 즉 그/그녀가 평화, 관용과 공존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이러한 목적과 모순되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Cambria, Cass, sez. VI, 18 Marzo 1996*[Supreme Court of Cassation, 6th Penal Section, March 18 1996], *Foro it II* 1996, 407(Italy)),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2000) Christian Education South Africa v Minister of education, CCT4/00; 2000(4)SA757(CC); 2000(10) BCLR 1051 (CC), 18 August 2000참조

¹⁶ 각주 6 참조

¹⁷ 본 위원회는 그 예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핸드북, Eliminating corporal punishment: The way forward to constructive child discipline, UNESCO 출판, 2005를 들고 있다. 본 서는 동 협약에 근거한 건설적인 훈육을 위한 일련의 원칙들을 제공하고 있다. 본 서는 또한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인터넷참조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¹⁸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적 조치들”, 2003

¹⁹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 2002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권리위원회]

VI. GENERAL COMMENT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권리위원회

인쇄일 | 2006년 8월 일

발행일 | 2006년 8월 일

발행인 | 조영환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 (02) 2125-7932

팩 스 | (02) 2125-9738

인 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비매품>